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103-01

한·일 한·중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성명환 연구위원
한혜성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성명환 연구 위원 연구 총괄

한혜성 연구 위원 자료 분석 및 제3, 제4장 집필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일 한·중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성 명 환

연구원: 한 혜 성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2007년 미국, 2009년에는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 하였으며,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중·일간 농산물 교역량이 점증하는 시점에서 한·중 또는 한·일간 FTA 체결 시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지리적표시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발음이 동일하거나 의미가 같은 지리적명칭이 많이 있다. 이 지역에서 지리적명칭이 원칙 없이 사용된다면 수많은 지리적표시가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또는 한·일간 FTA 체결 시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 높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중,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쟁점을 파악하여 FTA 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국내 지리적표시 품목의 국제적 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원내 연구진과 중국과 일본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신 연변대학교 김용훈 교수, 농촌진흥청 장면주 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지리적표시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종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결과가 국내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통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산 농산물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발효하였다. 2007년 미국, 2009년에는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을 대비하여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 높고 농산물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리적표시를 불공정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중 품질이나 맛 등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립된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도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과 2004년부터 상표법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1993년 상표법의 상표증명 등록방식으로 시작하였고, 중국 농업부에서는 2007년 농산품지리적표시관리제도를 공포하여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단체상표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된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시 국제교역 거래장벽이 낮아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간 농산물 무역이 확대될 수 있다. 무역규모가 확대되면 지리적표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해행위는 각 국가간 개별협상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한다. FTA 체결 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공동사무국 설치를 통해 통상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리적표시에 대한 침해방지를 대비한 국가간 GI 목록의 상호교환 등 무단사용의 근절에 대해서 FTA 체결 전에 별도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한·EU FTA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간의 지리적표시의 상호보호 차원에서 상표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지리적표시 목록교환이 필요하다. 추가가 필요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협의기구에서 논의토록 한다.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을 대비해 수출입되는 지리적표시 품목의 지리명칭 표기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언어와 영문을 함께 병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한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영문은 상대국에서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의 고유 명칭은 영문과 가장 유사한 한문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표시협의기구를 통해서 해당 생산자에 동음의 지리적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조사·분석하여 지적재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인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적표시 도용 및 표시권 침해 대책으로 침해발생국과 교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민합동사절 파견을 비롯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지적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지리적표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외산 여부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식별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지리적표시품의 식별기술 개발 및 분석자료 축적, 전문직원의 양성, 해외지식재산사업활동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FTA 체결 시 국제교역 거래장벽이 낮아지면서 농산물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표시제도는 생산방법, 농약사용기준 설정 등 상대적으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어 있어 무역을 확대하더라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마련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리적표시 품목의 무역확대는 수입통관 및 수출검역 절차와 조건을 용이하게 하여 비용절감과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제도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산업화, 표준화, 다양화를 촉진하여 국내 농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Following FTA with Chile that came into effect in 2004, FTAs with Singapor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 and ASEAN that Korea struck took effect as well. Korea concluded FTAs with Europe in 2007 and with the U.S. in 2009, and currently it is pursuing FTAs with China and Japan. In particular,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GI)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because it is highly likely to be an issue at the center of negotiations for Korea-Japan and Korea-China FTAs and to have a great impact on the agricultural trade, given that Korea, China and Japan share the same cultural zone that uses Chinese characters in thier language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unfair GI use.

The GI is a system that prevents any unfair use of the established fame and reputation about quality or taste of products from a local area. The GI system of Korea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in 1999 and GI Collective Mark System under the Trademark Law in 2004. China started registering trademark certification in 1993 under the Trademark Law, and the Ministry of Agriculture promulgated GI Managemen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2007, initiating GI registration for the agricultural products. In Japan, the Trademark Law was partly revised to implement local collective trademark system(trademark indicated by both the names of a region and product).

If Korea strikes FTAs with China and Japan,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 will be lowered,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trade among Korea, China and Japan. Such trade expansion will increase a possible GI violation, which should be resolved based on individual negotiations with three countries. After concluding FTAs, the two or three nations need to establish a body to discuss trade issues through a joint Secretariat or Task Force responsible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side from this, the three countries should reach an agreement on the eradication of unpermitted GI uses before signing FTAs by exchanging GI lists with each other to respond to any possible GI violation. The consultative body should serve as a place for the three countries to discuss GIs to be added.

In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Korea-China and Korea-Japan FTAs, the names or locations for GI products to be exported and imported should be

written both in the local language and English. It is the basic principle that the names or locations are written in English phonetically, if their Chinese characters can be understood by Korea, China, and Japan. If it is impossible to mark proper nouns with Chinese characters, the most phonetically similar Chinese characters to English words will be used. The consultative body needs to gather the opinion and comments from producers of GI products in each country on the practical condition for its use, and suggest a final options at the negotiation table so that homophonic GIs can be differentiated.

In addition, countries need to find ways to head off unpermitte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establish a system for addressing any possible legal disputes among them by collecting, researching and analyzing cases of GI misuse found in foreign nations other than China and Japan. Moreover, regarding countermeasures to prevent GI violation, it is needed to support civil organizations in protecting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dispatching joint delegation comprising both civil and public players to ensure an effective negotiation with countries suffering from GI violation. In case of GI violation, it is required to find ways to identify the origins of a product whether it is produced at home or abroad quickly to prove the case.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technology to identify GI products, collect analysis document, foster specialized personnel, and establish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Project Support Center(tentatively).

The conclusion of FTA presents an opportunity to lower the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and expand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GI systems of Korea and China have a strengthened security management for production methods, standard for pesticide use, which provides a minimum condition to ensure the provision of safe agricultural products even after the trade expansion. Therefore, the trade expansion for GI products will facilitate the procedure and conditions for import clearance and quarantine for export, enabling a trade vitalization and cost reduction. It is needed to develop GI system as a platform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standard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strengthening both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and market competitiveness on the world stage, thereby increasing export opportunity for agricultural products.

Researchers: Sung, Myung-Hwan and Han, Hye-Sung

Research period: 2011. 5. - 2011. 12.

E-mail address: mhsu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4
3.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제도 분석

1.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도 10
2. 중국의 지리적표시제도 20
3.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제도 32
4. 한·중·일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비교 및 시사점 42

제3장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시장 분석

1. 농산물 수출입 현황 및 특성 46
2.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의 수출입 현황 및 특성 52
3.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 SWOT 분석 67

제4장 한·중 및 한·일 FTA 체결 대비 쟁점 검토 및 정책 대응 방안

1. 지리적표시 관련 국제적 쟁점 및 분쟁 사례 69
2. 지리적표시 관련 분쟁 사례 76
3.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시 지리적표시 관련 쟁점 84
4.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시 지리적표시 대응 방안 89

제5장 요약 및 결론	96
부록 1 한·EU FTA 지리적표시 관련 협정문	100
부록 2 한·미 FTA 지리적표시 관련 협조문	119
부록 3 중국의 방산멧돌감 지리적표시 사례	124
부록 4 중국의 지리적표시 보호품목	133
부록 5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등록 현황	170
참고문헌	182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	15
표 2- 2.	한국의 농림수산물부와 특허청 제도 비교	16
표 2- 3.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11.9)	18
표 2- 4.	지리적표시 품목별 등록 현황	18
표 2- 5.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실태	19
표 2- 6.	중국의 품목류별 지리표지 등록 현황	30
표 2- 7.	중국 각성 시구 지리표지 등록 현황	31
표 2- 8.	상표등록제도와 지역 단체상표등록제도의 비교	33
표 2- 9.	일본 지역단체상표 현황	39
표 2-10.	일본의 품목류별 지역단체상표 현황	39
표 2-11.	한·중·일 지리적표시제도 비교	43
표 2-12.	한·중 지리적표시제도 비교	44

제3장

표 3- 1.	부류별 수출실적	48
표 3- 2.	국가별 수출 실적 비교	48
표 3- 3.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49
표 3- 4.	연도별 1억달러 이상 주요 수출국 현황	49
표 3- 5.	부류별 수입실적	51
표 3- 6.	국가별 수입 실적 비교	52
표 3- 7.	한·중 수출 현황	53
표 3- 8.	중국 농식품 부류별 수출 실적 비교	54
표 3- 9.	중국 농식품 부류별 수입 실적 비교	55

표 3-10.	한·일 수출 현황	56
표 3-11.	일본 농식품 부류별 수출 실적 비교	58
표 3-12.	일본 농식품 부류별 수입 실적 비교	58
표 3-13.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상품 수출 현황	59
표 3-14.	주요 농산물품 안전성 문제	62
표 3-15.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단계별 문제점	64
표 3-16.	이천 쌀의 제휴현황	64
표 3-17.	이천 쌀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65

제4장

표 4- 1.	한·EU FTA 부속서상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	70
표 4- 2.	한·EU 협정문 내용	71
표 4- 3.	국제 조약에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	74
표 4- 4.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차이점	75
표 4- 5.	중국 특허관련 행정조치 장단점 비교	86
표 4- 6.	한·중·일 FTA 체결 시 합의서에 협의기구에 대한 규정(예시)	89
표 4- 7.	한·일 동음동의, 동음이의, 이음동의사례	90
표 4- 8.	한·중 동음동의, 동음이의, 이음동의사례	91
표 4- 9.	지리적표시 관련 영문이니셜 표기 방안	92

그 립 차 례

제1장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6
------------------------	---

제2장

그림 2-1.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12
-------------------------------	----

제3장

그림 3-1.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47
그림 3-2. 농림수산물 수입동향	50
그림 3-3. 일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	63
그림 3-4. 고려홍삼, 고려삼의 중국단체표장	66
그림 3-5.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 SWOT분석	68

제4장

그림 4-1. Rhee Bros., Inc 등록상표권	83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지리적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s)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중 품질이나 맛 등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립된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¹.
- 지리적표시는 일반인에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지리적 출처표시의 오인, 명성의 부정사용, 식별력의 침해에 대한 지리적표시 상표 및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음.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포도주, 증류주, 치즈, 건포도 등 다수의 지리적 명칭을 등록하여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도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유럽 연합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참고로 하여 도입함².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임(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제8호).

2004년부터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를 도입, 2006년 장흥표고를 시작으로 현재 117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등록됨.

- 대외적으로 지리적표시제도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국제규범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FTA의 체결로 더욱 강화됨. 기존의 지리적표시 관련 협약은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되는 양자 규정이었지만 TRIPs는 WTO의 모든 회원국이 지켜야 하는 국제규범임.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등과 FTA를 발효하였음. 최근 유럽, 미국과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음.
- 특히,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 높고 농산물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동음동의(同音同意)”, “동음이의(同音異意)”, “이음동의(異音同意)” 등 3국의 지리적표시를 불공정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지리적표시는 1993년 상표법의 실시세칙에서 “상표증명” 등록 방식으로 시작하여 2001년 상표법의 재수정후, 정식으로 “지리적표시”라는 용어를 추가함. 중국 농업부는 2007년 농산품지리적표시관리제도를 공포하였는데 지리적표시 등록조건, 등록과정 및 등록증서, 표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

2 2002년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농축산물 77개, 임산물, 39개, 수산물 11개, 2011년 현재 127건의 지리적표시가 등록됨.

행하고 있음. 이 법은 2008년 2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등록신청을 받고 있음. 현재 중국에서는 평곡복숭아, 몽산차, 경산차, 한성산초, 연변쌀, 광영좁쌀, 영덕홍차, 대홍수박, 창평사과, 청주복숭아 등이 지리적표시 상품으로 보호를 받고 있음.

- 일본은 2006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단체상표제도(지역명+상품명으로 된 상표)를 도입하였으며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있음. 이 제도는 지역브랜드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여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유바리메론(홋카이도, 夕張), 마에사와규(이와테현, 前澤), 신슈된장(나가노현, 信州) 등이 있음.
- 한, 중, 일 3국은 동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동일한 지명이나 유사한 지명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무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동시에 국내 농업계와 농산물 수출에 있어 잠재적인 기회이기도 함.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보호와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우리나라는 EU와 FTA 타결에 따라 양측이 상호간 보호가 필요한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하고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을 현행 WTO 지적재산권 관련협정인 TRIPs 보다 높이기로 합의함. 양국 간 협상을 계기로 국내에 EU의 162개 지리적표시가 들어와 보호해야하지만,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해남겨울배추, 진도홍주 등 우리나라의 64개 지리적표시 상품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 유럽시장에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가 가능해짐.
- 한·EU FTA 협상결과, 지리적표시는 TRIPs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호받게 됨. 따라서 EU와 체결한 협정문 중 지리적표시 쟁점 부분

의 분석을 통해 한·중 및 한·일간 FTA를 체결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EU FTA 협상 가운데 농식품은 TRIPs 제23조의 포도주·증류주 수준으로 보호가 강화됨. 농식품의 경우, 해당 지리적표시와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표시 또는 명칭에 대해서만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인혼동이 없어도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상품이 외국에서 오남용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국산 인삼, 고추장, 과일, 수산물 등에 한국 지명을 표시해 중국 내에서 유통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사례, 한국산이 아닌 고려인삼, 순창고추장 등이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발견됨.
- 지리적표시제도가 국내 농산물의 산업화, 표준화, 다양화를 촉진하여 국내 농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2.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중·일간 농산물 교역량이 점증하는 시점에서 한·중 또는 한·일간 FTA 체결 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높은 지리적표시제에 관한 3개국의 관련 제도 비교분석과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쟁점과 이슈를 사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중,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쟁점을 파악하여 FTA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의 지리적표시제도개선 및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국내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통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특산물의 생산 확대는 물론, 한국 지역명을 사용한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외에서 유통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3.2.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제도의 비교분석, 한국·중국·일본의 농산물 수출입시장 분석, 한·EU 및 한·미 FTA 관련 지리적표시보호제도 쟁점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한·중,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FTA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둠.
-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제도의 비교분석 부분에서는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상표법,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법,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국 전문법, 농업부 농산품 지리적표시 관리법,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중심으로 3국의 지리적표시제도 추진체계, 등록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함.
- 한국·중국·일본의 농산물 수출입시장 분석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입 현황 및 특성,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의 수출입 현황 및 특성, 한국 지리적표시품의 수출 사례조사를 통해 지리적표시의 문제점과 쟁점 사항을 살펴봄.
- 한·EU 및 한·미 FTA 관련 지리적표시보호제도 쟁점 현황 분석 부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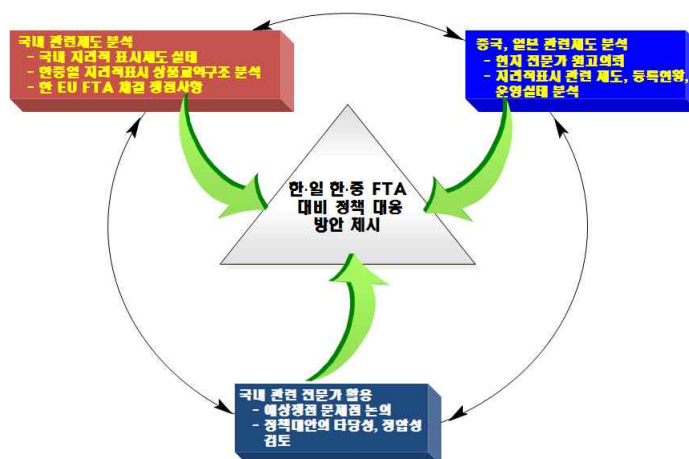
한·EU, 한·미 FTA 지리적표시보호 관련 쟁점 현황을 살펴보고 지리적표시의 국제분쟁 사례를 정리함.

- 마지막으로 한·중, 한·일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지리적표시 보호 분야의 쟁점 검토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함.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시 예상되는 쟁점으로 지리적표시 관련제도 보호 범위, 지리적표시 위반 등 한·중 및 한·일 FTA 체결 시 대응 방안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함.

3.3. 연구 방법

- 국내외 관련 문헌, 관련 기관 자료 수집을 통하여 국내외 지리적표시제도 관련 제도 및 정책 실태조사, 기 체결된 FTA 협정문 검토,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의 생산 및 수출입 실태를 분석함.
- 국내외 관련 제도 분석, 전문가 간담회 및 현지조사를 통해 한·일, 한·중 FTA 대비 정책 방안을 도출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3. 선행연구 검토

- 김병일(2002)은 미국, EU와 기타 국가에 대하여 국제조약의 지리적표시내용과 지리적표시의 운영 및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정리함.
- 윤여강, 정태호(2010)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조약에서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쟁점과 이와 관련한 협상 결과를 분석하였음. 한국·EU FTA 지리적표시 분야 협정에서 지리적표시 보호대상은 농산물과 식품, 포도주, 착향포도주,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포함하여 양국의 FTA 협약은 TRIPs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리적표시의 보호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TRIPs-플러스 방식이 체결됨.
- 전현진·이주현(2010)은 지리적표시제도의 국제화 발전과정과 국가별(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법적보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제도와 비교함. 유럽연합은 1992년 프랑스의 농식품 품질 인증제도를 모태로 지리적표시 및 품질인증 표시 제도를 마련함. 지리적표시제는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회원국 전체가 의무 이행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외적 국제관계나 국내 제도 시행에 대한 방향 설정이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 됨.
- 이지숙(2008)은 지리적표시의 개념과 주요국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은 상표법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특산물 제도가 양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기본법이 확고하지 못한 것이 지리적표시제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기됨.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제도는 품질인

증 측면보다는 상품의 지역적 특성과 명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이 취약하며 제도 이원화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가중한 부담도 문제임.

- 박지현(2011)은 한-EU FTA의 지리적표시 장점을 살펴보고 EU가 추구하는 TRIPs-plus 지리적표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음. 우리나라는 한-EU FTA를 통해 TRIPs 협정 제 23조의 보호수준을 농산품, 포도주, 증류주에 적용하고 보호명칭대상품목을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들의 사용권을 규제 대상으로 두었음. 따라서 협정발효 이후 침부된 품목의 명칭을 한국 내에서 지리적표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상표등록 출원도 거절되고 기등록된 상표도 무효화 될 예정임.
- 고용부(2007)는 지리적표시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TRIPs 상의 지리적표시, 한-EU FTA와 지리적표시 문제를 살펴보았음. EU는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가 가장 잘 발전되어 있고 공동농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 확대 정책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계기로 지리적표시 품목을 대 EU 시장의 수출 상품으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식품의 개발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김한호(2007)는 현재 지리적표시의 세계적인 제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간 이질성,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정의되고 집행될 단일 지리적표시의 규정의 어려움과 지리적표시 관련 품목이 OECD국가에 편재(유럽)되어 있어 시장 혜택 부여시 역분배 문제, 교역장별로 발전될 가능성 등을 언급함. 또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도가 특허청이 관리하는 상표법상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와 중첩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등록권자간 권리 충돌, FTA, DDA 협상 등 국제협상 시 우리의 이중제도가 문제가 될 가능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그 밖에 김태균·홍나경(2010)은 지리적표시제 도입 후 농가수취가격 제고 효과를 통해 지리적표시제 유지·확대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김선아 외(2006)는 음성고추, 제주광어, 제주 감귤을 대상으로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음. 김태균·성명환(2008)은 성주참외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 가치를 측정하였으며, 조정은 외(2009)는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 분석함.
-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리적표시 보호 관련 법·제도 대한 연구, 주요국의 정책 및 국제적 동향, 국내 지리적표시제도 현황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일부 소비자가치 측정 등 소비자 관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EU관련 주요 쟁점을 다룬 연구도 다수 있음. 하지만 현재 공동연구·여건이 조성중인 한·중·일 FTA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쟁점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국내 제도의 개선 및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하였음.

제 2 장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분석

1. 한국의 지리적표시제도

1.1. 한국의 지리적표시제 현황 및 문제점

-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간 보호를 위한 WTO의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지리적 표시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리적 특산품에 한해 지리적표시를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99. 7. 1)을 제정,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를 도입하였음³. 또한, 2004년에 특허청에서 상표법에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제를 도입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특

별법을 통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표 2-2 참고).

- 지리적표시의 신청대상 품목은 1) 해당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해야 하고(지리적 기원), 2)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지리적 특성), 3)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지역과의 연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신청자격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됨)에 한정하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일 때는 개인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함.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함. 심사결과,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등록을 거절함.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 통지를 하고,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에 비로소 등록신청을 공고함.
- 지리적표시의 사후관리는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이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

3 그 후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00.9.21),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01.8.25), 지적재산권 강화, 심판위원회, 변경신청절차 규정 마련('09.12.10 농산물품질관리법)됨.

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지리적 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2)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3)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등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시험의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2-1.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한편, 특허청은 2004년 12월 상표법에 지리적표시를 단체표장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상표법 제2조제1항 제3호의2에서 정의하는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함.
- 지리적표시는 각국의 보호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규정된 등록요건만 충족시키면 해당 지역에서 여러 생산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과 형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⁴.
-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업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구상표법 제2조제3항)으로서,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됨. 단체표장은 단체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자, 수요자에 대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흡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

⁴ 특허청(2005)

장으로 품질 보증 기능이 강함. 또한 단체표장은 정관에 당해 단체가 사용하는 자의 범위, 사용조건, 사용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음⁵.

-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은 단체표장과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나 미국의 증명표장과 한국의 단체표장은 그 내용상 유사함. 증명표장 권리자가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소유권은 정부기구 등과 같이 객관적 지위에 있을 수 있는 자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증명표장은 단체의 소속업자(민간)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마련된 단체표장과 구별됨⁶.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 번째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은 <표 2-1>의 요건에 해당하며,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 특성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⁷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할 것인지 여부⁸와, 출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등록⁹ 등을 결정함.

5 상표와의 차이는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단체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상표법상 단체표장의 침해로 인해 실제로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자는 당해 단체의 소속업자이지만 단체표장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용금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단체만이 할 수 있음.

6 증명표장으로서 지리적 명칭이 보호되나 EU의 지리적표시 개념과는 달리 제품 원산지의 지리적 환경과 제품특성간의 엄격한 연관성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음. 지리적표시는 보통 지리적표시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과 사용권 양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증명표장과 유사하나,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없지 않으나 당해 생산자 그룹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특정한 가입 요건 등이 있다는 점에서 증명표장과 구별됨.

7 실체적 요건(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

8 주체적 요건(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가진 단체의 설립 및 정관의 마련)

9 절차적 요건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은 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냄.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정정관을 제출하거나 출원을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심사착수 시기는 상표·서비스표 출원일로부터 약 6개월 전후임.
- 심사관은 심사후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하게 되고, 출원공고 시 누구든지 출원공고일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소정의 등록세(지방세)와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¹⁰.

1.2. 한국 지리적표시제도의 문제점

-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상표법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농산물관리법의 지리적표시제도가 동시에 시행되고 있음. 이들을 비교해 볼 때 등록 품목의 개발과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농산물관리법의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분쟁에서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등에 대한 부문에서는 특허청의 상표법이 지적재산 보호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¹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현황: 2006년 11월 장흥표고버섯을 시작으로 2011년 5월 말 기준 모싯잎 송편 등 총 117개 상품이 등록됨.

표 2-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

- ▶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 상품
 - 상품의 종류에 제한이 없으므로, 농산물·수산물·그 가공품 뿐 아니라 공산품(특히 수공업품)도 포함
 - 서비스업은 보호대상이 아님(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예외적으로 서비스업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으며, 이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국제조약은 아직 없음)
- ▶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
 - 상품이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지역의 명칭을 말하며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명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생산·제조 및 가공이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에 따라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중의 하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제조 및 가공이 동일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존재
- ▶ 상품의 특정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 존재
 -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또는 가공된 상품과는 차별되는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이 있어야 함
- ▶ 상품의 특성등과 지리적 환경 간에 본질적인 연관성 존재
 - 상품의 품질·명칭 또는 그 밖의 특성 등이 지리적 원산지와 본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지리적표시로 인정될 수 없으며, 상품의 특성 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독특한 기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초하여야 함
- ▶ 소정양식의 출원서를 작성하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다음 심사관의 심사를 통한 등록여부결정에 따라서 등록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설정등록을 함.

자료: 특허청 자료 재정리.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의 경우 품질보호에,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도 명칭보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이러한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의 이원화는 제출서류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제도의 보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출원인은 두 제도 모두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등록자의 부담 및 혼선 가중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함.

표 2-2. 한국의 농림수산물식품부와 특허청 제도 비교

구분	지리적표시등록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
법률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도입)	상표법(2004년 도입)
신청자격	특정 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대상 품목을 생산, 가공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
등록대상	농산물 및 가공품	제한 없음(모든 상품)
심의기관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심사관 1인
등록절차	신청→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사 및 현장조사→신청공고→[이의신청→지리적표시 심사]→등록공고	출원→심사관 심사 → 출원공고 → [이의신청→심사관심사]→등록공고
등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의 우수성 -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과 가공 - 기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 대상 지역의 정의 - 단체의 특성
등록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 배타적 적용가능 - 항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 배타적 사용 가능 - 10년
침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표시 금지(법9조) 규정 -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상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지리적 특산품에 지리적 특산품이 아닌 상품을 혼합하여 판매, 판매 목적의 보관, 진열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상표 사용,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위조·모조용구 제작/교부/판매/유사상표양도/인도 위한 소지(법 66조 2항)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적 구제(국가에 의한 사후관리 및 과태료 부과) - 형사적 구제(허위표시, 유사표시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민사적 구제는 일반 민사법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적 구제(권리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 형사적 구제(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한 사후관리 명문화 - 지리적표시 등록의 직권 취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없음 - 이행관계자등의 신청에 의한 무효·취소 소송

자료: 김한호(2007.5.8), “한·EU FTA 예상 쟁점: 지리적표시제”, GS&J 인스티튜트.

- 하지만, 두 제도의 보호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 우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거짓, 유사표시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단체표장제¹¹는 기상표권자 및 관용 상표권자, 동일 지역의 생산자 모두에게 지리적표시 사용을 허용함으로 지리적표시가 배타적으로 보호받지 못함¹².
- 또한 사후관리와 원산지 유래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특히, 지리적표시 등록 후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를 허용함으로 WTO의 TRIPs 기준¹³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결합상표의 경우 소비자들이 사실상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움으로 현행 국내 상황은 TRIPs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WTO의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에 맞추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국제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11 상표법 제3조의2에 따르면,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한함. 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에 한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음.

12 보성, 이천, 고려, 하동, 순창 등과 같이 대부분의 유명 지리적표시가 특정문양이나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로 등록되어 있음. 동일 지역 내의 생산자라도 일정한 품질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리적표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데 상표법(제51조 2항: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나 당해지역에서 지리적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사용하는 지리적표시 또는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등에 대해서는 단체표장권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에 나와 있듯이 예서는 상표 사용이 정당화됨.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참조.

13 자세한 내용은 TRIPs 22조 3항(지리적표시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구성된 상표가 대중들에게 상품의 원산지로 오인을 하게 한다면 그러한 상표의 등록은 거절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함)과, TRIPs 22조 4항(설령 문자적으로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대중에게 원산지 오인을 야기 할 수 있는 표현은 상표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함.) 참고.

1.3.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지리적표시 상품은 2002년 보성녹차가 제1호로 등록되었고 2006년부터 임산물, 2009년부터 수산물을 등록하기 시작한 후 현재 127건이 등록됨(2011년 9월 기준).

표 2-3.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2011.9)

	2002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농축산물	1	9	12	16	10	8	12	7	77
임산물	-	-	8	5	5	8	6	7	39
수산물	-	-	-	-	-	7	2	2	11
계	1	10	20	21	15	23	20	16	127

주1: 2003(하동녹차), 2004년도(고창복분자)는 2002년과 동일하게 농산물1건씩만 등록함.

주2: 서산마늘(2005년 등록), 여주고구마(2008년 등록)는 2011년 등록 취소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표 2-4. 지리적표시 품목별 등록 현황

분류	품 목
농축산물	쌀, 팥마늘, 고추, 복숭아, 황기, 찹옥수수, 당귀, 한우(고기), 돼지고기, 포도, 사과, 배, 인삼, 복분자, 찹쌀보리쌀, 울벼쌀, 매실, 무화과, 겨울배추, 고구마, 유자, 대파, 양파, 연, 잣, 딸기, 오미자, 미나리, 참외, 수박, 약쭈
임산물	잣, 송이, 곰취, 곤드레, 더덕, 꽃감, 반시, 대붕감, 대추, 밤, 호두, 머루, 고로쇠수액, 표고버섯, 산수유, 삼나물, 미역취, 참고비, 부지깥이, 고사리, 구기자, 죽순, 숯
수산물	꼬막, 전복, 미역, 다시마, 넙치, 김, 키조개
가공품	고추장, 고춧가루, 녹차, 복분자주, 머루와인, 망개떡, 홍주, 잣김치, 삼베,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고려수삼,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표 2-5. 한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실태

	농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p>농축산물 (가공포함)</p>	<p>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전해지, 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동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고흥유자, 고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횡성한우, 영천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안동포도, 홍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청송수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양고춧가루,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보성삼베, 함안수박,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군산찰쌀보리쌀, 제주녹차, 홍천한우, 영월고추, 영천포도, 영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영동포도, 진도대과, 김천포도, 원주치악산복숭아, 영월고춧가루, 예산사과, 영광찰쌀보리쌀, 여수돌산갓, 여수돌산갓김치, 청도한재미나리, 담양딸기, 보성우치올벼쌀, 사천꽃마늘</p>	<p>고흥유자, 이천한우, 함안수박, 보성녹차, 서산마늘, 구례산수유, 제주돼지고기, 영암무화과, 군산찰참보리쌀, 청양구기자, 안동산약마, 고추, 증평인삼, 무주사과, 영주사과, 영천포도, 삼척마늘, 봉동생강, 안동사과, 진도김정쌀, 진도올금, 진도대과, 영암수박, 서생간절곶배, 진안홍삼, 천안배, 강진곶감, 거창사과, 고창수박, 광양매실, 예산사과, 안동한우, 광양백운배, 금산인삼, 상주포도, 영월김삿갓포도, 유가참쌀, 청도한재미나리, 진도홍주, 한산모시, 고창복분자, 순창고추장, 한산모시, 울릉도호박엿, 춘천막국수, 고흥유자차, 진주실크, 무주머루와인, 전주비빔밥, 안홍찜빵, 와인(샤토베프드 파페), 모타넬라쏜세지(2), 포천막걸리, 신안천일염, 광양불고기, 임실치즈, CHIANTICLASSICO(와인), BRUNELLODI-MONTALCINO(포도주), TERRE a SIENA OP(식용올리브유)</p>
<p>임산물</p>	<p>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울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깻이,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창선고사리,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약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홍천잣, 정선곤드레, 은대추, 청도반시, 거제맹종죽순, 태백곰취, 인제곰취, 덕유산고로쇠수액</p>	<p>장흥표고, 양양송이, 경산대추(2), 정안밤, 상주곶감, 천안호두, 영동곶감, 원주웃, 무주머루, 무주천마, 마천웃, 보은대추(2), 남원지리산고로쇠수액, 약양대봉감, 삼척장뇌삼, 거제맹종죽, 무안뽕잎, 광양곶감</p>
<p>수산물</p>	<p>보성별교꼬막,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장흥키조개, 완도김, 완도넙치, 장흥김</p>	<p>남해죽방멸치, 삼천포취치포, 영덕대게,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인제용대황태, 제주옥돔,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영광굴비, 완도넙치, 완도전복, 완도김, 포항구룡포과메기, 제주돔</p>
<p>공산품</p>		<p>이천도자기, 강진청자, 남원목기, 전주한지, 통영누비, 거창화강석</p>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제조 및 가공법의 차이로 인하여 복수 등록된 상품임을 나타냄. 예를 들어, 2007년에 등록된 경산대추는 29류(건조) 및 31류(신선)의 두 상품 모두 등록되었음. 여주고구마, 서산마을은 2011년 등록취소 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허청.

2. 중국의 지리적표시제도

2.1. 중국 지리적표시제도 및 운영체계

2.1.1. 지리적표시 관리 추진체계

- 중국은 지리적표시를 지식재산권중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고 지리적표시 상품을 상업표지로 보호함¹⁴.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음. 첫째,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원산지의 진실한 지리적 위치. 둘째, 상품 혹은 서비스가 독특한 품질과 명예 혹은 기타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함. 셋째, 지리적표시는 산지의 표식이 지 제조원의 표식이 아님. 제조 혹은 원산지의 표식은 지리적표시의 본질이며,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다르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상품은 아무렇게나 주관적으로 생산하면 안 되며 지리적표시의 표식은 기타 상품의 상표로 대체할 수 없음¹⁵.

14 《상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리적표시는 모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 상품의 특정한 질량, 신용 혹은 기타 특징은 주요하게 이 지구의 자연요소 혹은 인문요소가 결정한다”고 함. 또한 중국의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규정》 제2항은 《지리적표시 상품은 산지가 특정지역이고 상품의 특정 질량, 신용 혹은 기타 특징은 주요하게 이 지구의 자연요소 혹은 인문요소에 의거하며 심사비준을 거쳐 지리적 명칭으로 명칭한 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함.

15 법학 이론체계의 시점에서 지리적표시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음. (1) 지리적표시의 권리와 주체의 집단성. 지리적표시 상품은 특정 지역의 생산자가 오랫동안 쌓은 지혜이며 《집단적 독점권》임. 지리적표시 상품의 등록권은 업종협회나 집단, 경제조직에 부여하며 그 지역의 생산자와 상품은 지리적표시의 관련 법률과 제도 및 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지리적표시의 소유권은 집단소유권으로 규정됨. (2) 지리적표시 권력은 유통성을 지니지 않음. 지리적표시 상품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기타 지역의 상품은 특정 원산지의 의미를 띠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리적표시 상품의 기본 특징을 상실함. 그러므로 지리적표시 상품은 규정한 특정적인 지역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양도할 수 없음. (3) 지리적표시 권력의 영구성. 유구한 역사와 전통적인 생산방식은 지리적표시 상품의 독특한 품질을 육성하였고 특정지역이 계속 존재한다면 특정적인 지리조건하에 생산된 상품은 계속 존속하며 기한의 제한이 없음.

- 중국의 지리적표시 사업은 1985년 《공업재산권 파리공약 보호》에 가입한 후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에 관련한 법률 및 제도를 제정하고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한 보호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중국의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체계는 첫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상표법에 따른 보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전문법에 따른 보호, 끝으로 농업부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가 있음. 지리적표시 상품의 주요 보호대상은 농산물 및 그 상품으로 이는 지리적표시 상품이 지원성(地源性)의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은 2001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발표한 《상표법》 법률의 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를 집단상표(원산지증명과 품질증명 상표)와 증명상표로 보호하고 있음. 한편, 2005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 규정》과 2008년 농업부의 《농산물 지리적표시 관리 방법》은 부문 규정 방식으로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를 시행하고 있음.
- 상표법에 따른 보호체계에서는 지리적표시를 일종의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지리적표시를 증명상표 혹은 집단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사용에 부합되는 상품의 생산자 혹은 경영자는 집단조직에 참가하여 지리적표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집단조직에 참가하지 않아도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함. 《상표법 실시조례》와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과 관리방법》은 각각 지리적표시 보호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설명함.
- 2007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지리적표시 상품의 전용 표식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지리적표시 상품의 전용 표식을 공포함. 이 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쳤으며,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등록인의 집단성원 혹은 등록인의 허가를 거친 지리적표시 상품의 생산자, 경영자가 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리적표시를 증명상표 혹은 집단상표 범주에 포함하고 법적으로 보호함.

- 전문법에 따른 보호체계를 살펴보면 1999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원산지 상품 보호제도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산지표시 상품의 보호 규정》을 발표함. 이 규정의 제3조에 따라 《어느 곳이나 원산지 혹은 상품의 보호를 신고할 때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아야 함. 즉 어떤 단위나 개인이 원산지 지역 상품 전용표식을 사용할 때 반드시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함.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위하여 2001년에 《원산지 표시 관리 잠정 및 실시방법》을 발표하고 2004년 10월에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산하에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 관리처를 설립하였고 2005년에는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규정》을 발표함.
- 한편, 2007년 12월 25일, 농업부는 《지리적표시 농산품의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2008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규정함. 중국 농업부의 《농산품 지리적표시 관리방법》의 발표는 농산품의 지리적표시 사용을 규범화 하고 농산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농산품 시장경쟁력을 제고 및 특정지역의 농업특색 브랜드사업을 강화하고 농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계기라고 볼 수 있음.
- 농업부 산하기관인 농산품품질안전센터는 농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2008년5월21일 《농산품지리적표시등록관리규범》을 규정함. 주요 활동으로는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 신고인자격 확정, 평가 규정》,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의 지역분포도 제작 규범》, 《농산품 지리적표시 품질감독관리기술 규범》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범의 출범은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이 더 많은 활용성을 띠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신고인은 지리적표시를 신청할 때 첫째, 지리적표시를 집단 혹은 상

표로 증명하여 국가 상표국에 신청하는 방법, 둘째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 총국에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를 신고하는 방법, 끝으로 농업부에 농산품 지리적표시를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 할 수 있음.

2.1.2. 상표법 보호 체계

-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규정을 살펴보면, 2001년 《상표법》 제2차 수정 후 지리적표시는 집단상표와 증명상표 방식을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2003년, 국가 상표국은 《집단상표, 증명상표 등록과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지리적표시의 신고, 접수, 허가, 관리, 사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2009년부터 국가 상표국은 신고, 등록 및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고 현재 국가 상표국에서 신고, 등록, 심사한 지리적표시는 1,000건을 초과함.
-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상표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이 있는 조직이 관리하고 이 조직 외의 기업 혹은 개인이 상품, 서비스의 사용을 인정받음. 현재 중국의 증명상표는 원산지증명상표 (지리적표시)와 품질증명상표로 구분해 사용되거나 집단상표로 사용됨.
- 상표법규정에 근거하면 집단상표는 단체, 협회 혹은 기타 조직 명의로 등록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업 활동 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증명상표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이 있는 조직이 관리하고 이 조직 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증명상표를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고 상품 혹은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혹은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것임.
- 신고인이 지리적표시를 집단상표나 증명상표로 등록 신청할 때에는 관할구의 인민정부 혹은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함. 주체 자격증명을 제기할 때는 전공 기술인원, 검측설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지리적표시 상품의

특정적인 품질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집단상표를 신고하여 등록한 단체, 협회 혹은 기타 조직은 반드시 지리적표시가 제시한 범위 내의 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지리적표시의 집단상표와 증명상표의 신고등록은 국가 상표국에서 접수하고 상표국에서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수속, 기입 등이 끝나면 3개월 내에 신고인에게 《신고 접수 고지서》를 발급함. 심사는 명확한 제한 시간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1년 이내로 함. 상표국은 심사가 끝난 후 공고하여 3개월 이내에 이의(異議)가 없으면 신고인은 지리적표시의 집단상표 혹은 증명상표의 전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집단상표와 증명상표는 건 수당 비용을 지불하는데 한개 집단상표 혹은 증명상표를 한개 유형에 신고할 때 상품개수, 서비스 항목이 몇 개더라도 상관없이 한건으로 등록을 신고할 수 있음. 중국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가 발표한 《상표 업무 비용 표준에 관한 통지》에 근거해 매 한건의 신고등록 비용을 3,000원으로 규정함.
- 《상표법》 제23조에 의하면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확인일 부터 시작됨.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6개월 전에 비용을 지불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차수는 제한받지 않음. 하지만 농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증명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며, 영구 존속성이 있음.

2.1.3. 전문법 보호 체계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규정을 살펴보면 2005년에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규정》을 발표함.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통일적으로 전국의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사업,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신고, 지리적표시 상품의 전용 표식의 사용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의 심사 기준을 받아

야 한다고 규정함. 지리적표시 상품은 특정 지역, 품질, 명성 혹은 원산지의 자연요소와 인문요소에 의존하며 심사 기준을 거쳐 명칭하는 상품을 말함. 지리적표시 상품은 본 지역에서 재배, 양식한 상품이어야 하고 원자료는 전부 본 지역에서 오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오며 본 지역의 특수 공예와 가공기술로 생산된 상품을 말함¹⁶.

- 2010년 말까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1,170개의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신고를 비준함. 지리적표시 상품을 신고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첫째, 지방정부가 지리적표시 상품의 산지 범위에 대한 규범화 건의, 둘째, 지방정부기관, 협회, 기업이 신고인으로 되어야 함. 셋째, 지리적표시의 증명자료. 신고서(상품 명칭, 유형별, 산지범위, 지리 특성에 대한 설명), 상품의 품질 및 원산지의 자연요소와 인문요소간의 관계설명(상품의 지명도, 생산량, 매출 현황 및 역사에 대한 설명), 넷째,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신고 서류는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 기업의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신고서류는 본 관할구역의 수출입 검험검역국에 제출해야 함.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신고서류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해야 함. 심사에 합격되면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사이트 혹은 기타 보도매체에 지리적표시 상품을 공고해야 하며 심사가 불합격이면 서면으로 신고인에게 고지해야 함.

2.1.4. 농업부 관리법 보호 체계

- 중국 농업부가 관장하는 지리적표시 농산품은 가공식품을 제외한 초기 농산품에만 한정됨¹⁷. 농업부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고한 농산품은 반드시

¹⁶ 국가질검총국에서 관장하는 지리적표시 상품은 농산품만이 아님.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첫째, 명칭은 지리지역과 농산품 통용 명칭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둘째, 고품질의 특성을 지니고 특징적인 생산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함. 셋째, 품질과 특징은 주로 특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인문역사 요소에 의존함. 넷째, 규정된 산지가 있어야 하며, 다섯째, 산지 환경과 품질은 국가 강제성 기술규범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농산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고인은 반드시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가 확정한 농민전업합작경제조직, 생산자협회 등 조직이어야 함. 신고인은 농산품 지리적표시 및 상품의 감독과 관리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농산품의 생산, 가공, 판매를 위하여 지도 및 독립적인 민사 책임을 질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 성급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관기관은 본 행정지역내의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 신고의 접수와 심사 사업을 책임져야 함. 신고인은 등록 신고서, 자질 증명 및 산품특성 묘사, 품질검증보고서, 산지환경 조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접수 일부터 45일내에 신고 서류의 심사와 현장심의를 완료하고 조건이 적합하면 신고서류와 초심결과를 농업 부산하기관인 농산품품질안전센터에 보고함.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초심일부터 10일내에 심사결과 불합격 고지서를 신고인에 통보함.
- 농업부 농산품품질안전센터는 신고서류와 초심결과를 접수받은 일부터 20일내에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고서류를 심사함. 심사에 통과하면 반드시 사회에 공시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공시 마감기일부터 20일내에 제출해야

17 농업 생산 중에서 취득한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기타 산품이며, 비농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신고를 접수하지 않음.

하고 이의가 없으면 농업부에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증명서》를 반포하고 등록된 농산품의 생산기술규범과 표준을 공포함. 이 때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증명서는 장기유효하며 등록비용은 면비로 한함.

2.2. 중국 지리적표시제도의 문제점

2.2.1. 상표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체계의 내부문제

- 지리적표시의 정의와 특징에 비해 볼 때 상표와 지리적표시는 다음과 같은 모순이 존재함.
- 첫째, 등록 상표는 다른 지명이나 상품 통용명칭을 사용하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표의 식별성을 보증함. 그러나 지리적표시는 기타 지명이나 상품 통용 명칭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의 식별성 요구를 만족하지 않음.
- 둘째, 일반 등록상표의 소유인은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이 있기에 등록상표 소유인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배타성이 있음. 그러나 지리적표시의 소유인은 기업집단 혹은 농업조직이고 지리적표시의 소유권인은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으나 경영자 혹은 경영자조직의 사용을 허용함. 또한 지리적표시 상품이 요구하는 생산 공예와 품질에 부합되는 개인이나 기업조직은 모두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인은 거절할 수 없음.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는 배타성이 없음.
- 셋째, 상표권은 일종 재산성 권리로서 양도 할 수 있음. 지리적표시 상품의 품질, 명예 혹은 기타 특성은 본질상에서 산지의 자연요소와 인문요소와 관

계됨. 만일, 어떤 상품이 지리적표시 특정지역을 떠나면 지리적표시 상품이 갖추어야 할 특징과 품질을 잃어버리기에 지리적표시는 양도할 수 없음.

2.2.2. 전문법 시스템 문제

- 중국의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규정》을 발표하고 지리적표시에 대한 개념, 신고주체, 신고원칙, 심사비준 등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음.
- 첫째, 이의제도(異議制度)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음.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규정》 제14조~제16조에서 이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의의 주체 자격, 이의의 사유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지 않았기에 운용성이 강하지 않음.
- 둘째, 지리적표시 신고 심사에 대한 철회제도를 설정하지 않았음. 지리적표시 신고에 대한 심사가 정확성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다고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지리적표시를 비준할 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철회기한, 주체자격, 철회사유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 셋째,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규정은 지리적표시에 대한 사법 규제가 결핍됨.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 도경을 통하여 권리인에 대한 보호가 어려움.
- 넷째, 상표법에 규정한 지리적표시와 충돌하는 모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와 상표간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함.

2.2.3. 보호법률 체계의 다원화 문제

- 중국 두 가지 지리적표시의 보호 법체계(상표법)와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 규정은 상호 충돌하는 딜레마에 처해있음. 전자는 법률에 속하고 후자는 부문 규정에 속하는데 법리상에서 볼 때 법률 지위가 부문규정 지위보다 높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먼저 적용해야 함.
- 중국의 현행 상표법의 실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상품이 지리적표시 사용에 부합되는 사용자 혹은 경영자는 집단조직에 참가하여 지리적표시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않아도 정당하게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상표법의 전속성 특징을 위반하였고 법리상에서 통용할 수 없음.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산하기관인 상표국과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은 모두 지리적표시의 심사권 및 허가권과 관리권이 부여되어 있음. 이것은 부동산 소유인의 동일한 상품 동일한 표시에 대한 주장과 권리면에서 충돌이 발생함.

2.3. 중국의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 중국의 지리적표시 1993년 상표법의 실시세칙에서 “상표증명” 등록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2001년 상표법의 재수정후, 정식으로 “지리적표시”라는 개념을 추가함. 중국 농업부는 2007년 농산품지리적표시관리제도를 공포하였는데 지리적표시 등록조건, 등록과정 및 등록증서, 표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실시함. 이 법은 2008년 2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했으며 현재 등록신청을 받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제2차 전국 지리적표시 조사결과, 야채과일류 지리적표시산품 비중이 40.69%로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량유지류가 10.62% , 세 번째는 중초약재류 9.75%로 나타남. 이 세 가지 종류는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며 농산품총수는 1,850개 전체의 94.92%임.
- 중국 지리적표시는 농업부, 질량검사총국, 상표국 등 3개 기관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부는 1개 기관에만 등록되었지만 2개 이상 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음. 특히, 깨 기관 모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 상품도 18건임.
- 원산지 상표증명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홍콩쌀, 평곡 복숭아, 쿠얼라이 배, 탕산배, 하미과, 화산배추, 육안녹차, 몽산차, 경산차, 한성산초, 태홍 은행, 청원닭, 산서식초 등이 있음(구체적인 각 성지구별 품목 및 지리적명칭은 부록 4 참조).
- 지리적표시 상품보호 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은 연변쌀, 매하쌀 , 향수쌀, 광영좁쌀, 승인임계, 선성오리, 고시계(닭), 선거계, 동산건어물, 삼문청계, 칠리해하게, 반금민물게, 용봉차, 영덕홍차, 정화백차, 노산녹차, 대홍 수박, 창평사과, 청주복숭아, 매주유자, 절강성 감, 회리석류, 선화우유 포도, 경동왕밤, 흑산화생, 안구생강, 창산마늘, 위해미역, 창산산차유, 익양떡, 예릉도기 등이 있음.

표 2-6. 중국의 품목류별 지리표지 등록 현황

유형별	건수	비중(%)	유형별	건수	비중(%)
채소 과실류	793	40.69	식품음료류	130	6.67
식량유지류	207	10.62	수산물류	123	6.31
중초약재류	190	9.75	경공업제품류	76	3.90
차류	171	8.77	주류	66	3.39
축산물류	163	8.36	기타	30	1.54

- 전국 지리적표시 조사연구결과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국 31개 성시구에서 모두 지리적표시에 대해 신고를 했고, 등록 비준한 지리적표시 건수는 100개 이상의 성이 4개(산동성, 절강성, 사천성, 복건성)임.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산동성 178개이며, 조사연구 총수의 9.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중국 각성 시구 지리표지 등록 현황

성시구	건수			생산액		
	건수	비중(%)	순위	생산액 (억 원)	비중(%)	순위
안휘	4.3	2.21	21	156.85	1.87	20
북경	1.4	0.72	27	47.53	0.57	27
복건	109	5.59	4	520.61	6.21	3
감숙	55	2.82	15	118.10	1.41	24
광둥	86	4.41	7	215.68	2.57	16
광서	56	2.87	14	161.38	1.93	19
귀주	36	1.85	25	176.78	2.11	18
해남	12	0.62	29	45.52	0.54	28
하북	39	2.00	24	241.54	2.88	13
하남	99	5.08	5	345.69	4.13	11
흑룡강	72	3.69	9	367.88	4.39	9
호북	83	4.26	8	247.52	2.95	12
호남	62	3.18	13	392.23	4.68	7
길림	48	2.46	17	202.96	2.42	17
강소	90	4.62	6	433.78	5.18	5
강서	67	3.44	11	349.76	4.17	10
요령	68	3.49	10	458.36	5.47	4
내몽고	42	2.15	22	236.73	2.83	15
링하	48	2.46	18	156.38	1.87	21
청해	24.5	1.26	26	80.63	0.96	25
산동	178	9.13	1	1230.87	14.69	1
산서	50	2.57	16	72.85	0.87	26
협서	67	3.44	12	384.39	4.59	8
상해	13	0.67	28	34.15	0.41	29
사천	173	8.88	2	698.84	8.34	2
천진	9	0.46	30	29.31	0.35	30
서장	7.5	0.38	31	20.43	0.24	31
신강	47	2.41	19	146.17	1.74	22
운남	44	2.26	20	241.37	2.88	14
절강	165	8.47	3	427.32	5.10	6
중경	42	2.15	23	137.44	1.64	23

자료: 중국 제2차 전국 지리적표시 조사연구보고.

3.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제도

3.1. 지역단체상표제도 및 운영체계

- 일본은 지리적표시제와 같은 기능을 가진 지역단체상표제도를 2006년부터 지역브랜드¹⁸의 일환으로 시행해 오고 있음.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가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등록을 받는 제도로 기존의 상표등록제도와 같이 등록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상표등록 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활성화나 특정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유의 브랜드로 특산물 만들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등록제도임.
- 지역단체 상표등록제도는 지명과 상품명을 합친 상표가 보다 빠른 단계로 등록을 받도록 도입된 제도임. 지역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보호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각법 제80호)이 2005년 제162회 통상국회에 상정되고 5월 12일에 중의원, 6월8일에 참의원에서 가결되어 전원일치로 통과되어 법률 제56호로 6월 15일에 공포된 후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신청하고자 하는 상품이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역사업의 추진현황과 지역브랜드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역브랜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단체상표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로 연계가 가능함.

18 지역브랜드란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지역 자체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지역 외에서 사람, 상품, 돈이 집중되어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하는 전략임. 지역브랜드는 ‘지역에 대해 소비자로부터의 평가’이며 지역이 가진 무형자산의 하나로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상품(서비스) 브랜드’(PB=Products Brand)로 지역이미지를 구성하는 ‘지역자체 브랜드’(RB=Regional Brand)로 구성됨.

표 2-8. 상표등록제도와 지역 단체상표등록제도의 비교

구 분	단체상표	지역단체상표
주 체	사단(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곳 및 회사제외). 특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	특별 법률에 따라 설립
구성원의 가입자유 담보규정	불필요	필요
상표구성	문자, 도형 등 및 이들의 결합 및 이들과의 색채와 결합	지역명+상품(역무)명만
지정 상품·업무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상표 중에 포함된 상품
주지성	불필요	필요 (인접도도부현 정도)
지역과의 밀접관련성(주)	불필요	필요
제도운용의 개시	1995년 4월 1일	2006년 4월 1일

주: 지역단체상표는 상표 중 지역명칭이 상품의 산지, 상품의 제공지등을 나타냄.

- 지역단체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권리주체는 조합에 한하며 ① 법인명을 가지고 있으며, ② 사업협동조합 등의 특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어야 하고 ③ 설립 근거법에서 구성원 자격인의 가입이 기구성원의 가입 시 가입 자유 보증이 담보될 것이 요건을 갖추어야 함(7조 2제1항 주서).
- 또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조합에서는 ‘지역브랜드’를 전유할 수 없다는 원칙임. 출원인은 출원할 때에 출원인이 조합 등에 소송된 것을 증명할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 제출해야 함(7조2제4항). 단체상표에서 이 조합의 구성원에 사용되는 상표인 것이 전제됨(7조2제1항 주서, 동3항).
- 상표의 요건은 1) 상표가 지역명칭 및 상품명칭 일 것, 2) 지역과 상품과의 관련성, 3) 기타 등록요건으로 구분됨. 아래와 같은 같은 문자 상표에 한해 ‘지역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7조2제1항각호).
 - ① 지역명칭 및 상품 또는 업무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된 상표임. 예를 들어 ‘00흑돼지’, ‘00소’, ‘00토종닭’, ‘00호박’, ‘00차’, ‘00면’ 등임.

- ② 지역명칭 및 상품 또는 역무를 표시하는 것으로 관용되는 명칭을 보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된 상표로 ‘00구이’, ‘00섬유’, ‘00바르기’, ‘00조각’, ‘00장아찌’ 등이 이에 해당됨.
 - ③ ①또는 ②의 문자에 상품의 원산지 등을 표시할 때에 붙이는 문자로 관용되는 문자가 있으며 보통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시되는 것을 더한 상표로 ‘진짜00기름’, ‘00산 흡소’, ‘00특산 강낭콩’, ‘00명산 감귤’ 등임¹⁹.
- 상표 중에 ‘지역명칭’은 출원인 또는 그 구성원이 출원전부터 출원에 관한 상표 사용을 하는 상품으로 상품의 산지, 제공 장소 또는 상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지역명칭이어야 함(7조2 제1항, 2항). 예를 들면 상품의 제법이 해당지역에 유래하는 경우,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상품이 생각될 때에는 적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²⁰.
 - 출원인은 출원할 때 출원에 관한 상표가 ‘지역명칭’을 포함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특허청 장관에 제출해야 함(7조2 제4항). 그 외에 ‘지역단체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단체상표’고유의 등록요건(7조 2 제1항)외에 통상 상표나 통상단체상표에 대해 요구되는 일반적인 등록요건(상표법 3조, 4조 등)을 충족시켜야 함.
 - 상품의 보통명칭이 되는 상표(3조 1항 1호), 상품에 대해 관용되는 상표(3조 1항 2호), 타인의 미등록의 주지한 상표와 동일한 유사상표(4조1항10호)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지역명’과 ‘상품명’인 상표는 지금까지 상품의 산지나 역무의 제공 장소 등을 보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19 즉 ‘원조’, ‘본가’ 등은 해당지역에 분쟁을 부를 여지가 있다면 관용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음.

20 지역약칭도 ‘지역명칭’에 포함될 것임.

표장만으로 된 상표(3조1항3호)나 식별력을 가지지 않은 상표(동항 6호)에 해당하면 거절되었으나 ‘지역단체상표’ 고유의 등록요건(7조2제1항의 요건)을 만족시키면 3조 1항 3호에서 6호까지 규정에 따라 채택됨.

- 한편,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하기까지의 사이는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 출원은 통상 상표 또는 통상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변경이 가능함(11조 1~3항). 사정 또는 심결의 확정 후는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통상 상표 또는 통상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고 또한 통상 상표 또는 통상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을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변경은 할 수 없음(11조4항). 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후의 출원의 출원일은 원래 상표등록출원시로 봄(11조5항).
-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시키면 상표등록을 해야 함(18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날부터 10년이지만 상표권자가 신청에 따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19조), 상표권자는 지정 상품 또는 지정 역무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할 권리를 전용하는 것으로 함(25조). 타인이 지정 상품(지정역무)로 동일 내지는 지정 상품(지정역무)에 유사한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는 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가 됨(37조).
-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람 내지는 침해할 가능성 있는 사람에 대해 ①침해 정지 내지는 예방청구 ②상표가 붙여진 상품의 폐기, 제조설비의 제거 등의 청구 ③손해배상청구를 시행할 수 있음.
- 상표권의 효력범위를 살펴보면 ‘지역단체상표’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출원전부터 부정 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주위에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함(32조2의제1항).

- 또한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방지를 위해 ‘지역단체상표’의 상표권자는 선사용자에 대해 혼동방지를 위한 적당한 표시를 하는 것을 청구 할 수 있음(32조의 2제2항).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는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하는 26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이를 위해 제3자가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상표의 표시상태를 파악하고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제공 장소, 품질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상표권의 이전, 사용권의 설정의 경우, ‘지역단체상표’ 고유의 등록요건을 설치한 취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이전, 사용권의 설정에 대해 일정제한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음(24조의 2).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가능하지만(31조)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할 수 없음(30조).
- 이양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은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이 등록요건인 7조의 2에 위반할 경우는 이양신청사유 및 무효심판청구 사유가 됨. 해당상표가 사후적으로 주위에 알려진 것을 잃은 경우 및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자가 주체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 등이 무효심판청구 이유로 추가됨.
- 이양신청은 7조의 2 제1항에 따라 본래적으로 심사에서 거절될만한 것이 오인되어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43조의2 제1호), 상표게재공보의 발행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몇 명이 등록이야 신청을 할 수 있음(43조의 2).
- 무효심판은 7조의 2 제1항에 관한 심사에서 거절될만한 것이 오인되어 상표등록을 받은 경우(46조1항 1호),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46조).

- 사후에 이유에 따라 무효심판을 할 경우에는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등록상표가 등록 후에 주위에 알려진 것을 잃은 경우, 상표권자가 조직변경에 따라 주체요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 7조2 제1항 각호에 기재된 상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조 1항 1호(보통명칭), 2호(관용상표), 4조의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도 이양신청 사유 및 무효심판청구 사유가 됨.
- 무효심판의 제소기간은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요건(7조의 2제1항)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의 제소기간(등록부터 5년)의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주위에 알려진 요건을 만족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이유로 한 무효심판의 청구에 대해 등록부터 5년을 경과하면서 무효심판청구 당시에 주위에 알려진 바를 획득할 경우에는 청구 할 수 없음(47조2항). 취소심판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미사용되었을때나 단체 또는 구성원이 품질오인이 생기는 사용이 있을 때는 몇 명으로도(소수가)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50조, 51조).

3.2. 일본 지역단체상표제도의 문제점

- 최근(2011. 8. 18일) 일본정부는 농림수산물에 대상으로 지리적표시제도를 2013년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지역성을 활용한 생산방법이나 품질기준을 만족한 상품에 한해 원산지명을 상품브랜드로서 표시한 상품명과 인정 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것을 허가함. 이로 인해 지역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가격상승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에서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단체상표제도와 공존하게 됨. 농림수산성은 두 개의 제도가 인정될 경우, 지리적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지역단체상표제에도 품질요건 평가기준을 도입하거나, 소비자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함. 또한 지역단체상표제도는 「상품법」에 근거하고 있어 「상품법」을 개정하여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도입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할 예정임.

3.3.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등록 현황

- 일본은 현재 42개현에 417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데 교토가 56개로 가장 많고 기후와 효고현이 25개, 이시가와 23개 순으로 나타남.
-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공예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수산물류, 가공물류, 축산물류 순임. 경도쌀, 흑부쌀, 대정감자, 상주소, 녹아도흑소, 풍후소, 대내산우유, 유연고원양배추, 도성배, 고은감귤, 신갈청주, 대야간장, 경도명산장아찌, 십육도김, 호도방어, 오도우동, 무학어묵, 정강차, 지람차 등이 있음(구체적인 각 현별 품목 및 지리적명칭은 부록 5 참조).

표 2-9. 일본 지역단체상표 현황

현명	지역단체 상표 개수	현명	지역단체상 표 개수	현명	지역단체 상표 개수
홋카이도	12	기후	25	야마구치	6
아오모리	3	시즈오카	12	도쿠지마현	7
이바라기	2	아이치	12	카가와현	2
이츠키	3	미에	12	애히메현	8
군마	8	시가	6	고지현	4
사이타마	4	교토	56	후쿠오카현	12
치바	7	오사카	9	사가현	7
동경	15	효고현	25	나가사키현	4
가나가와	7	나라현	11	구마모토현	7
니가타	9	와가야마	10	오이타현	6
나가노	6	도토리현	4	미야자키현	5
토야마	6	시마네현	4	가고시마현	12
이시가와	23	오카야마현	5	오кина와현	14
가나자와	13	히로시마현	11	야마나시	3
합 계			417		

표 2-10. 일본의 품목류별 지역단체상표 현황

유형별	건수	주요 품목
식량유지류	10	쌀, 콩, 팥, 땅콩, 메밀, 유채, 감자, 고구마
과채류	25	채소, 양배추, 무, 파, 오이, 마늘, 토마토, 딸기, 수박, 메론, 마
과실류	24	감귤, 배, 사과, 감, 복숭아, 매실, 밤, 무화과, 유자, 레몬, 홍화
축산물류	37	소, 돼지, 육류, 닭, 우유,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수산물류	46	참치, 고등어, 복어, 새우, 산천어, 조개, 젓갈, 어묵, 김, 소금
임산물류	11	목재, 원목, 노송, 삼나무, 칩
가공식품류	40	과자, 라면, 우동, 간장, 된장, 단무지, 설탕, 차,
공예품류	168	명주, 삼베, 종이, 섬유, 인형, 도자기, 염색, 식기, 칠기, 돛자리
주류	10	청주, 소주
기타	46	온천, 국화, 제비뽑기, 중화요리,

3.2. 지역단체상표의 사례

3.2.1. 하무산 다시마 간장

- 齒舞어업협동조합²¹(북해도 근실시 하무 4정목 120번지 1선리입지)에서는 977년에 배타적 경제수역이 제정됨에 따라 러시아 해역에서 어장이나 어획량이 규제되어 종합적인 어획량, 어획고가 감소하여 지역경제 특성상 100% 어획량에 의존한 생활기반에서 경영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조합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다시마어업에 착안하여 다시마를 사용한 부가가치상품을 개발한 결과 1990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시마 간장을 판매하게 됨. 이후 대기업 내셔널 브랜드 메이커를 시작으로 다수의 경합사가 다시마간장을 개발·판매하여 경쟁이 심화되어 경합상품과의 차별화 및 브랜드 보호, 축진을 목적으로 지역단체상표를 출원하게 됨²².
- 지역단체상표 출원에서 사무적인 서류작성이나 제출 자료의 준비 등으로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변리사와 협의를 통한다면 큰 문제는 없음. 하지만 지역단체상표출원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알릴만한 입증이 되는 실적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가 요구됨.
- 브랜드 관리 및 상품의 품질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내외부에서 상표를 사용한 상품전개 신경이 있을 경우 당조합내부에서의 심사 후 상대측과 상표사용허락 계약서를 체결하고 상표 관리함. 이를 위해 지역단체상표를 취득한 상품을 나타내는 로고마크를 작성하고 카탈로그나 팸플렛 등을 제작함.

21 <http://www.jf-habomai.jp/>

22 はぼまい昆布しょうゆ는 지역명칭과 상품보통명칭이 합쳐진 상표이므로 지역단체상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상표등록이 불가능하여 상품라벨을 도형상표로 등록하고 브랜드보호를 추진해 옴.

- 지역단체상표 권리취득후의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지역단체 상표로 등록됨에 따라 가공업무용으로 ‘하보마이 다시마간장’을 사용한 편의점 밥이나 장아찌, 생선알가공품 등의 상품에서 의뢰가 있어 이들 상품에 당 로고마크가 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음. 특히, 지역단체상표 취득을 계기로 제조원인 대기업 양조메이커와 도외 판매의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도외판매분이 도내판매분으로 판매촉진이 가능함.

3.2.2. 오카야마(岡山) 복숭아

-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동경도 치요전구 오오테정 1정목 3번1호)는 복숭아가 그 품종특성상 기후에 매우 민감하며 생산면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됨. 가까운 현에서는 오카야마 백도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지만 수도권 등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전국적인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복숭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지에서 안정생산을 강화하고 백도의 새로운 브랜드화를 피하기 위해 지역단체 상표 취득을 결심함.
- 지역단체상표출원 준비는 지역 변리사에게 출원을 의뢰하였으며 출원하기 전에는 상품이나 관촉시 ‘오카야마 복숭아’나 ‘오카야마현산 백도’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오카야마 백도’로 총칭하는 상품이나 관촉자재가 적었기 때문에 알려진 바와 같이 증명할 관계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취득사전에 관촉자재나 팸플릿 등 외부에 증명하는 관련 자료, 품질향상 등의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브랜드 관리 및 상품의 품질관리에서는 선물용 기획에는 등록상표명을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회에서 작성한 취급요령에 근거하여 정해진 품종 중에 외관이나 당도를 일정이상으로 선별한 것을 사용하도록 품질 관리

함. 또한 상표명 사용을 희망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사용허락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가 인가한 업자만 ‘사용허락서’를 발행하는 등 무어가로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 선물용 상품에 대해서는 ‘岡山白桃’를 사용한 상품을 확대하고 ‘岡山白桃’를 사용한 가공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폭넓게 상표를 활용함에 따라 인지도 향상과 브랜드력을 강화함.

- 지역단체상표 권리취득후 특허청 홈페이지나 책자 등에 소개되며 지금까지 보다 岡山白桃를 알리는 기회가 확대됨. 만드는 쪽도 사는 쪽도 함께 岡山白桃가 지역 명산품이라는 의식이 높아짐. 브랜드력의 강화나 인지도 향상, 판로개척 확대를 위해 지역단체상표의 취득은 매우 효과적인 수입.

4. 한·중·일 지리적표시 관련 제도 비교 및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여건에 맞추어 여러 가지 유형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시행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건과 환경에 따라 국가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세계 공통의 형태는 존재하지 않음.
-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표시등록제와 단체표장제로 양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두 제도는 보호목적, 내용, 방법, 효과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지리적표시등록제는 국내 우수한 품목들을 개발해야하고 해외 농산물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품질, 명성, 제품차별화 측면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지리적표시 후 사후관리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소비자, 생산자들의 낮은 인지도 등이 지리적표시제 확대를 저해하고 있음. 따라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

선·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임으로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 품목 확대, TRIPs협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표 2-11. 한·중·일 지리적표시제도 비교

구분	중국 (상표법 지리적표시제도)	일본 (지역단체상표제도)	한국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법률 근거	2001년 《상표법》제2차 개정 후 집단상표와 증명상표 방식으로 보호	2006년 4월 1일 상표법 개정안	2004년 상표법 도입
자격 요건	-집단상표(단체, 협회 혹은 기타 조직 명의로 등록) -증명상표(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감독능력이 있는 조직이 관리)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한 단체가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 등록을 받는 제도 -상표가 지역명칭 및 상품명칭 일 것 -지역과 상품과의 관련성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명성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대상 지역의 정의 -단체의 특성
권력 의 효력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확인일 부터 시작됨.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6개월 전에 비용을 지불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차수는 제한받지 않음. -농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증명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며 영구 존속성이 있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 날부터 10년이지만 상표권자가 신청에 따라 변경하는 것도 가능	-지리적표시 배타적 사용 가능 -10년

표 2-12. 한·중 지리적표시제도 비교

	중국(농산품 지리적표시)	한국(지리적표시 등록제)
법률 근거	농업부, 2008년5월21일 《농산품지리적표시등록관리규범》	농산물품질관리법(1999년 도입)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 농산품은 가공식품을 제외한 초기 농산품에만 한정됨. - 명칭은 지리지역과 농산품 통용 명칭으로 구성 - 고품질의 특성을 지니고 특징적인 생산방식으로 생산되어야 함. - 품질과 특징은 주로 특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인문역사 요소에 의존함. - 규정된 산지가 있어야 하며, 산지 환경과 품질은 국가 강제성 기술규범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의 우수성 - 명칭과 지리적 특성의 인과성 -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과 가공 - 기타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것
권력의 효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 지리적표시 등록증명서는 장기 유효 - 등록비용은 면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 배타적 적용가능 - 항구적

○ 한편, 중국은 지리적표시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상품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함. 그러나 현재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한 보호를 관장하는 부문의 설치가 중복되어 있고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됨. 상표법의 집단상표와 증명상표, 전문법에 의한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과 농업부의 지리적표시 보호제도가 3원화된 채 운영되고 있음. 이는 중국의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리적표시 상품의 합법적인 이익과 권리 보호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 지리적표시 상품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전문법의 제정이 요구됨.

○ 중국의 지리적표시 사업은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으며, 기본상에서 혼합 입

법의 보호모델을 채용하고 있음. 중국 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고품질 상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어 지리적표시 상품의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지역단체상표의 경우 지역브랜드 확립과 유사품과의 차별화, 지명도 향상, 수요확대를 위해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지역단체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남아있는데 이 제도가 단체상표라는 틀 속에 설계된 것으로 제도적으로 현, 시, 정 등의 지방공공단체는 ‘조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원인이 되지 못하고 이 제도의 혜택은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들 수 있음²³.

23 현행제도하에서도 지방공공단체가 ‘지역브랜드’ 혹은 ‘준지역브랜드’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는 예가 적지 않게 존재함. 예를 들면 가고시마현의 가고시만 흑돼지, 마츠자카시(미에현)의 마츠자카소, 아키타현의 비내토종닭 등임. 단 이들 3건은 도형 내지는 타 문자 등을 표기한 상표형식임.

제 3 장

한국·중국·일본의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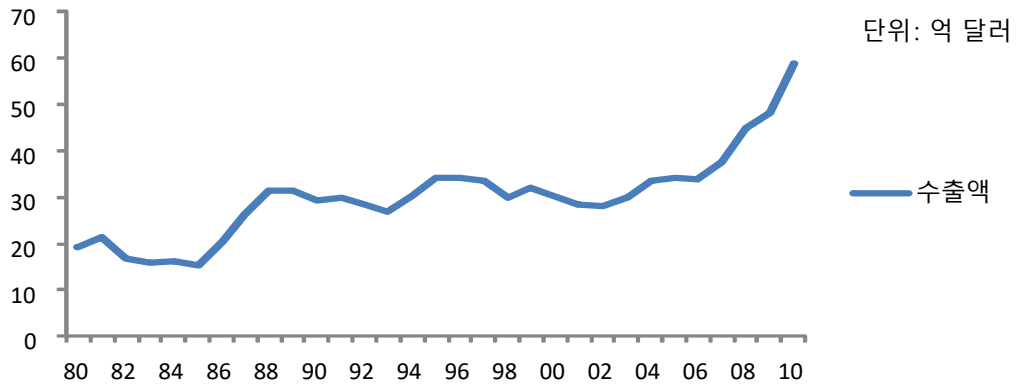
1. 농산물 수출입 현황 및 특성²⁴

1.1. 농산물 수출 현황

- 국내 농림수산물 수출은 1980년 19억 달러를 시작으로 1988년 30억 달러까지 7년이, 그 이후 40억 달러까지 20년(2008년)이 소요됨. 최근 냉해, 태풍, 구제역 등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2010년 전체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2009년 대비 10억 달러 이상(22.3% 증가)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²⁴ 농림수산물부·농수산물유통공사(2011.3), “2010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참고

그림 3-1. 농림수산물 수출동향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부류별로 살펴보면, 2006년 대비 신선농식품 수출은 금액기준 61.9% 증가하였으며, 가공농식품 81.8%, 수산물식품 7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중에서 동기간 버섯(833.4%), 가금(274.1%), 화훼류(155%)의 수출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았으며 수산부문에서는 어류가 86.2% 증가하여 가장 높았음.
- 수출국별로는 일본의 수출 비중(32%)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 아세안, 미국 순으로 나타남. 특히 중국, 아세안, EU의 최근 5년 수출 평균 증가율이 20%를 상회하여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 부류별 수출실적

단위: 천 달러, 톤, %

구분	2006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물	1,801,958	3,394,787	2,634,285	4,809,286	3,104,011	5,880,016	72.3	73.2
<농식품>	1,433,503	2,304,361	1,982,071	3,298,056	2,310,966	4,801,854	61.2	108.4
신선농식품	185,650	539,742	309,365	739,381	328,508	873,832	77.0	61.9
채소류	46,282	133,608	78,841	161,548	66,759	178,391	44.2	33.5
김치	25,600	70,328	28,505	89,386	29,672	98,360	15.9	39.9
인삼류	1,893	88,598	3,106	108,916	3,298	124,204	74.2	40.2
화훼류	8,077	40,414	10,946	77,179	12,550	103,067	55.4	155.0
과실류	65,645	98,427	118,008	172,566	133,190	195,422	102.9	98.5
버섯류	1,605	4,166	16,221	33,039	21,178	38,885	1,219.5	833.4
돼지고기	12,216	23,863	12,513	11,625	482	780	-96.1	-96.7
가금류	3,220	8,508	12,389	18,380	22,202	31,827	589.5	274.1
산림부산물	21,112	71,830	28,836	66,742	39,177	102,896	85.6	43.2
가공농식품	1,247,853	1,764,619	1,672,706	2,558,675	1,982,458	3,208,022	58.9	81.8
가공식품	1,186,405	1,712,428	1,532,855	2,457,716	1,849,087	3,096,796	55.9	80.8
목재류	61,448	52,191	139,851	100,959	133,371	111,226	117.0	113.1
<수산물>	368,455	1,009,426	652,214	1,511,230	793,045	1,798,162	115.2	78.1
어류	216,810	589,146	407,573	929,328	558,028	1,096,933	157.4	86.2
연체동물	63,789	202,376	133,666	284,567	94,550	332,065	48.2	64.1
갑각류	18,312	65,733	15,990	70,965	14,184	77,228	-22.5	17.5
해조류	25,331	125,090	21,843	139,401	27,797	171,895	9.7	37.4
기타	44,213	108,081	73,142	86,969	98,486	120,041	122.8	11.1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표 3-2. 국가별 수출 실적 비교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882.6	787.4	518.8	235.7	243.7	211.3	719.8	332.7
비중	32.0	13.4	8.8	4.0	4.1	3.6	12.1	5.7
전년대비	19.1	39.3	11.0	4.2	24.2	36.4	38.1	28.4
전년대비 5년 평균	10.5	23.9	8.2	2.3	11.6	18.4	28.3	33.5

자료: 농림수산물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3 “2010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수출 품목의 다변화로 주요 수출 품목은 껌, 참치, 설탕, 커피조제품, 라면, 인삼, 소주, 오징어, 김, 음료 등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10개로 늘어남.

표 3-3. 1억 달러 이상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품목	수출액	7품목	수출액	7품목	수출액	8품목	수출액	10품목	수출액
								음료	102.6
								김	105.2
						오징어	108.1	오징어	114.8
		소주	124.1	소주	124.1	인삼	108.9	소주	123.1
라면	102.6	라면	115.7	오징어	126.5	소주	112.9	인삼	124.2
소주	118.7	오징어	123.8	설탕	127.7	라면	141.9	라면	157.2
커피조제품	123.4	설탕	137.8	라면	129.5	설탕	149.1	커피조제품	205.9
설탕	125.3	커피조제품	158.7	커피조제품	196.0	커피조제품	193.8	설탕	242.1
참치	239.6	참치	293.5	참치	293.2	참치	314.4	참치	374.4
껌	334.9	껌	397.1	껌	453.0	껌	466.9	껌	536.5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3 “2010년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 전체 수출국 중 1억 달러 이상 수출은 2006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7개국에 불과했으나 2010년 현재 11개국으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표 3-4. 연도별 1억 달러 이상 주요 수출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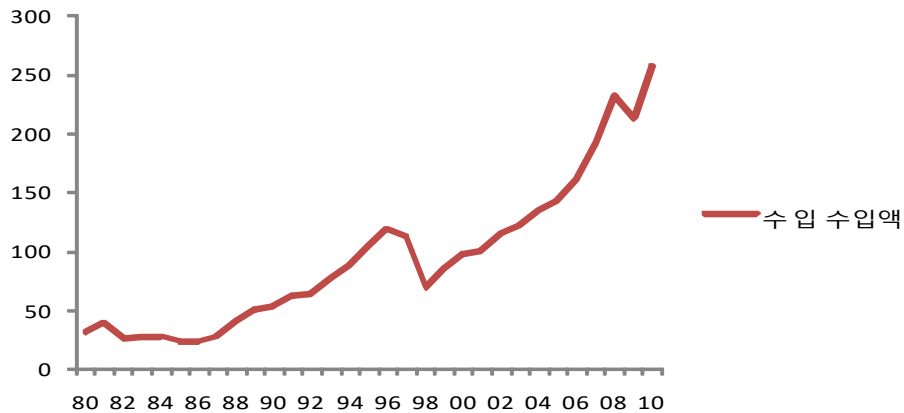
2006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7개국				
2007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	8개국			
2008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태국	대만	UAE	이라크	9개국		
2009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태국	대만	베트남	9개국		
2010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러시아	UAE	대만	태국	베트남	이라크	필리핀	11개국

1.2. 농산물 수입 현황

- 국내 농림수산물식품 수입은 1995년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외환위기에 감소한 이후 2001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수입액은 전년대비 21.4% 증가한 258억 달러임.

그림 3-2. 농림수산물식품 수입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채소류의 수입액의 증가율이 27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저온현상에 따른 작황 복진 및 겨울철 지속적인 한파로 인한 채소류 가격 폭등에 따른 배추, 마늘, 김치 등 전반적인 수입증가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3-5. 부류별 수입실적

단위: 천 달러, 톤, %

구 분	2006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식품	36,872,529	16,100,906	43,518,986	21,240,870	47,177,833	25,787,181	27.9	21.4
<농식품>	35,479,463	13,327,336	39,438,672	18,346,469	42,462,217	22,329,840	19.7	21.7
채소류(김치포함)	735,816	499,746	668,182	190,595	853,913	719,191	16.0	277.3
김치	177,959	87,955	148,124	66,335	192,936	102,019	8.4	53.8
인삼류	379	5,330	156	3,062	160	4,017	-57.8	31.2
화훼류	5,602	35,819	9,083	38,107	11,956	44,744	113.4	17.4
과실류	761,603	712,681	654,714	717,006	821,103	945,132	7.8	31.8
버섯류	17,593	13,295	11,420	7,951	16,185	13,779	-8.0	73.3
곡류	12,687,846	2,116,111	11,730,718	3,005,808	13,593,683	3,455,019	7.1	14.9
두류	1,211,583	360,629	11,695,755	644,952	1,318,399	651,677	8.8	1.0
채유종실	285,280	163,288	244,534	227,221	257,997	247,832	-9.6	9.1
쇠고기	236,338	878,977	244,798	861,956	291,539	1,185,618	23.4	37.5
돼지고기	3,330,350	777,922	308,411	712,942	305,829	716,558	-90.8	0.5
가금육	79,088	123,979	73,501	142,427	109,794	219,878	38.8	54.4
<수산식품>	1,393,066	2,773,571	4,080,314	2,894,401	4,715,616	3,457,341	238.5	19.4
어류	920,505	1,557,608	762,621	1,567,403	806,293	1,891,036	-12.4	20.6
연체동물	211,513	448,856	179,522	446,938	209,226	572,150	-1.1	28.0
갑각류	129,457	511,147	106,183	478,250	101,270	503,556	-21.8	5.3
해조류	15,737	21,573	11,103	15,177	11,285	18,098	-28.3	19.2
기타	115,854	234,387	3,020,885	386,633	3,587,542	472,501	2,996.6	22.2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입 의존도를 살펴보면 미국(23%), 중국(17%), 아세안(13%) 순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대비 중국, 브라질, 캐나다의 수입 증가율은 크게 늘어남.

표 3-6. 국가별 수입 실적 비교

단위: 천 달러, 톤, %

구 분	2006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물	36,872,529	16,100,906	43,518,986	21,240,870	47,177,833	25,787,181	27.9	60.2
미국	9,621,028	2,976,828	10,895,172	4,590,920	13,223,772	5,959,658	37.4	100.2
중국	6,220,249	3,236,073	6,834,454	3,675,998	6,955,342	4,323,225	11.8	33.6
호주	3,534,141	1,658,283	4,832,901	1,703,116	5,278,757	2,212,697	49.4	33.4
브라질	2,154,929	605,825	2,983,875	1,471,111	2,554,033	1,518,386	18.5	150.6
캐나다	1,310,917	493,359	1,277,036	749,131	1,889,276	1,062,794	44.1	115.4
뉴질랜드	2,994,044	715,682	2,592,360	658,897	2,473,492	845,944	-17.4	18.2
러시아	1,568,151	541,467	890,932	616,828	894,579	738,492	-43.0	36.4
ASEAN	4,817,727	2,003,342	5,823,371	2,758,103	6,474,619	3,422,457	34.4	70.8
EU	720,929	1,677,348	1,096,426	1,713,066	1,533,101	1,955,776	112.7	16.6
기타	3,930,447	2,192,699	6,292,459	3,303,700	5,900,862	3,747,752	50.1	70.9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2. 지리적표시 관련 상품의 수출입 현황 및 특성

2.1. 한·중·일 농산물 교역 구조 및 특성

2.1.1. 한·중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의 대중국 농림수산물 수출은 787.4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3% 증가하였음. 수출 비중은 농식품이 71%(556.2 백만 달러), 수산식품이 29%(231.2 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수산식품의 수출액 증가율이 58.7%로 높게 나타남.

표 3-7. 한·중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14.8	565.2	474.3	787.4	14.3	39.3
농식품	322.9	419.5	367.6	556.2	13.8	32.6
농산물	303.1	211.4	326.7	269.8	7.8	27.6
축산물	5.4	18.6	3.3	23.4	-38.9	25.8
임산물	106.1	74.2	94.5	86.2	-10.9	16.2
수산식품	91.9	145.7	106.7	231.2	16.1	58.7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축산물과 임산물의 경우 수출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수출액은 25.8%, 16.2% 각각 늘어남.

표 3-8. 중국 농식품 부류별 수출 실적 비교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414.8	565.2	474.3	787.4	14.3	39.3
농식품	322.9	419.5	367.6	556.2	13.8	32.6
<신선>	41.0	82.1	52.5	109.1	28.0	32.9
채소류	1.0	5.9	0.9	6.3	-10.0	6.8
김치	0.1	0.2	0.1	0.4	0.0	100.0
인삼류	0.3	6.8	0.4	16.1	33.3	136.8
화훼류	2.4	14.4	2.9	18.6	20.8	29.2
과실류	16.1	20.2	23.8	30.0	47.8	48.5
버섯류	6.3	9.4	5.1	6.5	-19.0	-30.9
돼지고기	0.1	0.9	0.0	0.3	-100.0	-66.7
가금육류	0.0	0.0	0.1	0.4	-	-
산림부산물	14.7	24.3	19.2	30.5	30.6	25.5
<가공>	281.9	337.4	315.1	447.1	11.8	32.5
가공식품	190.4	287.4	239.7	391.5	25.9	36.2
면류	4.3	39.6	4.2	39.7	-2.3	0.3
소스류	4.2	18.3	5.1	25.9	21.4	41.5
주류	8.8	10.6	11.7	14.0	33.0	32.1
과자류	4.8	36.5	7.1	43.5	47.9	19.2
연초류	0.6	12.0	0.5	7.6	-16.7	-36.7
유제품	3.1	11.1	1.8	16.4	-41.9	47.7
목재류	91.5	50.0	75.4	55.6	-17.6	11.2
수산식품	91.9	145.7	106.7	231.2	16.1	58.7
어류	40.1	68.3	69.9	136.1	74.3	99.3
연체동물	42.0	55.1	23.4	52.5	-44.3	-4.7
해조류	3.2	9.8	6.7	13.8	109.4	40.8
갑각류	1.0	5.5	1.2	10.0	20.0	81.8
기타	5.6	7.0	5.5	18.8	-1.8	168.6

자료: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3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 신선농산물에서 채소류의 수출물량은 작년에 비해 10% 감소하였지만 수출액은 6.8% 증가하였으며 김치, 인삼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가공식품 중에는 유제품의 수출 변화율이 47.7%로 가장 높았음.
- 한편 수입 부문을 살펴보면 문어, 조기 등의 수산물과 고추, 김치, 마늘 등의 채소류 수입 증가로 전체 수입액은 전년대비 17.6% 증가한 4,323.2 백만 달러임.

표 3-9. 중국 농식품 부류별 수입 실적 비교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2009년(A)		2010년(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834.5	3,676.0	6,955.3	4,323.2	1.8	17.6
채소류	574.0	323.8	740.7	531.6	29.0	64.2
고추	147.2	81.0	149.7	109.2	1.7	34.8
김치	148.1	66.3	192.9	102.0	30.2	53.8
마늘	32.1	18.1	64.0	101.3	99.4	459.7
당근	75.6	34.6	86.1	40.0	13.9	15.6
박류	979.6	216.7	782.9	181.9	-20.1	-16.1
전분박	589.2	103.6	574.7	117.3	-2.5	13.2
곡류	242.2	192.3	242.7	165.3	0.2	-14.0
쌀	163.4	159.2	171.7	136.2	5.1	-14.4
보리	55.4	23.0	36.3	13.7	-34.5	-40.4
옥수수	1.8	0.8	12.3	3.5	583.3	337.5
채유종실	98.4	118.5	81.6	128.8	-17.1	8.7
참깨	25.3	44.1	27.2	48.6	7.5	10.2
사료	281.0	79.6	277.7	97.8	-1.2	22.9
두류	233.8	170.5	108.6	85.1	-53.6	-50.1
대두	187.2	140.7	54.4	35.7	-70.9	-74.6
축산물	15.8	42.2	18.6	53.3	17.7	26.3
임산물	2882.1	1077.9	2915.8	1228.5	1.2	14.0
수산물	919.4	853.8	1113.8	1095.7	21.1	28.3
문어	40.5	116.8	45.0	152.3	11.1	30.4
조기	41.0	110.7	44.2	150.9	7.8	36.3

자료: 농림수산물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11.3 “2010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채소류는 장황부진에 따른 고추, 김치, 마늘 등의 전반적인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64.2% 증가한 531.6 백만 달러임. 곡류는 수입단가에 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14.1% 감소한 165.3 백만 달러이며 수산물은 동기간 28.3% 증가한 1,095.7 백만 달러로 나타남.

2.1.2. 한·일 수출입 현황

- 우리나라의 2010년 대일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882.6백만 달러로 이중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4%, 수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임. 임산물을 제외하고 2009년에 비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축산물의 수출액 증감률이 24.2%로 가장 높았음.

표 3-10. 한·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87.5	1,580.4	961.9	1,882.6	39.9	19.1
농식품	548.0	846.3	647.7	1,023.1	18.2	20.9
농산물	526.3	794.1	622.5	967.4	18.3	21.8
축산물	6.5	19.8	11.5	24.6	76.9	24.2
임산물	15.2	32.4	13.7	31.1	-9.9	-4.0
수산식품	139.5	734.1	314.2	859.5	125.2	17.1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 신선농산물 중 채소류 수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89.4백만 달러로 일본의 가을철 일기불순에 따른 채소류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채소류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김치는 가격경쟁력을 갖춘 일본산 김치의 판촉강

화와 국내 배추가격 폭등에 따른 김치 원료 조달의 어려움 등 김치 수출에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현지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 상반기 대기업 김치 제품 TV 광고 등에 힘입어 동 기간 수출액은 6.7% 증가한 82.8백만 달러로 나타남.

- 화훼부문은 일본의 화훼류 재배면적의 감소와 한국산 매직로즈, 백마 등 신 품종 개발 및 품질 향상으로 인하여 수출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재배시설 개선 및 재배지 확대 등으로 수출주력 품목(장미, 국화, 백합)의 수출도 호조를 보여 수출액은 전년대비 41.0% 증가하였음.
- 가금육의 수출은 전년대비 69.7%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표품목인 삼계탕의 미용효과, 건강식 인식으로 이미지 상승, 한식 붐에 따른 수요 증가와 판촉 전 등 홍보 등에 영향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수산식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895.5 백만 달러로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수출, 엔고 영향 등으로 한국산 수입이 증가하였고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물량이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인삼류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고가의 인삼제품 수요가 감소로 전년대비 13.6% 감소한 29.8백만 달러를 수출하였음.
- 우리나라 전체 농림수산식품 수입액 중 대일 수입 비중은 0.003%에 불과한 658.8백만 달러로 주요 품목은 명태(57.9백만 달러), 혼합조제식료품(55.9백만 달러), 펄프(49.4백만 달러)임.

표 3-11. 일본 농식품 부류별 수출 실적 비교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687.5	1,580.4	961.9	1,882.6	39.9	19.1
농식품	548.0	846.3	647.7	1,023.1	18.2	20.9
<신선>	73.8	297.6	73.9	331.1	0.1	11.3
채소류	28.7	84.3	25.5	89.4	-11.1	6.0
김치	24.4	77.6	24.1	82.8	-1.2	6.7
인삼류	1.0	34.5	0.5	29.8	-50.0	-13.6
화훼류	7.9	56.9	9.1	80.3	15.2	41.1
과실류	6.7	17.1	9.2	19.8	37.3	15.8
버섯류	0.3	1.9	0.8	2.0	166.7	5.3
돼지고기	0.1	0.5	0.0	0.0	-100.0	-100.0
가금육류	0.9	4.3	1.4	7.3	55.6	69.8
산림부산물	3.8	20.5	3.3	19.7	-13.2	-3.9
<가공>	474.2	548.7	573.8	692.0	21.0	26.1
가공식품	462.8	536.8	563.4	680.6	21.7	26.8
면류	10.1	34.4	11.7	45.9	15.8	33.4
소스류	3.9	10.5	5.1	14.2	30.8	35.2
주류	156.3	165.6	211.3	222.9	35.2	34.6
과자류	46.4	77.9	49.0	86.4	5.6	10.9
연초류	0.3	5.0	0.3	4.4	0.0	-12.0
유제품	3.0	9.9	2.0	7.4	-33.3	-25.3
목재류	11.4	11.9	10.4	11.4	-8.8	-4.2
수산식품	139.5	734.1	314.2	859.5	125.2	17.1
어류	62.0	439.0	221.7	519.6	257.6	18.4
연체동물	23.9	130.7	26.0	154.8	8.8	18.4
해조류	8.4	70.2	9.8	83.1	16.7	18.4
갑각류	11.1	44.4	9.4	45.1	-15.3	1.6
기타	34.1	49.8	47.3	56.9	38.7	14.3

자료: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www.kati.net).

표 3-12. 일본 농식품 부류별 수입 실적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주요 수입품목(수입금액)
일본	531.7	536.2	658.8	22.9	명태(57.9), 혼합조제식료품(55.9), 펄프(49.4)

2.2. 한·중·일 지리적표시 상품 시장분석

2.2.1.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상품 수출현황

- 우리나라는 현재 67개 품목(농관원 및 산림청 등록 기준)의 지리적표시 상품들이 수출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소품목이지만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 3-13.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상품 수출 현황

지리적표시 품목	주요 수출국
고창북분자주 농관원 제3호 등록 (2004. 1. 15)	- 2009년 12월 중국 수출, 2010년 2월 일본, 4월 미국 수출
영양고춧가루 농관원 제5호 등록 (2005. 3. 5)	- 2008년 9월 미국, 12월 일본 수출
의성마늘 농관원 제6호 등록 (2005. 7. 20)	- 2004년 8월 일본 수출
피산고춧가루 농관원 제9호 등록 (2005. 11. 7)	- 2010년 일본 수출
이천쌀 농관원 제12호 등록 (2005. 12. 26)	- 2008년 8월 인도네시아 수출, 2011년 6월 홍콩 수출
양양송이산림청제1호등록(2006.3.27)	- 2009년 10월 일본 수출
고흥유자 농관원 제14호 등록 (2006. 5. 8)	- 2008년 일본, 중국 등 수출
장흥표고버섯 산림청 제2호 등록 (2006. 5. 16)	- 2011년 4월 일본 수출
제주돼지고기 농관원 제18호 등록 (2006. 9. 19)	- 2009년 9월 일본 수출
산청곶감산림청제3호등록(2006.6.9)	- 일본 수출
고려홍삼 농관원 제19호 등록 (2006. 12. 7)	- 2009년 4월 미국, 일본, 캐나다 수출
경산대추 산림청 제9호 등록 (2007. 1. 3)	- 2010년 8월 일본 수출
남해마늘농관원제28호등록(2007.5.1)	- 2008년 3월 일본 수출
창녕양파 농관원 제30호 등록 (2007. 6. 5)	- 2009년 8월 대만, 일본 수출
고려백삼 농관원 제20호 등록 (2006. 12. 7)	- 2010년 10월 중국, 홍콩 수출
고려태극삼 농관원 제21호 등록 (2006. 12. 7)	- 2010년 10월 중국, 홍콩 수출
무안백련차 농관원 제33호 등록 (2007. 7. 11)	- 2009년 8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수출
광양매실 농관원 제36호 등록 (2007. 8. 27)	- 2009년 일본, 중국 수출
청양고추 농관원 제40호 등록 (2007. 12. 20)	- 2010년 3월 일본 수출
청양고춧가루 농관원 제41호 등록 (2007. 12. 20)	- 2010년 3월 일본 수출
영덕송이 산림청 제14호 등록 (2008. 2. 11)	- 2008년 9월 일본 등 수출
구례산수유 산림청 제15호 등록 (2008. 3. 12)	- 2010년 12월 일본 수출
함안수박 농관원 제46호 등록 (2008. 4. 7)	- 일본 수출
영월고추 농관원 제52호 등록 (2008. 12. 19)	- 일본 등 수출
악양대봉감 산림청 제23호 등록 (2009. 5. 14)	- 2010년 일본 등 수출
보은대추 산림청 제27호 등록 (2010. 3. 15)	- 2010년 11월 중국 수출
청도반시 산림청 제28호 등록 (2010. 3. 15)	- 2011년 4월 일본 수출
영월고춧가루 농관원 제64호 등록 (2010. 3. 25)	- 2010년 10월 미국, 일본 등 7개국 수출

지리적표시 품목	주요 수출국
정선곤드래 산림청 제29호 등록 (2010. 7. 22.)	- 2011년 5월 일본 수출(막걸리)
진도구기자 산림청 제34호 등록 (2011. 3. 2.)	- 2009년 8월 유럽, 일본 등 수출
진도구기자 산림청 제34호 등록 (2011. 3. 2.)	- 2009년 8월 유럽, 일본 등 수출
보성녹차 농관원 제1호 등록 (2002. 1. 25)	- 2010년 6월 미국 수출
하동녹차 농관원 제2호 등록 (2003. 5. 2)	- 2010년 8월 가나 수출
성주참외농관원제10호등록(2005.12.1)	- 2011년 6월 수출
철원쌀 농관원 제13호 등록 (2005. 12. 26)	- 2007년 8월 미국 수출
홍천찰옥수수 농관원 제15호 등록 (2006. 6. 5)	- 2006년 8월 미국 수출
정안밤 산림청 제4호 등록 (2006. 9. 15)	- 2010년 3월 미국 수출
충주사과 농관원 제23호 등록 (2006. 12. 11)	- 2011년 4월 미국 수출
울릉도삼나물 산림청 제5호 등록 (2006. 12. 15)	- 2008년 2월 미국 수출
울릉도미역취 산림청 제6호 등록 (2006. 12. 15)	- 2008년 2월 미국 수출
울릉도참고비 산림청 제7호 등록 (2006. 12. 15)	- 2008년 2월 미국 수출
울릉도부지갱이 산림청 제8호 등록 (2006. 12. 15)	- 2008년 2월 미국 수출
한산모시 농관원 제25호 등록 (2006. 12. 29)	- 2010년 1월 호주 수출
진도홍주 농관원 제26호 등록 (2007. 1. 23)	- 2009년 4월 영국 수출
청양구기자 산림청 제11호 등록 (2007. 2. 1)	- 2009년 3월 미국 수출
단양마늘 농관원 제29호 등록 (2007. 5. 4)	- 2009년 4월 필리핀 수출
상주곶감 산림청 제12호 등록 (2007. 6. 13)	- 2008년 미국, 대만 등 수출
무안양파 농관원 제31호 등록 (2007. 7. 2)	- 2007년 6월 인도네시아 수출
여주쌀 농관원 제32호 등록 (2007. 7. 11)	- 2007년 8월 미국 등 수출
청송사과 농관원 제34호 등록 (2007. 8. 27)	- 2010년 1월 인도네시아 수출
고창복분자 농관원 제35호 등록 (2007. 8. 27)	- 2009년 2월 수출
해남고구마 농관원 제42호 등록 (2008. 1. 30)	- 2008년 8월 유럽 수출
영암무화과 농관원 제43호 등록 (2008. 1. 30)	- 2010년 9월 미국 수출
고려인삼제품 농관원 제47호 등록 (2008. 6. 16)	- 수출 원활
고려홍삼제품 농관원 제48호 등록 (2008. 6. 16)	- 수출 원활
군산찰쌀보리 농관원 제49호 등록 (2008. 7. 30)	- 2009년 10월 미국 수출
천안호두 산림청 제18호 등록 (2008. 12. 28)	- 2010년 9월 미국, 호주, 동남아 등 수출
영천포도 농관원 제53호 등록 (2009. 1. 22)	- 2009년 8월 미국 수출
영주사과 농관원 제54호 등록 (2009. 1. 22)	- 2009년 12월 대만 수출
무주머루 산림청 제19호 등록 (2009. 1. 30)	- 2007년 4월 미국 수출
문경오미자 산림청 제20호 등록 (2009. 1. 30)	- 2007년 5월 미국 수출
영동포도 농관원 제60호 등록 (2009. 11. 16)	- 2007년 6월 미국 수출
예산사과 농관원 제66호 등록 (2010. 3. 25)	- 2009년 12월 대만 수출
담양딸기 농관원 제70호 등록 (2010. 11. 8.)	- 2011년 3월 홍콩, 싱가포르 등 수출
담양죽순산림청 제36호등록(2011.3.2.)	- 2011년 3월 스위스 등 유럽 수출
무주머루와인 산림청 제37호 등록 (2011. 4. 26.)	- 2007년 4월 미국 수출
충주밤 산림청 제38호 등록(2011. 4. 26.)	- 2010년 12월 인도네시아 수출

자료: 사단법인 향토지적재산본부.

2.2.2. 한·중·일 농산물 교역시 문제점

-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시 국제교역 거래장벽이 낮아지면서 농산물 수출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도 증대됨.
- 하지만, 농산물의 수출금액은 표면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선 농산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출 농가의 소득에 직결되는 수출증대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농가 및 수출전문조직이 영세하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체계의 구축이 어려워 전반적으로 국제 수출경쟁력은 열위에 있음.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보관, 포장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단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생산 지역에서 공동선별, 공동 정산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²⁵, 현대화된 예냉 설비, 저온시설 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현지에서 공동선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선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 최근 중국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증대되면서 일본은 농식품 잔류농약 관리방식을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 농식품 별로 잔류농약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포함된 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한층 강화된 농약관리시스템인 포지티브방식²⁶으로 2006년부터 시행중임.

²⁵ 우리나라 백합은 농가단위로 선별, 포장하기 때문에 품질 균일성이 떨어져 일본산보다 20~30%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주요 25 품목 생산·유통 분석 및 대책(2008.12)”).

²⁶ positive list는 원칙적으로 수입은 금지·제한하지만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만을 열거한 상

- 또한, 간이수입식품의 통관 등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주요 수출국들의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는 한층 심화되었음.
- 일부 신선 농산물의 경우 빈번한 잔류농약 검출로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수출검역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출이 중단되거나 안전성 검사 샘플 비율이 높아져 비용 및 클레임 부담이 국내 업체와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음²⁷.

표 3-14. 주요 농산물품 안전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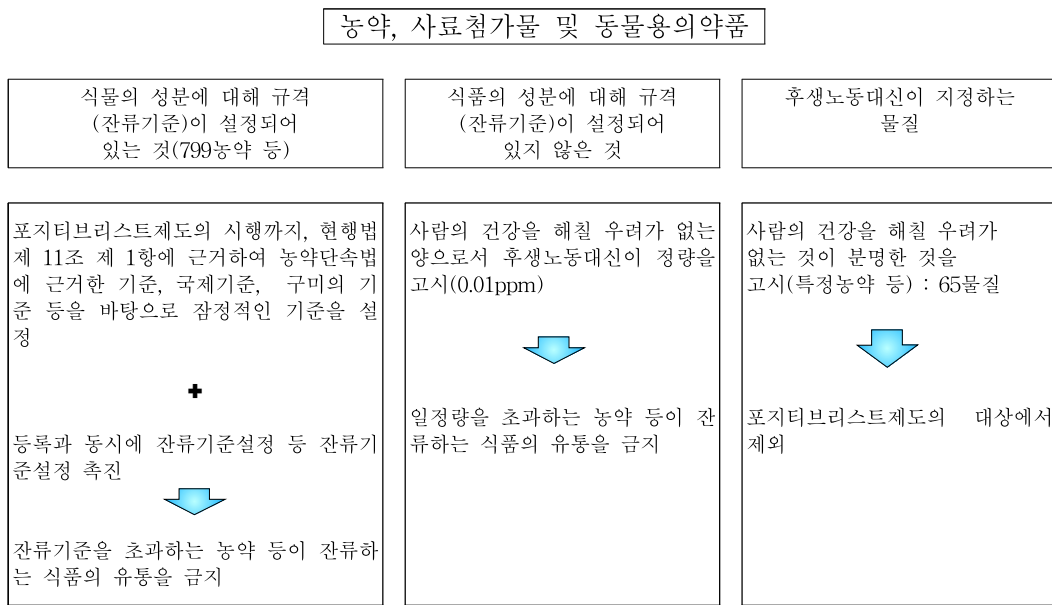
	내 용	결 과
2005.12, 2006.1	파프리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전수검사, ('05) 57백만 달러 → ('06) 48
2008	파리고추, 방울토마토 등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간이통관 검사 강화 등

자료: 농림수산물부. “농림수산물 수출확대 5개년 종합계획(안)”. 2008.

품 품목표를 가리킴. 포지티브 방식은 기본적으로 수입제한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이나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음.

27 사례: 일본 파프리카 수출의 전면 검사제 실시(2009년 경남지역 파프리카)

그림 3-3. 일본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



자료: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2006.4). “대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잔류기준”.

- 한편, 농산물 무역이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육성된 농산물 품종들이 해외로 불법으로 반출되어 생산될 뿐만 아니라 역수입되거나 해외에서 판매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일례로 일본 골풀이 중국으로 무단 반출되어 그 수확물이 일본에 수입되려던 골풀을 발견하고 그 육성권자는 수입금지를 신청하여 수입을 저지한 사례가 있음.

- 이와 같이 국내 농업 여건은 농업강대국들에 비해 수출경쟁력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지만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 및 농업 부가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수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할 수 있음.

표 3-15.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단계별 문제점

단계별	문제점
생산	· 생산자의 수출 마인드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외 가격 변동 시 공급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선별, 포장, 상품화	· 수입 바이어와 상호 기준 설정 및 관리 후 물량 처리 문제에 대한 의견절충이 힘들. · 검역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안전성 문제 심화 · 농산물의 신선도 문제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이 부족함. · 공동선별, 포장 시스템이 미흡함.
선적, 발송	· 신선농산물은 신선도 유지를 위한 보관 및 운송 방법 개발 필요
통관, 검역	· 수입국별 검역, 통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함. · 검역기준 강화로 검사 비용 증가로 인한 수출가격 상승우려
마케팅, 홍보·관측	· 대형 할인점 개척 및 연계를 도와주는 대행 조직의 부재 · 해외소비자 선호, 수입국 생산, 가격정보 등 시장관련 DB 구축 미흡

2.2.3. 한·중·일간 지리적표시 상품 사례 분석

가. 이천쌀

- 이천쌀은 2005년 농관원의 이천 쌀, 2006년 특허청의 이천 한우를 상표권으로 임금님표이천쌀 + 임금님표이천(농축특산) 등록함.
- 이천쌀은 2008년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총괄하는 조직 구성을 위해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쌀 운영본부를 출범함. 이천쌀은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유통업체와 전략적 제휴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표 3-16 참조).

표 3-16. 이천 쌀의 제휴현황

	시행	주요내용	비고
이천쌀 사용 지정업소 사업	2007년 5월~	▶이천시 관내·외 음식점 ▶이천쌀 사용업소 ▶지정 사업→제휴관계	▶관내: 17개소 ▶관외: 16개소 ▶합계: 33개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워크숍”. 2011.11.30.

- 2008년부터 인도네시아, 러시아, 호주, 미국, 홍콩 등 5개국을 중심으로 175톤을 수출하였으며 2009년이후 EU, 미국, 중국, 일본에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의(상표, 포장) 출원을 등록·진행 중에 있음.

표 3-17. 이천 쌀의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출원수	등록수
EU(27개국)	3	3
미국	3	3
중국	4	2(2건 진행 중)
일본	5	2(3건 진행 중)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워크숍”. 2011.11.30.

-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는 국내 유사 이천쌀에 대한 적발을 통해 이천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각종 홍보 판촉활동 등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상표, 상호 무단 사용에 대한 적발을 위해 이천 경찰서 지능수사팀의 협조 요청
 - 원산지표시, 상표법 위반에 대한 조사
 - 해외 신문사, 방송사 등을 통해 이천쌀에 대한 홍보 판촉 활동 강화

나. 고려홍삼, 고려삼

- 고려홍삼은 지리적표시상품(농관원)에 2006년에 고려홍삼제품 2008년에 등록함.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고려삼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인삼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고려인삼연합회는 고려삼(高麗參), 고려홍삼(高麗紅蔘), Korean Red Ginseng은 중국 공상행정관리국(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정식 등록함.

- 고려삼이 단체표장에 등록됨으로써 앞으로 중국에서 고려삼 등을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고려인삼연합회나 그 회원은 중국의 상표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게 됐음. 특히 한·중 FTA 추진 시 중국 당국에 지적재산권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어 관련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4. 고려홍삼, 고려삼의 중국단체표장



- 인삼의 국내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79 백만 달러에서 2006년 89 백만 달러, 2008년 97 백만 달러, 2010년 124 백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²⁸. 그러나 (사)고려인삼연합회에 따르면, 지리적표시 등록 및 단체표장 등록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다고 함.

²⁸ 특허청의 상표심사정책과의 조사결과, 지리적표시 등록 상품의 수출액(2008년 조사)은 고려홍삼 102톤, 고려백삼 33톤, 고려수삼 3톤, 이천쌀은 18톤으로 나타남.

3.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 SWOT 분석

- 한·중·일 FTA 체결 시 지리적표시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강점, 약점, 기회, 위기요인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음.
- FTA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강점으로는 국내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우리나라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농가수취가격과 상품경쟁력을 높여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또한, 생산된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명성, 품질 등의 특성을 부각시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증명함으로써 시장차별화에 따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음.
- 지리적표시제 도입 목적에 부합하여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인지도 향상에 따른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따라서,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여 중국 및 일본 농산물시장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품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음.

그림 3-5. 한·중·일 FTA 체결에 따른 지리적표시제도 SWOT분석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안전 농산물에 대한 농가수취가격 향상 • 시장 차별화를 통한 농수산물 부가가치 증대 • 국내 우수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 및 홍보 효과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상품의 개발 및 품질 관리 시스템 미흡 • 지리적표시제도에 대한 생산자, 소비자의 인식 부족 • 지리적표시제도의 이원화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수출시장 확대 • 국내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구매정보 제공을 통한 알 권리 충족 및 효용 극대화 •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국제 규범 강화 • 한중일 동일 한자 문화권에 따른 국제적 분쟁요인 • 지적 재산 관련 관리 체계 부재

- 하지만,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도는 정책적으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인식도가 낮은 실정임. 특히, 지리적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상품의 개발에서 사후관리 까지 일원화 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 강화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역할 증대에 따라 통상교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 시국 제적 분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제 4 장

한·중 및 한·일 FTA 체결 대비 쟁점 검토 및 정책 대응 방안

1. 지리적표시 관련 국제적 쟁점 및 분쟁 사례²⁹

1.1. 한·EU FTA 협정 결과³⁰

- 한·EU 협정문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은 농산물, 식품,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이며 TRIPs의 추가적 보호 대상인 포도주, 증류주에서 더 나아가 농산물과 식품까지 확대하였음(제 10.18조, 제 10.19조)³¹.

29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12),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관련 국제분쟁·협상동향 분석 및 우리 측 협상전략 연구”,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EU, 농산물품질정책과 지리적표시제 개요” 를 참조.

30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31 향후 지리적표시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서 한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부적절한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음(제10.24조).

표 4-1. 한·EU FTA 부속서상 지리적표시 보호 대상

	농식품	포도주	증류주	합계
한국	63	0	1	64
EU	60	80	22	162

자료: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 한·EU FTA는 국제 통보 및 등록에 의한 법적 효과와 사실상 동일한 보호를 인정함에 따라 EU측이 다자간 협상에서 보호적격성 추정(WTO 모든 회원국에 주장한 것)을 한-EU FTA를 통해서 관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협정은 EU측의 주장을 우리나라가 조건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됨. 지리적표시 쟁점사항 중 공존조항 삭제, 우선권 발효시점을 협정발효일로 하는 우리 입장을 EU가 수용하였고, 지리적표시 보호수준 관련하여 사용 금지되는 상표의 상품범위와 거절되는 후행상표 상품범위를 동종(유사)상품(like goods)으로 합의함. EU측은 보호를 요구하는 EU 지리적표시 목록수 162개를 최종적으로 제시하였고 양측은 협정 발효 후 지리적표시를 추가할 경우 ‘과도하게 지체하지 않고(without undue delay) 상대방의 요구를 처리한다’는 문안에 합의함.

표 4-2. 한·EU 협정문 내용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8조: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농산물품질관리법(품관법)·주세법 - EU: EC 510/2006호 등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보호 	<p>양국에서 지리적표시를 인정하는 법률을 확정하고 부속서에 기재된 개별적인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로 합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19조: 포도주·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특정 지리적 표시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품관법·주세법 - EU: EC 1234/2007호 등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0조: 사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세서(specification)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사용권한이 인정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1조: 보호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금지되는 행위, 협정발효 전의 선출원·선 등록상표 보호 등 지리적표시 보호의 예외를 규정 	지리적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범위 및 선 사요에 대한 규정으로 부정경범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2조: 보호의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의 적절한 개입에 의해 직권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보호를 위해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3조: 상표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 보호일 이후에 출원되는 제10.21조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후출원 상표는 거절되거나 무효화됨을 규정 	지리적표시 혼동될 수 있는 상표의 거절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상표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4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 발효 후 지리적표시를 추하는 문제는 향후 구성될 '지리적표시 실무 그룹'의 합의에 따라 보호 	향후 추가되어 보호될 지리적표시에 대한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5조: 지리적표시 작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에 관한 협력·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회합함. 	실무그룹의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26조: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보호 및 인정을 구할 권리를 가짐. 	개별 출원·등록을 배제하지 않음을 규정

자료: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www.fta.go.kr/eu/.

1.2. 한·미 FTA 협정 논의 결과³²

- 미국에서는 Lanham Act(상표법)의 증명표장제도, 연방거래위원회법, 관세법, 식품의약국법, 연방주류관리국과 주류와 담배 그리고 무기국의 규정을 통해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음³³.
- 미국은 TRIPs 협정 제22조 2항과 달리 포도주와 증류주에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리적표시가 그 상품의 원산지 이외에 장소를 나타내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 한·미 FTA 협정에서 지리적표시는 지적재산권에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규정하여 보호하도록 함. 어떠한 표지(문자, 숫자, 동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

32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33 Lanham Act에 따르면, 증명표장권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상업상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성실한 의도를 가진자는 주등록부에 상표등록 출원이 가능함. 미사용 상표의 경우에는 허가통지 후 사용사실이 증명된 경우 등록증 발급이 가능함. 동시사용을 주장하는 자는 타인의 동시 사용하는 상품과 지역, 동시사용 기간, 출원인이 등록을 원하는 상품과 지역 등을 출원서에 기재 할 수 있어 수요자의 오인, 혼동 또는 기만행위가 야기되지 않도록 표장사용 방식, 장소 등 일정한 조건과 제한 하에서 동시등록이 가능함. 주등록부에의 상표의 등록은 상표권자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추정통지가 되고, 권리의 유효성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등록증은 10년간 유효하며 등록일로부터 6년간 유효하고 갱신의 경우 각 10년간 유효함.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는 상거래에서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법과 이에 관계되는 규칙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그 상품이 기원하는 국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식품의약국법은 지리적표시가 흔히 사용되는 치즈를 포함하여 식품에 ‘허위 또는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명칭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으며, 식물의 지리적표시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진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음. 연방주류관리국법과 주류와 담배 그리고 무기국의 규정을 통해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일정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는 단어를 포함)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표시가 될 자격이 있음.

- 한·미 FTA 협정에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을 다음과 같이 명시함.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함(제18.2조 4항).
- 포도주, 증류주의 지리적표시 인정 규정과 지리적표시 보호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1.3. WTO TRIPs의 지리적표시 협정 결과

- 세계무역기구(WTO)는 TRIPs 협정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에 따라 통상 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 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 함. 파리협약, 마드리드, 협정, 리스본 협정은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1)보호범위가 불명확하고, 2)효과적인 보호는 개별 회원국의 의지, 3) 존재하지 않는 통일적 기준 요구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리적표시 보호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TRIPs 협정을 인하여 중요성이 감소됨.
- TRIPs협정을 비롯한 파리협정, 리스본 협정 등은 상표와 구분하여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규정함.

표 4-3. 국제 조약에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

구분	보호되는 지리적표시	정의	비고
파리협약	출처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Indications of source or appellation of origin)	없음	-최초 기만적인 의도가 입증된 출처 표시만을 보호 -리스본 개정 시 기만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보호
마드리드협정	출처표시 (Indication of source)	상품의 출처국 또는 출처지 의미	-허위 또는 기만적인 출처 표시에 의한 상품의 오인 가능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
리스본협정	원산지 명칭 (Appellation of origin)	일정한 지역에서 기원산 상품과 품질 그리고 자연적이며 인적인 요소를 포함한 배타적 또는 필연적으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게 된 특성 등을 나타내는 국가, 지역 또는 산지의 등과 같은 지리적 명칭을 의미	-원산지명칭에 대한 보호 내용은 소비자의 보호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보호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대부분의 내용이 포도주 등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가입국 적음
TRIPs	지리적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상품의 특정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보호 대상에 농산물과 가공품은 물론 기타 공업생산물 등 범위 한정 없이 포괄적 규정 -지리적표시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 금지

자료: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 TRIPs 협정 중 지리적표시 보호와 관련된 주요 논의 내용은 1)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다자등록 시스템의 설치운용문제, 2) 지리적표시 보호품의 확대문제에 대한 협상, 3) 지리적표시 보호체계에 대한 문제임.
- WTO는 2001년 11월 제 4차 WTO 각료회의 선언문을 통하여 새로운 다자등록 시스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차 각료회의 까지 다자등록시스템의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도하선언문 제 18조에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규정함. 도하선언문 이후 TRIPs 위원회는 정규회의, 특별회의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 중임.

- 각료선언문에 근거하여 논의된 의제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지리적표시에 대해 부여되는 추가적인 보호수준을 포도주와 증류주 이외의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임.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와 보호대상 확대에 대한 지지입장 국가는 EU, 스위스, 터키, 파키스탄, 인도, 태국, 자메이카, 스리랑카이며, 반대 입장 국가는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임.

표 4-4.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차이점

구분	지리적표시	상표
정의	지리적 연관성을 갖는 특성 상품에 대하여 인정되는 기술적 명칭	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상품에 부착되는 식별력을 가진 기호 등
권리자	일정지역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인정되는 집합적 권리	개인, 법인
양도성	양도 불가능	양도가능
보호기간	보호기간 없음	보호기간 있음
기타		-산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부여되지 않음. -지리적 명칭이 상표로서 식별성을 갖지 못함.

자료: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 또한, EU측은 2003년 3월 WTO의 농업협정 제 4조(market access) 3항에 지리적표시에 관한 제안을 추가함. 동 조항에 적용되는 지리적표시를 부속서 W(안)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부속서 W에 열거된 지리적표시는 수요자 간에 오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되므로 기본적으로 TRIPs 협정 제23조의 추가적 보호와 같은 보호를 부여함. 부속서 W에 열거된 지리적표시에서는 TRIPs 협정 제 24조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선 등록 또는 선사용 상표권자가 있는 경우와 그 지리적표시가 관용 명칭이 된 경우에도 지리적표시로서 보호를 받으며 상표권에 우선함.
-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 양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은 TRIPs 협정 제

23조 제3항과 같으나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가 ‘전통적으로 일관성 있게 (traditionally and consistently) 사용 되었을 것’을 보호요건으로 추가함.

- EU측은 2002년 11월 TRIPs 이사회에 추가적 보호의 확대 논의를 위한 지침을 전달하고 동 이사회가 TNC에 이의 채택을 권고할 것을 제안함. 2005년 6월에는 추가적 보호 상품 확대와 지리적표시의 다자등록시스템을 연계한 제안서(TN/IP/W/11)를 제출하였음.
- TRIPs 협정 이후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 등의 국가들은 지리적표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할 만한 지리적표시가 적은 미국 등은 다자간 등록 시스템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임. 즉 EU는 각 국가 FTA를 통하여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EU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EU의 강화된 지리적표시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의 입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 상품과 지리적 명칭이 외국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반면, 지리적표시 관련하여 EU와 그 수위를 맞추기 위해 지리적표시를 위한 상품들을 등록하고, 등록상품을 관리, 유지, 감독하는 비용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2. 지리적표시 관련 분쟁 사례

2.1. 버드와이저 맥주의 지리적표시권 분쟁사례

- Ahjeuser-Busch vs Budejovicky Budvar 맥주 분쟁은 품목의 이름이 원산지

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일반명사로 보편화된 사례임.

- 1265년 체코의 보헤미안 왕이 부데요비츠(budejovice) 마을에 맥주를 만들 수 있는 특권을 주면서 맥주 양조가 시작되었으며, 1895년 Budweiser를 유럽에 상표권으로 등록(PGI)하였음.
- 1800년대에 Adolphus Busch는 체코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양조공장을 하는 Anheuser家에 결혼을 하여 1870년대부터 Budweiser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함. 1872년부터 체코 Budweiser맥주의 수입이 시작되었고 이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음. 미국 Budweiser는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시도로 1907년 미국 상표권 등록에 성공함.
- Budejovicky Budvar(체코)는 EU 내에서 Anheuser가 상표 ‘Budweiser’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를 요구하였음. Budejovicky EU 내에서 PGI로 등록 되어 있고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원산지 표시 보호에 대한 이사회 규정 2081/92dp 의해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Anheuser는 EU 내에서 ‘Budweiser’를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미국은 1999년 EU의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원산지 표시 보호에 대한 이사회 규정’이 TRIPs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은 EU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WTO에서 조차 만족할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각 EU 회원국별로 지리적표시보다 강력한 권리 구제 기능을 가진 상표권에 대한 소송으로 발전하고 있음.
- 체코와 미국의 Budweiser 분쟁은 각 국가별로 현재 44개(EU 회원국과 비회원국 포함)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판결되어졌음. 그러나 EU 비회원국 대부분은 EU와 같은 강력한 지리적표시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상표권 분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브라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는 Anheuser(미국 Budweiser)가 ‘BUD’라는 이름의 사용권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승소하였음.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체코 Budweiser에 유리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들 국가에서는 미국산은 ‘Anheuser-Busch B’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음. 한국과 일본에선 두 개의 버드와이저가 공존하는 판결이 내려짐.

2.2. 프랑스 샴페인(Champagne) 사례

-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지역명 샴파뉴의 영어식 표현으로 샴파뉴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포성 포도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함³⁴. 샴파뉴 지역은 발포성 포도주가 아닌 코토 샴피뉴와 Coteaux Champenois 라는 이름의 원산지통제명칭법(AOC)을 사용하는 일반 포도주도 생산하고 있음.
- 오늘날 샴페인은 “고급”과 “축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유럽 연합등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샴페인에 지리적표시제를 적용시켜 샴파뉴지역 이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샴페인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음. 프랑스는 1927년 제정한 원산지통제명칭법(AOC)에 따라 샴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진 샴페인말고는 샴페인 명칭을 쓰지 금지함³⁵.
- 스위스 뉴샤텔의 한 마을 이름은 ‘샴파뉴로 885년 이후 1000년 넘게 마을 이름을 딴 포도주와 쿠키, 빵을 만들어 팔아왔지만 2000년 이후 프랑스 상

34 뱅 드 샴파뉴(Vin de Champagne)는 1668년 수도사 동 페리뇽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발포성 포도주임.

35 프랑스 측은 ‘샴페인’의 명칭 사용을 금지를 요구. 1936년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함.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샴페인을 포함한 지리적표시가 TRIPs협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됨.

파뉴아르덴주에서 생산된 발포성 백포도주에만 ‘샴페인’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프랑스 측 주장을 스위스 정부가 받아들였음.

- 이 마을에서 만들어진 샴페인 판매량은 2004년 11만 병에서 2007년엔 3만2000병으로 극감함.

2.3. 지리적표시 침해의 범위에 관한 치즈 분쟁사례³⁶

- 지리적표시는 PGI 및 PDO의 불법적 사용 또는 지리적표시를 오도하는 사용과 관련이 있음. ‘독일산 부드러운 치즈’라고 분명히 표기된 ‘Cambozola’가 PDO에 등록된 ‘Gorgonzola’의 보호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Gorgonzola/Cambozola(1999)).
- 유럽사법재판소는 ‘Cambozola’가 부드럽고 푸른색을 띠며 ‘Gorgonzola’와 세움절 중 끝 두움절이 같기 때문에 음성학적, 시각적으로 두 치즈간 유사성이 확연하므로 지리적표시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함.

2.4. 포괄적, 일반명칭의 유효성에 대한 치즈 분쟁사례³⁷

- 그리스는 자국에서 생산된 희고 짭짤한 치즈로 FETA 치즈를 PDO에 등록하기를 희망했으나 많은 회원국들이 FETA는 포괄적, 일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PDO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³⁸.

³⁶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³⁷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³⁸ 농산물 및 식품의 지리적/원산지표시 보호에 대한 이사회 규정 2081/92의 제 3조항 1상 (일반명칭 규정으로 명칭이 시작되고 소비가 활발한 해당국가의 일반적 상황, 다른 회원국들의 상황, 관련 국내법 또는 Community법 등 세 가지 제시)에 근거하여 일반명칭에 등록 될 수 없다고 함.

- 독일, 프랑스, 덴마크가 FETA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과학위원회는 그리스에서 FETA의 생산량이 독보적이라고 판단하였고 다른국가들의 국내법 및 Community law를 고려할 때 덴마크와 그리스가 유일하게 FETA 관련법을 규정하고 있었음. 덴마크의 경우 FETA가 아니라 Danish FETA로써 보호를 함으로써 그리스 FETA의 전통성을 인정하게 됨.
- 또한, 1972년 그리스와 오스트리아가 맺은 양자 간 협정에서 FETA는 이미 그리스 상품에 관해 배타적으로 명명하기로 합의하였음. 따라서 FETA는 일반명칭이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지리적표시로 등록하여 보호될 수 있음.

2.5. 중국 진후아 햄(Jinhua Ham) 분쟁사례³⁹

- 중국에서 지리적표시제와 상표사이에 첫 번째 소송으로 진후아 햄(Jinhua Ham) 사례가 있음. 1979년 10월 Zhejiang Pujiang Country Food Company는 Jinhua Ham을 출원하여 등록(등록번호 130131) 한 후 1983년 3월 14일 Zhejiang Food Stuff Company로 이전함. 2000년 10월 상표 등록자는 Zhejiang Food Stuff Co.,Ltd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회사 위치도 항주로 변경함.
- 전통방식에 따라 진후아 햄 생산자들은 진후아 햄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없었으며, Zhejiang Food Stuff Co.,Ltd에 의하여 상표침해가 제기되어 금화지역 진후아 햄 생산자들은 지리적표시 상품의 보호를 요구하여 2002년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대한 승인을 받음.

³⁹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 2003년 Taikang Company는 햄 라벨에 진후아 햄을 표시함으로써 Zhejiang Food Stuff Co.,Ltd사의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됨.
-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지리적표시와 일상적인 상표사이의 충돌의 조정은 두 가지가 상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일상적 상표와 지리적표시 사이의 관계를 취급함에 있어서 원칙들을 세움. 우선 중국은 TRIPs 협정에 가입되어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원산지 상품의 표시는 중국에서 법에 의하여 보호함으로, 피고는 원고 등록상표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남.
- 원고는 상표 등록 이후 상표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으므로 원고의 등록된 상표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 하지만,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는 타인의 공정한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권리가 없음. 중국에서 소유권자의 등록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원산지 상품의 표시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므로 소유권자가 그러한 규정들을 따르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한 그 행위는 합법적이고 정당함. 피고에게는 원산지 “진후아 햄”의 특별한 표시의 배타적 사용 자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지만 피고는 표준에 따라서 원산지 상품의 표시를 사용해야만 하고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적법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해야 함.

2.6. 포천 막걸리 사례

- 2008년 11월 일본 기업인 ‘청풍’은 일본 특허청에 “포천막걸리” “포천일동 막걸리”, “일동막걸리” 등의 상표를 출원해 등록함. 이에 따라 만약 청풍이 일본 내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면 “포천”이나 “포천일동” 브랜드를 사용하는 한국 막걸리업체들은 일본 수출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에 직면하게 됨⁴⁰.

- 이에 경기도 포천시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하여야 함.

2.7. 고려인삼 사례

- 우리나라 제품의 지리적 표시 오남용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려인삼 사례가 있음. 고려인삼의 효능은 중국은 물론이고 유럽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용해 일부 외국인들이 국산 인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고려인삼을 불법표기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 제약사 B사는 중국산 인삼으로 만든 제품에 대해 ‘100% 고려인삼을 썼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음⁴¹.

2.8. 순창고추장 분쟁사례⁴²

- 미국 Rhee Bros., Inc.(재미교포 Rhee, Syng-Man이 메릴랜드주에 설립한 아시안 식품 도소매 유통회사)에서 중국산 고추장을 수입하여 ‘순창참쌀고추장’으로 판매하였고 (주)대상 미국지사(Daesang Cor.)는 등록 상표권의 취소 청구(전라도 순창에서 제조된 고추장을 수입, 현지 판매) 소송을 냄.
- Rhee Bros., Inc에서는 상표의 ‘Sweet Rice Hot Bean Paste’ 부분에 대하여 권리불요구하여 등록(98년), ‘순창’을 유명산지가 아닌 순수한 창(‘Pure Spear’)으로 설명, 등록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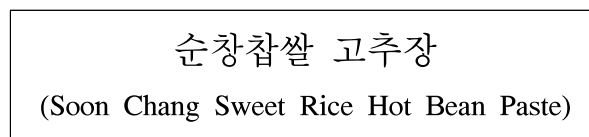
40 농민신문(2009.11.06).

41 중앙일보(2010.6.22), “Special Knowledge <171> 지리적표시제”.

42 특허청(2010.3.22),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보도자료.

- 순창고추장은 미국 현지업체에게 상표권을 선점당하여 소송비용으로 약 200만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소송결과⁴³ Rhee Bros. 측의 상표권을 취소함 ('05. 5. 13)⁴⁴.

그림 4-1. Rhee Bros., Inc 등록상표권



자료: 특허청(2010.3.22),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보도자료.

2.9. 지리적표시 관련 분쟁의 시사점

- 국제 분쟁사례에서 일반명칭을 판정하는 기준이 1) 명칭이 시작되고 소비가 활발한 해당국가의 일반적 상황, 2) 다른 회원국내의 상황, 3) 관련 국내법 또는 Community법 임.
- FETA의 경우 일반명칭(보통명칭)이 지리적표시와 충돌하는 사례로서 1996년부터 2005년 사이 다섯 번이나 유럽재판소의 판결을 받았음. 따라서 유럽 내에서도 일반명칭화 문제에 대한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포천 막걸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명을 사용하는 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국가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 국제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배타적 권리 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43 메릴랜드주 연방지법, 2005 WL 1163142 (D.Md.)

44 '순창은 조선시대 때부터 왕에게 고추장을 진상하던 고을의 지명이며, 따라서 당연히 한 국민들은 '순창'이라는 말을 들으면 '순수한 창'으로 이해하지 않고 '전라도 순창'이라는 지명을 연상시킴.

3.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시 지리적표시 관련 쟁점

3.1. 한·중 FTA 체결시 예상 문제점

-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첫째,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있고 국내 수급 상황의 불안정하는 등 수출기반 조성이 미약한 것임. 특히 중국 유통조직망과의 연계 미흡하여 현지 교포수입상 이외 한족 수입상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임⁴⁵.
- 우리나라 농산물이 품질 경쟁력을 높여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중국현지에서 양질의 저렴한 한국산 농산물이 생산될 경우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이미 일본이 중국 시장에 고급 채소, 과일 등 고급 농산물 수출에 나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서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약점이 있음.
- 한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 현지인들의 인지도도 낮기 때문에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판촉 및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하지만 가공농산물의 경우 포장 겉면의 표시내용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확인을 받는 데 소요되는 중문표찰비가 수입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등 현지 진입장벽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표시 등록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한국기업이 외국에서 당하는 특허침해의 과반수이상(59%)은 중국에서 발생되고 있음⁴⁶. 2010년 특허청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

45 월간농경과원에. 2006년1월호. “대중국 농산물 수출 확대 전략”.

46 침해를 본 국가별로는 중국이 58.3%로 월등히 높았고, 대만·미국·일본·남미가 각각 5~6% 수준이었음(kotra, 마케팅현장르포(2011.7)).

년간 3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국내기업 49,955개사 중 조사 업체 6,013개사의 22.1%(1,328개사)에서 지적권 침해로 피해를 보았다고 답변함. 침해 유형별로 해외 현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무단사용이 80.0%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지식재산권의 무단 유통이 20.5%, 현지 지식재산권의 유사 지식재산권 출원이 18.1% 순위였음.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는 시장점유율과 매출 감소가 74.4%로 가장 높았고, 대외적 자사 이미지 하락 58.6%, 법정 소송에 따른 부담 50.2%, 지속적인 연구개발 차질 27.4%, 사업 중단이 22.3% 등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자국의 특허침해 발생 시 대응 방안은 인민법원소송과 지식산권국 행정조치 두 가지 방법이 있음. 인민법원은 지식산권국의 상급기관이므로 지식산권국 행정조치 완료 후에도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나 인민법원 소송 중 혹은 소송이 완료된 경우 지식산권국 행정조치를 신청할 수 없음. 인민법원 소송과 지식산권국 행정조치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식산권국 행정조치 신청은 자동 기각됨.
- 상표권과 특허권의 관리기관이 분리된 중국은 상표의 등록·보호는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국’)에서 관리하며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의 등록보호는 지식산권국에서 관리함. 공상국은 상표권 이외에도 기업의 법인 등록과 기업 간 공평교역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으로 강력한 행정 집행력을 보유하나, 지식산권국은 특허권의 등록 및 분쟁조정 기능만 있음.
- 중국 특허행정조치의 특징을 살펴보면, 소송에 비해 짧은 심결기간과 낮은 소요비용이 드는 이점이 있으나 낮은 행정단속 집행력과 입안 심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음(표 4-5 참조).
- 중국의 지리적표시제도는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여 집단상표와 증명상표 등록하는 방법과 농업부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산품에 한정하여 지리적표

시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구분됨.

- 중국의 집단상표와 증명상표제도의 경우, 통상의 상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등록된 증명상표의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이 인정되어 그 침해행위에 대해서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는 농업부의 서면 의견을 통해 부처간 협력하고 있음.

표 4-5. 중국 특허관련 행정조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소송기간은 국내인은 1심 6개월, 2심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외국인은 해당 심결기한 제한이 없음. ▶ 지식산권국 행정조치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접수부터 최종판결까지 완료되게 돼 있어 소송에 비해 단시간 내에 침해대응을 할 수 있음. ▶ 행정조치의 가장 큰 장점은 별도의 관납 수수료가 없다는 점으로 전문 침해조사 업체를 통하지 않고 권리자가 직접 침해증빙자료를 수집했을 시 소요 비용 없이 침해대응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산권국에서는 특허관련 행정조치 완료 후 침해기업에 대한 침해정지를 명령할 수 있으나 공상국과 같은 강력한 단속집행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침해업체가 침해행위를 정지하지 않을 시 중급인민법원에 집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지식산권국에서는 특허침해업체에 대한 직접 조치보다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함. ▶ 행정단속 신청 시 공증소에서 발행한 침해제품 침해확인 공증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간단한 설계의 특허나 디자인은 공증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쉽게 공증을 받을 수 있으나, 복잡한 설계의 발명특허나 실용신안은 공증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자료: kotra, 칭타오 무역관 마케팅 현장리포 자료 재정리.

- 반면,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는 상표권과 효력은 동일하지만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범위가 한정되어 제한된 효력을 지니고 있는 점이 다름.
- 중국의 지리적표시제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법과 농업부의 지리

적표시 등록제도가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에서 심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농산물품질관리원)와 지리적표시단체표장(특허청)의 이원화된 두기관간의 중복 보호 및 권리충돌로 행정적 비효율성과 국제 분쟁 시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3.2. 한·일 FTA 체결시 예상문제점

-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은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향후 FTA 체결 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 및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도쿄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수출시장과 현지 마케팅으로 인해 출혈경쟁 및 지방 중소도시 시장개척 미흡한 실정임.
- 대일 수출 시 수출 검역 강화에 대응하여 보다 엄격한 안전농산물 생산, 관리가 요구됨. 특히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검출, 중국산 만두 및 멜라민 파동 등으로 인해 수입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감소 및 기피현상이 높아졌음. 소비트렌드의 변화로 농산물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안전, 안심 농산물 생산이라는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따라서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일원화한 생산운영관리 기준의 통합이 요구됨.
- 한국산 수출농식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다양한 제품 개발이 미흡하여 경쟁력 있는 수출전략품목 개발이 요구됨.
 - 일본유통 브랜드: 진로(소주), 농심(신라면)
 - 교포시장: 대상(종가집김치, 장류), 동원(양반김), 이동(막걸리), CJ(장류)
- 일본 유통업체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통체계 고수에 따른 수출농식품의

전략적 마케팅 전개가 미흡한 실정임. 일본 시장은 재고 및 클레임처리 등 위험분산을 위해 도·소매업의 유통경로가 복잡하고 소매유통의 신규진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일본은 지리적표시에 대한 적극적 보호(등록에 의한 보호)는 제공하고 있지 않고 비슷한 제도인 지역단체상표제도를 시행하여 자국 상품의 보호 수단으로 삼고 있음⁴⁷. 일본은 TRIPs 협정 제 23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절대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TRIPs 협정의 지리적표시의 추가적 보호의 지정 상품 확대에 대한 논의에 대해 추가적 품목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TRIPs 협정 제 23조의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예외적 규정으로서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모든 품목에 예외적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입장임. 추가적 품목확대를 찬성하는 국가들은 지리적표시의 보호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⁴⁸ 무역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함.

47 일본은 증명상표제도에 대해서 상표법에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본 상표법에는 이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상품의 생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고 증명자 본인이 스스로 증명업을 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거한 외국으로부터의 증명상표의 출원에 대하여 증명을 업으로 하는 자의 보통의 상표로써 등록하게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平成 8년 상표법의 개정에서 증명표장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음(전현진, 이주현(2010)).

48 포도주와 증류주만을 구별하여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공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리적표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4. 한·중 및 한·일 FTA 체결시 지리적표시 대응 방안

4.1. 지리적표시제제도 관련 협의기구 설치

- 지리적표시가 WTO/TRIPs에 합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침해 될 경우 각 국가 간 개별협상을 통하여 해결 할 수밖에 없음. FTA 체결 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공동 사무국 설치를 통해 통상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리적표시에 대한 침해방지를 대비한 국가간 지리적표시 목록의 상호교환 등 무단사용의 근절에 대해서 FTA 체결 전에 별도합의를 도출해야 함. 한·EU FTA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간의 지리적표시의 상호보호차원에서 상표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지리적표시 목록교환이 필요함. 추가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협의기구에서 논의토록 함.

표 4-6. 한·중·일 FTA 체결 시 합의서에 협의기구에 대한 규정(예시)

<p>▶ 협의기구에 대한 권리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 작업반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 컨센서스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음. <p>▶ 회의 장소, 시간에 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방식으로 회합하나, 요청 후 90일 이내에는 회합. <p>▶ 협의기구의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지리적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라 그 보호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지리적표시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 작업반은 지리적표시 분야에서 어떠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논의 가능

4.2. 지리적명칭 표시 방법의 통일

-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동음동의(同音同意)”, “동음이의(同音異意)”, “이음동의(異音同意)” 등 지리적표시를 오해하거나 불공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별도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⁴⁹.

표 4-7. 한·일 동음동의, 동음이의, 이음동의사례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京都米	きょうとまい	kyotomai	교토쌀	쌀
黒部米	くろべまい	korobemai	쿠로베 쌀	쌀
大正メークイン	たいしょうめーくいん	taishow mekin	타이쇼 감자	감자
大正だいこん	たいしょうだいこん	taishow daikonn	타이쇼 무우	무우
上州牛	じょうしゅうぎゅう	jyousyuugyuu	쥬슈규	소고기
豊後牛	ぶんごぎゅう	bungogyu	분고 소	소
鹿兒島黒牛	かごしまくろうし	kagosimakurousi	카고시마 흑우	흑우
大内山牛乳	おおうちやまぎゅうにゅう	ouchiyamagyunyu	오우치야마 우유	우유
婦戀高原キャベジ	つまごこうげんきゃべつ	tsumago kougenkyabetsu	츠마고코우겐 카비지	양배추
稻城の梨	いなぎのなし	inaginonashi	이나기노 배	배
高根みかん	こうねみかん	kounemikan	코우네 감귤	감귤
新潟清酒	にいがたせいしゅ	nigataseisyu	니가타 청주	청주
大野醤油	おおのしょうゆ	onosyouyu	오오노 간장	간장
京都名産すぐき	きょうとめいさんすぐき	kyotomeisansuguki	교토메이산 장아찌	장아찌
十六島海苔	うっぷるいのり	uppuruinori	우푸루이 김	김
戸島ぶり	とじまぶり	tojimaburi	토시마 방어	방어
五島うどん	ごとうどん	gotoudon	고토우동	우동
舞鶴かまぼこ	まいづるかまぼこ	maizurukamaboko	미아즈루 어묵	어묵
知覧茶	ちらんちゃ	chirancha	지란차	차
静岡茶	しずおかちゃ	sizuokatya	시즈오카 차	차

49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의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를 말함(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과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함(제34조 제2항 제1호). 상표법에서의 동일한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동일하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법 제2조 제1항 제3의 3)임.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 모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 90조의 2).

표 4-8. 한·중 동음동의, 동음이의, 이음동의 사례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국가검사 검역국	平谷大桃	핑구다토우	평곡큰복숭아	昌平草莓	광핑포메이	창핑딸기
	蒙山茶	멍산차	몽산차	青州蜜桃	칭주밀토우	칭주밀복숭아
	韓城大紅袍花椒	한청따홍포우화조	한성대홍포산초	梅州金柚	머이지우진유	매주금귤
	京山橋米	징산초미	경산교쌀	會理石榴	후이리쓰류	회리석류
	确山板栗	퀘산뽀리	확산밤	安丘大姜	안추따장	안구대생강
	砀山酥梨	당산수리	당산배	安丘大姜	안추따장	안구대생강
	六安瓜片	려우안과편	육안과편	安丘大葱	Anqiu dacong	안구 대과
	庫爾勒香梨	쿠얼러상리	고이룩배	蒼山大蒜	창산따완	창산대마늘
	山西老陳醋	산시이로천추	산서초	常山山茶油	창산산차유	상산산차기름
	陝西苹果	싼씨핑귀	산서사과	弋陽年糕	이양넝고	익양떡볶이
	延邊大米	엔뵤따미	연변입쌀	醴陵瓷器10家企業	리링도우치10차치에	예릉도자기10가 기업
	延邊苹果梨	엔뵤핑귀리	연변사과배	三門青蟹	싼먼칭셰	삼문청게
	延邊黃牛肉	엔뵤홍뉴러우	연변황소고기	三門青蟹	싼먼칭셰이	삼문청꽃게
	梅河大米	머이허따미	매하입쌀	英德紅茶	잉더홍차	영덕홍차
	廣靈小米	광링쇼미	광령좁쌀	正安白茶	징안빠이차	정안백차
	崇仁麻鷄	충런마지	송인닭	嶗山綠茶	라오산뤄차	노산록차
	固始鷄	꾸쓰지	고시닭	大興西瓜	따성씨과	대홍수박
	固始鷄蛋	꾸쓰지만	고시닭알	昌平苹果	창핑핑귀	창핑사과
	仙居鷄	셴취지	선거닭			
	국가공산 관리국	清遠鷄	칭웬지	칭원닭	梅河口大米	머이허코우따미
清遠麻鷄		칭웬마지	칭원마닭	崇仁麻鷄	충런마지	송인닭
泰興白果		타이싱바이귀	태흥은해나무열매	七里海河蟹	치리하이허셰	칠리해민물게
京山米		징산미	경산쌀	靖安白茶	징안백차	정안백차
京山橋米		징산초미	경산교쌀	正安白茶	징안빠이차	저안백차
哈密瓜		하미과	멜론	大興西瓜	다성씨과	대홍수박
砀山酥梨		당산수리	당산배	平谷鮮桃	핑구싼토우	평곡선복숭아
六安瓜片		류안과편	육안과편	延邊苹果梨	엔뵤핑귀리	연변사과배
庫爾勒香梨	쿠얼러상리	고이룩배				
질검검사 시스템	宣化牛奶葡萄	수앤화뉴나이푸 토우	선화우유포도	京東板栗	징둥반리	경동밤

- 수출입되는 지리적표시 품목의 지리적명칭 표기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언어와 영문을 함께 병기할 필요가 있음.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한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영문은 상대국에서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의 고유 명칭은 영문과 가장 유사한 한문을 사용토록 함.
- 각국이 등록한 품목에 영문 이니셜 등을 원산지 뒤에 함께 사용하여 구분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등록품목 뒤에 한국은 K, 일본은 J, 중국은 C를 표시하도록 함.

표 4-9. 지리적표시 관련 영문이니셜 표기 방안

국 가	지리적표시 품목
한국(Korea)	이천쌀(K), 김천자두(K), 의성마늘(K)
일본(Japan)	토요우라딸기(J), 타코닌니쿠(J), 타이쇼감자(J)
중국(China)	대홍수박(C), 연산밤(C), 창평딸기(C)

- 해당 상품의 동음의 지리적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협의기구를 통해서 의견조율 및 협상안을 도출 할 수 있음.

4.3. 국제협정 가입을 통한 보호 방안

-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표시 관련 출원 및 보호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상표법을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와 EU는 농산물원산지를 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와 상표법상 단체표장에 의한 보호가 공존되어 있지만⁵⁰ 일본(지역단체상표), 미국(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제도)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표법을 통해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의 경우 EU와 같은 농산물원산지를 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 국가(연합)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상품의 해외 오·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드리드의정서⁵¹ 등 국제출원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⁵⁰ 중국도 농업부의 지리적표시와, 단체표장, 증명표장이 혼재되어 있지만 조만간 단일화 예상

⁵¹ 마드리드협정은 상품의 허위 또는 기만적 출처표시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를 출

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따라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상품의 국제출원 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등록을 토대로 하여 국제출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는 국내 등록 후 지리적표시 출원자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여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소화된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4.4.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내 제도 개선

- 지리적표시의 권리강화를 위해서 동일 지리적 권역내의 지리적표시제 배타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정이 필요함. 즉 지리적표시 등록품과 동일한 지리적 권역내의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생산자에 대한 지리적 명칭(시·군명) 표시를 제한해야 함.)
-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조사·분석하여 지적재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 법적인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권리침해, 국제분쟁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단체연합회, 특허청 등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함.

처표시(indication of source)로 표기하였으며 지리적표시 개념을 상품의 출처국 또는 출처지로 표현하고 있음. 이 협정은 허위의 지리적표시 뿐만 아니라 기만적 출처표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리적표시의 결합이나 국경조치,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미규정 등 실질적 보호를 위한 주요한 요소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부분은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적용됨.

-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리적표시 상품과 미등록 및 미 부착 상품과의 차별화⁵²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배타적 보호 기능을 높이는 것이 요구됨.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통합로고(PGI)의 홍보 활성화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의 참여 및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와 함께, 우리나라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및 국제위생관리기준 인증 업체 지원 확대를 통한 타 수입산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하며 검역관, 유력 바이어·기자 초청 등을 통해 집중홍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5. 해외에서의 보호 강화

- 수출 지리적표시품의 지리적표시 도용 및 표시권 침해 대책으로 침해발생국, 지역담당자와 교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민합동사절 파견을 비롯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지적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해야 함.
- 지리적표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외산 여부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식별 방안을 강구해야 함. 대표적으로 지리적표시품의 DNA 식별기술 개발 및 분석자료 축적, 전문직원의 양성, 해외 지식재산사업활동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배치 등이 있음.
-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상품에 대한 상품 차별화 여부에 달려 있음. 하지만, 고려인삼 등 해외에서 오·남용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절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중국에서 도용되고 있는 ‘고려인삼’의 지리적표시 근절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FTA 협정에 앞서 리스트 교환시 고려인삼에 대한 명칭 보호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임⁵³. 보호품목으로 인정 시 분쟁 발생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소할 수 있으며

52 중국·일본산에 대체할 신규유망상품 발굴확대

차별화를 높일 수 있음.

- 한편, 농식수산물식품부는 지리적표시 해외 침해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내년 부터는 WTO/TRIPs 조항을 통해 이를 시정해 나갈 계획임. 기획재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품목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조직 개편,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임⁵⁴.

4.6. 지리적표시 품목의 무역 확대

- FTA 체결 시 국제교역 거래장벽이 낮아지면서 농산물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임. 현지에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증대됨.
- 각국의 지리적표시 제도는 생산방법, 농약사용기준 설정 등 상대적으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어 있어 무역을 확대하더라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한 상태임. 따라서 지리적표시 품목의 무역 확대는 수입 통관 및 수출 검역 절차와 조건을 용이하게 하여 비용절감과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함.

53 FTA 체결 시 ‘지리적표시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지리적표시 제품은 양측간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들 상품이 보호받지 못함.

54 한-EU FTA이 발효되면서 통관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상표,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파이낸셜뉴스. 2012.12.2).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중 품질이나 맛 등에 있어서 널리 알려진 평판이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때 확립된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도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면서 유럽연합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참고로 하여 도입함.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2004년부터 상표법상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를 도입, 2006년 장흥표고를 시작으로 현재 117건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이 등록됨.
-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 등과 FTA를 발효하였음. 2007년 미국, 2009년에는 유럽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중국, 일본과도 FTA를 추진 중에 있음. 특히,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에 대비하여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 높고 농산물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한국, 중국, 일본은 동일한 한자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지리적표시를 불공정하게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중국의 지리적표시는 1993년 상표법의 실시세칙에서 상표증명 등록 방식으로 시작하여 2001년 상표법의 재수정후, 정식으로 지리적표시라는 개념을

- 추가함. 중국 농업부는 2007년 농산품지리적표시관리제도를 공포하였는데 지리적표시 등록조건, 등록과정 및 등록증서, 표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농산물 지리적표시에 대한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2006년 4월 1일부터 상표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역단체상표제도 (지역명+상품명으로 된 상표)를 도입하였으며, 특허청에서 심사하고 있음. 이 제도는 지역브랜드를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여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함.
 - 우리나라는 EU와 FTA 협상 시 양측이 상호간 보호가 필요한 지리적표시 목록을 교환하고 지리적표시 보호 수준을 현행 WTO 지적재산권 관련협정인 TRIPs 보다 높이기로 합의함. 양국 간 협상을 계기로 국내에 EU의 162개 지리적표시가 들어와 보호해야하지만,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해남겨울배추, 진도홍주 등 우리나라의 64개 지리적표시 상품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 유럽시장에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가 가능해짐.
 - 한·미 FTA협정에서 지리적표시는 지적재산권에서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규정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어떠한 표지(문자, 숫자, 동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 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를 포함함)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표시가 될 자격이 있음.
 -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 시 국제교역 거래장벽이 낮아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간 농산물 무역이 확대될 수 있음. 무역 규모가 확대되면 지리적표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해행위는 각 국가 간 개별협상을 통하여

해결 할 수밖에 없음. FTA 체결 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공동 사무국 설치를 통해 통상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리적표시에 대한 침해방지를 대비한 국가간 지리적표시 목록의 상호교환 등 무단사용의 근절에 대해서 FTA 체결 전에 별도합의를 도출해야 함. 한·EU FTA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간의 지리적표시의 상호보호차원에서 상표 등록 및 무단사용 근절을 위한 지리적표시 목록교환이 필요함. 추가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협의기구에서 논의토록 함.
- 한·중 및 한·일간 FTA 체결을 대비해 수출입되는 지리적표시 품목의 지리적 명칭 표기는 원칙적으로 각국의 언어와 영문을 함께 병기할 필요가 있음. 한국, 중국, 일본 모두 한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 영문은 상대국에서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문으로 표시할 수 없는 한국과 일본의 고유 명칭은 영문과 가장 유사한 한문을 사용토록 함. 지리적표시 협의기구를 통해서 해당 생산자에 동음의 지리적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최종 협상안을 제시해야 함.
- 우리나라의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의 경우 EU와 같은 농산물 원산지를 보호하는 지리적표시제 국가(연합)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 상품의 해외 오·남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출원시스템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지리적표시상품의 국제출원 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등록을 토대로 하여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함.
- 이와 함께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를 실시간으로 수집·조사·분석하여 지적재산의 무단 사용에 대한 근절 방안을 모색

하고 법적인 분쟁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단체연합회, 특허청 등 관련 조직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함.

- 지리적표시 수출품의 지리적표시 도용 및 표시권 침해 대책으로 침해발생국, 지역담당자와 교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민합동사절 파견을 비롯하여 민간단체의 국제지적재산 보호 활동을 지원함. 지리적표시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 국내외산 여부를 신속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식별 방안을 강구함. 지리적표시품의 DNA 식별기술 개발 및 분석자료 축적, 전문직원의 양성, 해외지식재산사업활동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상담원을 배치함.
- FTA 체결 시 국제교역 거래장벽이 낮아지면서 농산물 무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임. 현지에서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생산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증대됨. 한국과 중국의 지리적표시제도는 생산방법, 농약사용기준 설정 등 상대적으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되어 있어 무역을 확대하더라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한 상태임. 따라서 지리적표시 품목의 무역 확대는 수입 통관 및 수출 검역 절차와 조건을 용이하게 하여 비용절감과 원활한 거래를 가능케 함.
- 한, 중, 일 3국은 동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어 동일한 지명이나 유사한 지명이 많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는 농산물 무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동시에 국내 농업계와 농산물 수출에 있어 잠재적인 기회이기도 함. 지리적표시제도가 국내 농산물의 산업화, 표준화, 다양화를 촉진하여 국내 농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부록 1

한·EU FTA 지리적표시 관련 협정문

제3관 지리적표시⁵⁵56

제10.18조 농산물 및 식품과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인정

1. 대한민국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련되는 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그 이행규칙과 함께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2. 유럽연합에서의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통제 및 보호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510/2006호와 그 이행규칙, 그리고 포도주 시

55 2) 이 관의 “지리적표시”는 다음을 지칭한다.

가. 2006년 3월 20일자 이사회 규정(EC) 제510/2006호, 2008년 1월 1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110/2008호, 1991년 6월 10일자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1999년 5월 17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493/1999호와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 또는 이러한 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에 언급된 지리적표시, 원산지 명칭,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포도주 및 지리적표시를 가지는 테이블 포도주, 그리고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리적표시

56 이 관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장의 공통 체계에 관한 이사회규정(EC) 제1234/2007호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법령이 제6항에 규정된 요소를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3.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의 명세서 요약서를 검토한 후, 유럽연합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4. 제2항에 언급된 법령에 따라 유럽연합에 의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로서,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에 해당하는 농산물 및 식품 명세서의 요약서를 검토한 후, 대한민국은 이 장에 규정된 보호수준에 따라 부속서 10-가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5. 제3항은 제10.24조에 따라 추가되는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포도주에 대한 지리적표시에 적용된다.

6.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통제를 위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는 것에 합의한다.

- 가. 각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표시를 등재하는 등록부
- 나.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리적표시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적시하는 것임을 검증하는 행정절차다. 등록된 명칭이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제품 명세서가 규정되어 있는 하나 또는 복수의 특정제품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요건
- 라. 생산에 적용되는 통제규정
- 마. 등록된 명칭이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또는 식품을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법적 규정, 그리고

바. 명칭이 지적재산의 형태로서 보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명칭의 선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이의절차

제 10.19 조 포도주⁵⁷·방향포도주⁵⁸ 및 증류주⁵⁹에 대한 특정 지리적표시의 인정

1. 대한민국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2. 유럽연합에서는, 부속서 10-나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지리적표시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이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보호된다.

57 4이 관에서 의미하는 포도주는 HS 제22.04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2007년 10월 22일자 이사회 규정(EC) 제1234/2007호, 2009년 7월 10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제606/2009호, 2009년 7월 14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C) 제607/2009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58 이 관에서 의미하는 방향포도주는 HS 제22.05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1991년 6월 10일 이사회 규정(EEC) 제1601/1991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59 이 관에서 의미하는 증류주는 HS 제22.08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이다.

가. 2008년 1월 1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10/2008호와 1990년 4월 24일 집행위원회 규정(EEC) 제1014/90호 또는 그것을 대체하는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 또는

나. 대한민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법률 제9759호, 2009.6.9.) 및 주세법(법률 제8852호, 2008.2.29.)을 준수하는 제품

제 10.20 조 사 용 권

이 관에 따라 보호되는 명칭은 해당 명세서에 부합하는 농산물, 식품, 포도주, 방향포도주 또는 증류주를 시판하는 모든 운영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

제 10.21 조 보호의 범위

1.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된다.

- 가. 그 상품의 지리적 근원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당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고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상품의 명명 또는 소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
- 나. 그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거나 지리적표시가 번역 또는 음역되어 사용되거나 또는 “종류”, “유형”, “양식”, “모조품”이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해당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유사상품⁶⁰에 상품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 다.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의미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 그밖의 사용

2. 이 협정은 인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나 영업상 전임자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결코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이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모든 상품에 대하여, “유사상품”이라는 용어는 해당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포도주에 대하여 포도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또는 해당 지리적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증류주에 대하여 증류주의 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항에 맞게 해석된다.

3. 양 당사자의 지리적표시가 동음인 경우, 선의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표시에 보호가 부여된다. 지리적표시 작업반은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이 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표시가 제3국의 지리적표시와 동음인 경우, 각 당사자는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음의 지리적표시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용조건을 결정한다.

4.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이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지리적표시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보호는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이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원, 등록되었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사용에 의하여 확립된 상표의 계속적인 사용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법령에 그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제10.2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다.

제 10.22 조 보호의 집행

양 당사자는 제10.18조부터 제10.23조까지에 규정된 보호를 당국의 적절 한 개입에 의하여 직권으로 집행한다. 양 당사자는 또한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보호를 집행한다.

제 10.23 조 상표와의 관계

1. 보호되는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제10.21조제1항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의 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은, 상표 등록 출원이 해당 영역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 후에 제출되는 한, 양 당사자에 의하여 거절되거나 무효화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가. 제10.18조 및 제10.19조에 언급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이 협정이 발효한 날이다. 그리고

나. 제10.24조에 언급된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보호 또는 인정을 위한 출원일은 지리적표시를 보호하거나 인정해 달라는 다른 쪽 당사자의 요청을 당사자가 접수한 날이다.

제 10.24 조 보호를 위한 지리적표시의 추가⁶¹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표시를 제10.2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부속서 10-가 및 10-나에 추가하기로 합의한다.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보호될 지리적표시를 부속서에 추가해 달라는 다른 쪽의 요청을 과도한 지체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3. 명칭이 포도의 품종을 포함하여, 식물의 품종 또는 동물의 종의 명칭과

⁶¹ 제10.18조제1항, 제10.18조제2항 및 제10.19조 각주에 언급된 것 외의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법을 통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22조제1항의 의미에서의 지리적표시로서 어느 한 쪽 당사자에 의하여 인정된 원산지 명칭을 이 협정에 추가하려는 제안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 경우, 양당사자는 그 지리적표시가 이 관에 따라 이 협정에 추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제10.18조제2항 및 제10.19조 각주에 규정된 유럽연합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제안이 제기된 경우, 또는

나. 유럽연합에 의하여 제10.18조제1항 및 제10.19조 각주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제안이 제기된 경우

충돌되고 그 결과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명칭은 지리적표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제 10.25 조 지리적표시 작업반

1.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리적표시 작업반은 지리적표시에 관한 양 당사자 간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목적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작업반은 컨센서스로 권고를 하고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회의 장소는 양 당사자 간 교대로 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자가 상호 결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 그리고 화상회의를 포함한 방식으로 회합하나, 요청 후 90일 이내에는 회합한다.

3. 작업반은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

가. 적용 가능한 경우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지리적표시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 의해서도 결정되고 그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보호될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개별 지리적표시를 추가하기 위해 부속서 10-가 및 10-나를 수정하는 것

나. 원산지 당사자⁶²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더 이상 다른 쪽 당사자에서 지리적표시로 간주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개별 지리적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가호에 언급된 부속서를 수정⁶³하는 것, 그리고

62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중단하는 결정은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63 이는 명칭 및 제품 범주를 포함하여 지리적표시 그 자체의 수정을 말한다. 제10.18조제3항 및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명세서의 수정 또는 제10.18조제6항라호에 언급된 책임

다. 이 협정상의 법령에 대한 언급은 이 협정의 발효 후 특정일에 개정되고 대체되어 효력이 있는 그 법령에 대한 언급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4. 작업반은 또한 이 관이 적절히 기능하는 것을 보장하며, 그 이행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을 담당한다.

가. 지리적표시에 관한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관한 정보의 교환

나. 이 협정에 따라 그 보호를 고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지리적표시에 관한 정보의 교환,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

5. 작업반은 지리적표시 분야에서 어떠한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도 논의할 수 있다.

제 10.26 조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개별 출원

이 관의 규정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연합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를 구할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있는 통계기구의수정은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로서 하는 당사자의 전속 책임이다. 그러한 수정은 정보목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 1 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⁶⁴ (제10.18조제4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오스트리아	Tiroler Speck	햄	티롤러 슈페크
	Steirischer Kren	고추냉이	슈타이리셔 크렌
체코 공화국	Čske pivo	맥주	체스께 삐보 / 체스케 피보
	Budějovicke pivo	맥주	부데요비츠께 삐보 / 부데요비츠케 피보
	Budějovický měšš'ansky var	맥주	부데요비츠끼 므네슈판스키 바르 / 부데요비츠끼 므네스탄스키바르
	Čskobudějovicke pivo	맥주	체스코부데요비츠께 삐보 / 체스코부데요비츠케 피보
	Žtecky chmel	홉	자떼츠키 흐멜 / 자데츠키 흐멜
그리스	Ελαία Κάλυμνος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Elia Kalamatas)	올리브	엘리아 깔라마파스
	Μαστίχα Χίου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Masticha Chiou)	검	마스티하 히우
	Φέτα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Feta)	치즈	페따
프랑스	Comte	치즈	콩떼 / 콩테
	Reblochon	치즈	르블로송 / 레블로송
	Roquefort	치즈	로끄포르 / 로크포르
	Camembert de Normandie	치즈	까망베르 드 노르망디 / 카망베르 드 노르망디
	Brie de Meaux	치즈	브리 드 모

64 이탤릭으로 쓰여진 단어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라 한다)의 일부가 아니다.

65 지리적표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Szegedi teliszalami / Szegedi szalami”, 이는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Emmental de Savoie	치즈	에멘탈 드 사부아 / 에멩탈 드 썬부아
	Pruneaux d'Agen / Pruneaux d'Agen mi-cuits	조리건 포도	프뤼노 다장 / 프뤼노 다쟁 프뤼노 다장 미뀌이/ 프뤼노 다쟁 미뀌이
	Huitres de Marennes-Oleron	굴	위트르 드 마렌느 올레롱 (마렌느 올레롱 굴)
	Canards a foie gras du Sud-Ouest (Chalosse, Gascogne, Gers, Landes, Perigord, Quercy)	오리지방 간	까나르 아 푸아그라 뒤 쉬드우에스트 (샬로스,가스콘/가스콘뉴, 제르스,랑드/링드,페리고르/ 삐리고르,케르시/께르시)(프 랑스 남서부 푸아그라오리)
	Jambon de Bayonne	햄	장봉 드 바이온 (바이온 햄)
	Huile d'olive de Haute-Provence	올리브유	일돌리브 드 오뜨 프로방스 (오뜨 프로방스 올리브유)
	Huile essentielle de lavande de Haute-Provence	라벤더 에센스유	월 에쌍시엘 드 라벵드 드 오뜨 프로방스(오뜨프로방스 라벤더 에센스오일)
독일	Bayerisches Bier	맥주	바이어리슈스 비어
	Munchener Bier	맥주	뮌헨어 비어
헝가리	Szegedi teliszalami / Szegedi szalami	살라미	세게드 텔리살라미 / 세게드 살라미
이탈 리아	Aceto balsamico Tradizionale di Modena	소스- 양념	아체토 발사미코 트라디치오날레 디 모데나 (모데나의 전통 발사믹 식초)
	Cotechino Modena	돼지고기 소시지	코테키노 모데나 (모데나의 코테키노 <소시지의 일종>)
	Zampone Modena	돼지고기	잠포네 모데나 (모데나의 돼지 앞발)
	Mortadella Bologna	큰 돼지고기 소시지	모르타델라 볼로냐(볼로냐의 모르타델라 <소시지의 일종>)
	Prosciutto di Parma	햄	프로슈토 디 파르마 (생햄)
	Prosciutto di S. Daniele	햄	프로슈토 디 산 다니엘레(생햄)
	Prosciutto Toscano	햄	프로슈토 토스카노 (생햄)
	Provolone Valpadana	치즈	프로볼로네 발파다나(치즈의 일종)
	Taleggio	치즈	탈레조 (베르가모 산 치즈의 일종)
	Asiago	치즈	아시아고
	Fontina	치즈	폰티나 (발다오스타 지역의 치즈의 일종)

	보호되는 명칭	제품	한글로의 음역
	Gorgonzola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의 일종)
	Grana Padano	치즈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일종)
	Mozzarella di Bufala Campana	치즈	모차렐라 디 부팔라 캄파나(물소젖 치즈의 일종)
	Parmigiano Reggiano	치즈	파르미자노 레자노(치즈의 일종)
	Pecorino Romano	치즈	페코리노 로마노 (로마의 페코리노 <양젖 치즈의 일종>)
포르투갈	Queijo de Sao Jorge	치즈	케이주 드 썬 조르쥬
	Baena	올리브유	바에나
	Sierra Magina	올리브유	씨에라 마히나
	Aceite del Baix-Ebre-Montsia / Oli del Baix Ebre-Montsia	올리브유	아쎬이떼 델 바제브라몬시아/ 올리델 바제브라몬시아(바제브라몬시아 오일)
	Aceite del Bajo Aragon	올리브유	아쎬이떼 델 바호 아라곤(바호 아라곤산 기름)
	Antequera	올리브유	안테께라
	Priego de Cordoba	올리브유	쁘리에고 데 꼬르도바
	Sierra de Cadiz	올리브유	씨에라 데 까디스
	Sierra de Segura	올리브유	씨에라 데 세구라
	Guijuelo	햄	기후엘로
	Jamon de Huelva	햄	하몬 데 우엘바(우엘바산 햄류)
스페인	Jamon de Teruel	햄	하몬 데 테루엘(테루엘산 햄류)
	Salchichon de Vic / Llonganissa de Vic	소시지	살치촌 데 빅/ 룡가니싸 데빅 (빅산 살치촌, 육가공품의 일종)
	Mahon-Menorca	치즈	마온-메노르까
	Queso Manchego	치즈	께소 만체고 (라만차산치즈)
	Citricos Valencianos / Citrics Valencians	감귤류	씨뜨리꼬스 발렌씨아노스(발렌씨아산 감귤류)
	Jijona	누가	히호나
	Turrón de Alicante	과자류	뚜론 데 알리칸떼(알리칸떼산 설탕과자류)
	Azafran de la Mancha	사프란	아쎬프란 데 라 만차 (라만차산 사프란)

제 2 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 및 식품
(제10.18조제3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보성녹차(Boseong Green Tea)	녹차	Boseong Nokcha
하동녹차(Hadong Green Tea)	녹차	Hadong Nokcha
고창복분자주(Gochang Black Raspberry Wine)	복분자주	Gochang Bokbunjaju
서산마늘(Seosan Garlic)	마늘	Seosan Maneul
영양고춧가루(Yeongyang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Yeongyang Gochutgaru
의성마늘 (Uiseong Garlic)	마늘	Uiseong Maneul
괴산고추 (Goesan Red Pepper Dried)	고추	Goesan Gochu
순창전통고추장(Sunchang Traditional Gochujang)	고추장	Sunchang Jeontong Gochujang
괴산고춧가루(Goesan Red Pepper Powder)	고춧가루	Goesan Gochutgaru
성주참외(Seongju Chamoe)	참외	Seongju Chamoe
해남겨울배추(Haenam Winter Baechu)	배추	Haenam Gyeoul Baechu
이천쌀(Icheon Rice)	쌀	Icheon Ssal
철원쌀(Cheorwon Rice)	쌀	Cheorwon Ssal
고흥유자(Goheung Yuja)	유자	Goheung Yuja
홍천찰옥수수(Hongcheon Waxy Corn)	찰옥수수	Hongcheon Charoksusu
강화약쑥(Ganghwa Mugwort)	약쑥	Ganghwa Yakssuk
횡성한우고기(Hoengseong Hanwoo Beef)	소고기	Hoengseong Hanwoogogi
제주돼지고기(Jeju Pork)	돼지고기	Jeju Dwaejigogi
고려홍삼(Korean Red Ginseng)	홍삼	Goryeo Hongsam
고려백삼(Korean White Ginseng)	백삼	Goryeo Baeksam
고려태극삼(Korean Taekuk Ginseng)	태극삼	Goryeo Taekuksam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충주사과(Chungju Apple)	사과	Chungju Sagwa
밀양얼음골사과(Miryang Eoreumgol Apple)	사과	Miryang Eoreumgol Sagwa
정선허기(Jeongseon Hwanggi)	황기	Jeongseon Hwanggi
남해마늘(Namhae Garlic)	마늘	Namhae Maneul
단양마늘(Danyang Garlic)	마늘	Danyang Maneul
창녕양파(Changnyeong Onion)	양파	Changnyeong Yangpa
무안양파(Muan Onion)	양파	Muan Yangpa
여주쌀(Yeju Rice)	쌀	Yeju Ssal
무안백련차(Muan White Lotus Tea)	백련차	Muan Baengnyeoncha
청송사과(Cheongsong Apple)	사과	Cheongsong Sagwa
고창복분자(Gochang Black Raspberry)	복분자	Gochang Bokbunja
광양매실(Gwangyang Maesil)	매실	Gwangyang Maesil
정선찰옥수수(Jeongseon Waxy Corn)	찰옥수수	Jeongseon Charoksusu
진부당귀 (Chinbu Dangui)	당귀	Chinbu Dangui
고려수삼(Korean Fresh Ginseng)	수삼	Goryeo Susam
청양고추(Cheongyang Hot Pepper)	고추	Cheongyang Gochu
청양고춧가루(Cheongyang Powdered Hot Pepper)	고춧가루	Cheongyang Gochutgaru
해남고구마(Haenam Sweet Potato)	고구마	Haenam Goguma
영암무화과(Yeongam Fig)	무화과	Yeongam Muhwagwa
여주고구마(Yeju Sweet Potato)	고구마	Yeju Goguma
함안수박(Haman Watermelon)	수박	Haman Subak

보호되는 명칭	제품	로마자로의 음역
고려인삼제품 (Korean Ginseng Products)	백삼 또는 태극삼 제품	Goryeo Insamjepum
고려홍삼제품(Korean Red Ginseng Products)	홍삼제품	Goryeo Hongsamjepum
군산찰쌀보리쌀(Gunsan Glutinous Barley)	보리	Gunsan Chalssalborissal
제주녹차(Jeju Green Tea)	녹차	Jeju Nokcha
홍천한우(Hongcheon Hanwoo)	소고기	Hongcheon Hanwoo
양양송이버섯(Yangyang Pine-mushroom)	송이버섯	Yangyang Songibeoseot
장흥표고버섯(Jangheung Oak-mushroom)	표고버섯	Jangheung Pyogobeoseot
산청곶감(Sancheong Persimmon Dried)	곶감	Sancheong Gotgam
정안밤(Jeongan Chestnut)	밤	Jeongan Bam
울릉도삼나무(Ulleungdo Samnamul)	삼나무	Ulleungdo Samnamul
울릉도미역취(Ulleungdo Miyeokchwi)	미역취	Ulleungdo Miyeokchwi
울릉도참고비(Ulleungdo Chamgobi)	참고비	Ulleungdo Chamgobi
울릉도부지갱이(Ulleungdo Bujigaengi)	부지갱이	Ulleungdo Bujigaengi
경산대추(Gyeongsan Jujube)	대추	Gyeongsan Daechu
봉화송이(Bonghwa Pine-mushroom)	송이버섯	Bonghwa Songi
청양구기자(Cheongyang Gugija)	구기자	Cheongyang Gugija
상주곶감(Sangju Persimmon Dried)	곶감	Sangju Gotgam
남해창선고사리(Namhae Changsun Fern)	고사리	Namhae Changsun Gosari
영덕송이(Yeongdeok Pine-mushroom)	송이버섯	Yeongdeok Songi
구례산수유(Gurye Corni fructus)	산수유	Gurye Sansuyu
광양백운산 고로쇠 (Gwangyang baekunsan Acer mono sap)	고로쇠수액	Gwangyang baekunsan Gorosoe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표시.

제1부.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⁶⁶(제10.19조.

제1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 1 절.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프랑스	Beaujolais	보졸레
	Bordeaux	보르도
	Bourgogne	부르고뉴 / 버건디
	Chablis	샤블리 / 샤블리스
	Champagne	샹파뉴 / 샴페인 / 샹빠뉴
	Graves	그라브
	Medoc	메독 / 매독
	Moselle	모젤
	Saint-Emilion	생테밀리옹 / 생테밀리옹
	Sauternes	쑤테른 / 소테른
	Haut-Medoc	오메독 / 오매독
	Alsace	알자스.
	Cotes du Rhone	코뜨뒤론 / 코트뒤론
	Languedoc	랑그독.
	Cotes du Roussillon	코뜨뒤루시옹 / 코트 뒤 루시옹.
	Chateauneuf-du-Pape	샤또 네프 뒤 빠쁘. / 샤또 네 프 뒤 파프
	Cotes de Provence	코뜨 드 프로방스 / 코트 드 프로방스.
	Margaux	마르고 / 마고
	Touraine	투렌느 / 투렌
	Anjou	앙주 / 앙쥬
Val de Loire	발 드 루아르 / 발 드 르와르	
독일	Mittelrhein	미텔라인
	Rheinhessen	라인헤센
	Rheingau	라인가우
	Mosel	모젤
그리스	ΡΡεεττοοιινναα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Retsina)	레찌나
	ΣΣάάμμμοοοοςς (transcription into Latin alphabet: Samos)	사모스

⁶⁶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헝가리	Tokaj	토카이
이탈리아	Chianti	키안티
	Marsala	마르살라
	Asti	아스티
	Barbaresco	바르바레스코
	Bardolino	바르돌리노
	Barolo	바롤로.
	Brachetto d'Acqui	브라케토 다 퀴
	Brunello di Montalcino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Vino nobile di Montepulciano	비노 노빌레 디 몬 테 풀치야노
	Bolgheri Sassicaia	볼게리 사씨카이아
	Dolcetto d'Alba	돌체토 달 바.
	Franciacorta	프란차코르타
	Lambrusco di Sorbara	람브루스코 디 소 르 바 라
	Lambrusco Grasparossa di Castelvetro	람브루스코. 그라스파로사 디 카스텔 베틀로
	Montepulciano d'Abruzzo	몬테풀치야노 다브루초
	Soave	소아베
	Campania	캄파니아
	Sicilia	시칠리아
	Toscana	토스카나
	Veneto	베네토
Conegliano Valdobbiadene	코넬리아노 발 도 뻬 아 데 네	
포르투갈	Madeira	마테이라
	Porto or Port	포르투
	Douro	도우루
	Dao	더웅
	Bairrada	바이하다
	Vinho Verde	비 뉴 베르드
	Alentejo	알렌떼주
루마니아	Dealu Mare	데알루 마레
	Murfatlar	무르파트라르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슬로바키아	Tokajska or Tokajsky or Tokajske	토카이스카 / 토카이스키 / 토카이스케
스페인	Malaga	말라가
	Rioja	리오하
	Jerez -- Xeres -- Sherry or Jerez or Xeres or Sherry	헤레스. - 헤레스. - 웨리, 헤레스, 헤레스 또는 웨리
	Manzanilla - Sanlucar de Barrameda	만싸니아. - 산루까르 데 바라메다
	La Mancha	라 만차
	Cava	까 바
	Navarra	나바라
	Valencia	발렌시아
	Somontano	소몬따노
	Ribera del Duero	리 베 라 델 두 에 로
	Penedes	빼네데스
	Bierzo	비에르쑈
	Ampurdan-Costa Brava	암뿌르단 - 꼬스 따 브라바
	Priorato or Priorat	쁘리오라또 / 뿌리오랄
	Rueda	루에다
	Rias Baixas	리아스 바이샤스
	Jumilla	후미야
	Toro	또로
	Valdepenas	발데빠냐스
	Cataluna	까탈루냐
Alicante	알리칸떼	

제2절 유럽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증류주⁶⁷⁶⁸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오스트리아	Jagertee / Jagertee / Jagatee	예거테
	Inlanderrum	인랜더룸
	Korn / Kornbrand ⁶⁹	코언 / 코언브랜드
벨기에	Korn / Kornbrand ⁷⁰	코언/ 코언브랜드
사이프러스	Ouzo ⁷¹	우조
핀란드	Vodka of Finland	보드카 오브 핀란드
	Finnish berry liqueur / Finnish fruit liqueur	피니쉬 베리 리퀴/ 피니쉬 프루트리퀴
프랑스	Cognac	코냑/ 코냑
	Armagnac	아르마냐
	Calvados	칼바도스/ 칼바도스
독일	Korn / Kornbrand ⁷²	코언/ 코언브랜드
그리스	Ouzo ⁷³	우조
헝가리	Torkolypalinka	퇴르코이팔린카
	Palinka	팔린카
아일랜드	Irish whiskey / Irish whisky	아이리쉬 위스키(양주의 일종)
이탈리아	Grappa	그라파
폴란드	Polska Wodka / Polish Vodka	폴스카부드카/ 폴리쉬보드카
	Wodka ziołowa z Niziny Połocnopodlaskiej aromatyzowana ekstraktem z trawy Śbrowej / Herbal vodka from the North Podlasie Lowland aromatised with an extract of bison grass	부드카 지오워바 즈 니지느푸노쯔노 포들라스키에이 아로마티바나 에크스트라크템 즈 트라브 슈브로베이/ 허발 보드카 프림 더 놀스 포들라시에 로우랜드 아로마타이즈드 위드 언 익스트랙트 오브 바이슨 그라스
	Polska Wiśniówka / Polish Cherry	폴스카 비쉬니우브카/ 폴리쉬 체리
스페인	Brandy de Jerez	브랜드 디 헤레스(헤레스산 브랜드)
	Pacharan	빠차란

67 이탤릭으로 쓰여진 부분은 지리적표시의 일부가 아니다.

68 지리적표시가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경우 “Korn / Kornbrand”, 이것은 두 용어가 함께 또는 각자 사용 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스웨덴	Swedish Vodka	스웨디쉬 보드카(스웨덴산 보드카)
	Svensk Aquavit / Svensk Akvavit / Swedish Aquavit	스웬스크 아쿠아비트/ 스웬스크 아쿠아비트/스웨디쉬 아쿠아비트(스웨덴산 아쿠아비트)
	Svensk Punsch / Swedish Punch	스웬스크 펀취/ 스웨디쉬 펀치
영국	Scotch Whisky	스카치 위스키

제2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포도주, 방향포도주, 증류주(제 10.19조 제 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증류주

보호되는 명칭	한글로의 음역
진도홍주(Jindo Hongju)	Jindo Hongju

69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70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71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72 오스트리아, 벨기에(독일어를 쓰는 공동체), 독일의 제품

73 사이프러스 또는 그리스의 제품

부록 2

한·미 FTA 지리적표시 관련 협조문

제 18.2 조 지리적표시를 포함한 상표

1. 어떠한 당사국도 등록의 요건으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⁷⁴.

3.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으로서 통용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통명칭)와의 관계에서 상표의 상대적 크기, 위치 또는 사용 양식에 관한 요건을 특히 포함하여, 그 보통명칭의 사용을 강제하는 자국의

⁷⁴ 이 장의 목적상, 지리적표시라 함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 영역의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명시하는 표시를 말한다. 어떠한 표지(예 : 문자, 숫자, 도형적인 요소 및 단색을 포함하는 색채뿐만아니라, 지리적 명칭 및 개인의 이름을 포함하는 단어) 또는 표지의 조합도 어떤 형식이든 간에 지리적표시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장에서 “원산지”는 제1 .4조(정의)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조치가, 그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되는 상표의 사용이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등록된 상표의 소유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모든 제3자가 소유자의 등록된 상표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거래의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사용으로 인하여 혼동 가능성을 야기할 경우 그러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표지 사용의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각 당사국은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이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예외는 상표권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어떠한 표장이 유명 표장인지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그 표장이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에 추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명 표장에 대한 구제를 거부할 수 없다.

가. 등록

나. 유명 표장 목록에의 등재, 또는

다. 표장의 유명성에 대한 사전 인식

7. 파리 협약 제6조의2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명상표⁷⁵에 의하여 확인

⁷⁵ 표장이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의 명성이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분야의 일반인의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준용된다. 다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그 상표의 사용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며, 상표권자의 이익이 그러한 사용에 의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8. 각 당사국은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유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만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와 유명 상표권자를 연관시킬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유명상표의 명성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을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상표 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거절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규정한다.

9.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는 상표등록제도를 규정한다.

- 가. 상표 등록의 거절 이유에 대한 통지를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는 요건. 통지는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나. 출원인이 상표당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답변하고, 최초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최종적인 등록 거절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불복청구할 수 있는 기회다. 이해당사자가 상표 출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표가 등록된 후 그 상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 라. 이의제기 및 취소절차에서의 결정은 이유가 설명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 서면 결정은 전자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10.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에 대한 전자적 출원과 상표의 전자적 처리·등록 및 유지를 위한 제도, 그리고
- 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상표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전자적 데이터베이스

11. 각 당사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상표 출원 또는 등록에 관계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각 등록 및 공표는, 수정되고 개정된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1979년)(니스 분류)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 상의 류별로 분류하여 그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명칭에 의해 표시한다. 그리고
- 나.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동일한 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역으로, 각 당사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등록이나 공표에서 니스 분류상 다른류로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12. 각 당사국은 상표의 최초 등록 및 각 등록 갱신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규정한다.

13. 어떠한 당사국도 사용권의 유효성을 확립하거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상표 사용권을 등록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14. 당사국이 상표보호제도를 통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리적표시의 보호를 위하여 출원하거나 이의 인정을 청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출원 및 청원(당사국이 선택한 수단과 관련되는 경우)에 대하여,

- 가. 자국민을 대신한 당사국의 관여를 요구함이 없이,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접수한다.
- 나.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을 최소한의 형식으로 처리한다.
- 다. 그러한 출원 및 청원의 제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규정이 대중에게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보장한다.

- 라. 일반적인 출원 및 청원의 제출 절차와 출원 및 청원의 처리과정에 관한 지침을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원인, 청원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특정 출원 및 청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관련된 절차적인 지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락정보를 이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 마. 지리적표시를 위한 출원 및 청원이 이의제기가 가능하게 공표되도록 보장하고, 출원 또는 청원의 대상인 지리적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생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다.

15. 가. 각 당사국은 다음의 각 사항이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의 거절, 그리고 이의제기 및 취소의 근거가 되도록 규정한다.

- 1) 지리적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선의로 출원 또는 등록 중이며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지리적표시가, 선의의 사용을 통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 3) 지리적표시가,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유명하게 되었고 그 영역에서 그 지리적표시의 보호 또는 인정일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진 상표와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가호의 목적상, 당사국의 영역에서 지리적표시의 보호일은 다음이 된다.

- 1) 출원 또는 청원의 결과로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출원 또는 청원일, 그리고
- 2)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호 또는 인정의 경우, 그 당사국의 법에 따른 보호 또는 인정일

부록 3

중국의 방산멧돌감 지리적표시 사례

1. 방산 멧돌 감(Fangshan Mopan persimmon)

- 본 표준안에서 규정한 기준과 기술에 알맞게 생산되었으며 각종 정해진 기준치에 적합하고 납작한 타원형의 형태로써 꼭지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며 형태가 멧돌과 비슷하고 색상은 귤색에서 주황색 정도이며, 씨가 없고, 저장 운송이 용이한 최상 품질의 방산의 감을 뜻한다.

2. 생산지역 범위

- 북경시 방산구에 위치한 十渡鎮(Shi-du 마을)、張坊鎮(Zhang-fang 마을) 大石窩鎮(Da-shi-guo 마을)、長溝鎮(Chang-gou 마을)、韓村河鎮(Han-cun-he 마을)、周口店鎮(Zhou-kou-dian 마을)、城關街道(Cheng-guan 대로)、閻村鎮(Yan-cun 마을)、青龍湖鎮(Qing-long-hu 마을)、河北鎮(He-bei 마을)、佛子庄鄉(Fuzi 마을) 등 11개 소도시 행정 관할 구역

3. 필수 사항

3.1 자연환경

- 방산 멧들형 감 생산 지역은 Tai-xing 산과 화북 평원 너머의 지역이다. 생산 구역의 환경 조건은 농산물 안전 품질/ 무공해 과일 생산지 환경 조건 (GB/T 18407.2)의 규정에 따른다.

3.1.1 기후조건

- 연평균 기온 12.7℃ 연평균 안개일수 157일 미만, 영상 누적 온도 4839.2℃ 이상, 1년 일조 시간 약 2621.3시간, 연 최저 기온 -19.1℃ 이상

3.1.2 지형조건

- 해발 300m이하의 구릉지역, 골짜기 지대나 그와 비슷한 지형의 산을 등진 따뜻한 평원 지역, 바람을 등진 남향 형태의 지역, 저지대의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우박이 적은 지대여야 한다.

3.1.3 토양조건

- 토양층 깊이 80cm이상의 비옥한 흑색토 혹은 점토.산성도 기준 pH 7.0~8.5, 토양의 유기질 함량 1.0% 이상이어야 하며 지하수 수위는 1.2m이하여야 한다.

3.1.4 강우 조건

- 연 강수량 400mm ~ 800mm.

3.2. 생산 과일 품질

3.2.1 등급규격

- 등급 규격 부표 3-1 참고

부표 3-1. 등급규격

항 목	특급	일급	
날개 단위무게(g)	≥300	≥250	
형태	깨끗하며 납작한 타원형 형태 꼭지 부분이 오목함.	깨끗하며 납작한 타원형 형태 꼭지 부분이 오목함.	
감 꼭지	꼭지가 완전함	꼭지가 보통 완전함	
색깔, 광택	갈색, 주황색	갈색, 주황색	
표면결함	상처	없음	
	부기, 패임	없음	가벼운 정도만 허용, 0.5cm ² 이하
	잔상처	없음	가벼운 정도만 허용, 표면의 1/50 이하
	물 때, 멍	없음	가벼운 정도만 허용, 표면의 1/20 이하
	열상	없음	가벼운 정도만 허용, 1cm ² 이하
	우박 흔적	없음	없음
	충해	없음	가벼운 정도만 허용, 세균데 이하
	연화	없음	가벼운 정도만 허용, 1cm ² 이하
	병해	없음	없음
	허가 기준	없음	두 항목 이하.

3.2.2 물리적/화학적 조건

- 물리적/화학적 조건 부표 3-2 참조

부표 3-2 물리적/화학적 조건

항 목	기준
가용성 고형물(%)	≥16
경도* (Kg/cm ²)	≥10
경도는 채취 후 24시간 내에 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함.	

3.2.3 위생 조건

- 과실의 오염물 제한량은 식품내 오염물 제한량(GB 276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함,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은 식품내 농약 최대잔류 제한량(GB 2763)의 규정과 기타 관련 국가 법률 규정을 따름.

4. 시험 방법

4.1. 중량 기준

- 계량기구를 이용하여 측정. 꼭지, 색상과 광택 목적법을 이용하여 측정

4.2 물리적/화학적 조건

4.2.1 가용성 고형물

- 휴대용 당용 굴절계
- 각 과일의 원형 표면에 균등하게 두 세군데를 선택하여, 각각 녹슬지 않은 깨끗한 칼을 이용하여 일정량을 도려낸다. 취즙기를 이용하여 일정량 과즙

을 추출해 휴대용 당용 굴절계 측정구에 올려 수치를 읽고 기록한다. 최종 수치는 여러 번의 측정 수치 평균으로 한다.

4.2.2 과실의 경도

○ 과실 경도 측정기

- 샘플링 된 과일의 양쪽 긴축의 몸통 부분의 경도를 측정한다. 녹슬지 않은 깨끗한 칼을 이용해 과육을 도려내며, 도려내는 면적은 경도 측정계 머리 부분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한다. 되도록이면 과육의 손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경도 측정기를 수직으로 잡고 측정 부위에 과일이 압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규정된 표준 선까지 압력을 가하여 누른다. 과실 경도 측정기의 수치를 직접 표시하거나 단위를 kg/cm^2 로 환산을 하여 표시하고 샘플링 된 과일의 두 부분을 측정하여 평균 수치를 최종 수치로 하여 경도를 측정한다.

4.3 위생 기준

- 식품내 오염물 제한량(GB 2762)에 규정된 검사 방법을 따르며, 농약 잔류 제한량은 식품내 농약 최대잔류 제한량(GB 2763)에 규정된 검사 방법을 따른다.

5. 검사 규칙

5.1 그룹핑, 샘플링

5.1.1 그룹핑

- 같은 등급, 동시 수확물, 동일한 포장 일자의 과일을 하나의 검사 그룹으로 올바른 과일, 채소 샘플링 방법(GB 8855)의 규정에 맞게 진행

5.2 검사 분류

5.2.1 회수 검사

- 매 그룹의 과일 결제 전, 각 생산 단체는 회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회수 검사 항목은 포장, 명시사항, 꼬리표, 등급규격 등을 포함한다. 회수 검사 합격 후 증서를 얻고 결제 가능하다.

5.2.2 형식 검사

- 형식검사는 본 표준 기술 요구의 모든 내용을 포함 한다. 아래 나열된 상황 중에 부합 하는 것이 있다면 형식 검사를 받아야한다:
 - a) 두번의 표본 검사 결과 차이가 매우 클 때
 - b) 인적요소나 자연적요소로인해 생산 환경의 변화가 매우 클 때
 - c) 국가 품질 기술 감독기구나 주관부문이 검사 사항을 요구 할 때

5.3. 판정 규정

- 등급 규격 불합격 과일이나 저등급의 과일 비율이 5% 이하이고, 물리적/화학적 기준과 위생 기준, 순수함량 등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생산품은 합격이다. 등급 규격 불합격한 과일이나 저등급의 과일 비율이 5% 이상이거나, 혹은 물리적/화학적 기준, 위생 기준, 순수함량 등에서 한 항목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생산품은 불합격이다. 그 생산품은 불합격 처리 된다.
- 상표는 사전 포장 식품 라벨 표준(GB 7718) 규정에 맞추어 시행한다. 포장 상자상에는 반드시 지리 표지 상품 전용 명시 사항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의 명칭을 분명히 하고, 수량, 순수 함량, 등급, 생산지, 포장일자, 생산 회사, 집행 표준 번호를 기록한다.

5.4. 포장

- 규정한 골판지 박스나 기타 포장용기로 적합한 용기를 사용한다. 포장 용기 안에는 나뭇가지나, 나뭇잎, 모래, 돌, 자갈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포장 내부 재질은 깨끗해야 하고 이물질이 있거나 냄새가 나 내용물에 피해를 주거나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같은 포장 상자중의 과일은 같은 등급에 속하는 크기가 균등한 제품이어야 한다. 상자의 재질과 과일을 감싸고 있는 종이의 재질은 같아야 하고, 포장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고 벌레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청결, 건조해야 한다.

5.5. 운송

- 적재 · 수하 시 던져서는 안되며 가볍게 놓아야 한다. 상품은 식별번호에 따라 적재하며 유독물질이나 부패된 물질, 그 외 이물질과는 함께 운반해선 안 된다.

5.6. 보관

- 과일 재배 후 각각 등급에 따라 포장하며 병충해를 입은 과일이나 상해를 입은 과일은 폐기한다. 판매 외 재고상품은 반드시 전용 용지와 상자를 사용하여 저온의 창고나 저온 냉장 상태로 보관하며 냉동 보관도 가능하다. 저온 상태로 보관된 감은 120일 이상 보관해선 안되며 냉동 보관시 1년을 넘어서 안된다. 창고 보관시 전용 상자를 사용하며, 벽이나 지면에서 20cm 이상 떨어지게 보관해야한다. 2m 가 넘도록 쌓아서 보관해선 안되며, 창고 보관시 창고 용량의 80%를 넘어서 안된다.

5.6.1 단기 보관

- 전용 포장 종이와 골판지 박스로 포장후 0℃ ~1.0℃의 냉동 창고에 보관(최장 30일)

5.6.2 중기 보관

- 과일을 폴리에틸렌 비닐을 이용, 각각 포장 후 0℃ ~1.0℃의 냉동 창고에 보관(최장 60일)

5.6.3 장기보관

- 에어컨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며, 아래 조건에 맞춰 최대 90일에서 120일간 보관 가능
 - a) 기체 함유 성 : N290%, CO28%, O22%
 - b) 온도-1.0℃ ~0℃
 - c) 상대 습도90%이상

부도 3-1. A=방산멧돌감 랜드마크제품의 보호범위도



부록 4

중국의 지리적표시 보호품목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북경					
국가검사검역국					
燕山板栗	연산만리	연산밤	平谷大桃	핑구다토우	핑구큰복숭아
昌平苹果	창핑핑귀	창핑사과	昌平草莓	팡핑포메이	창핑딸기
大兴西瓜	따썩씨과	대흥수박	北京醇系列白酒	베이징춘시레바이주	북경순시리즈훤술
大兴西瓜	따썩씨과	대흥수박	牛栏山二锅头系列白酒	뉴란산얼귀터우시레바이주	소우리산이과 두주훤술
房山磨盘柿	팡산뮌판쓰	방산맥반감	通州腐乳	통저우푸루	통주두부젓
국가공상관리국					
门头沟京白梨	먼터우겨우장바이리	문두구경훤배	大兴西瓜	다썩씨과	대흥수박
门头沟京西白蜜	먼터우겨우징시바이미	문두구경서백미	密云甘栗	미윈간리	비운감물
平谷鲜桃	핑구셴토우	핑곡선복숭아	怀柔板栗	화이러우반리	회유밤
농업부					
延庆国光苹果	Yanqing guoguang pingguo	연경국광 사과			
천진					
국가검사검역국					
天津酒	텐진진주	천진진술	义聚永高粮酒	이취융고량주	의거영고량술
王朝葡萄酒	왕초우푸토우주	왕조포도술	义聚永玫瑰露酒	이취융메이귀이루주	의거영 장미술주
小站稻米	썩잔도우미	소잠쌀쌀	义聚永五加皮酒	이취융우차피주	의거영오가피주
贺兰山东麓(lu)葡萄酒	허란산둥루푸토우주	허란산둥루포도주	贺兰山东麓葡萄酒(扩大产地范围)	허란산둥루푸토우주(퀴다찬디판위)	허란산둥루포도주(산지범위확대)
灵武长枣	링우창조	영무대추	宁夏枸杞酒	닝샤겨우치주	닝하구기자술
宁夏枸杞	닝샤겨우치	닝하구기자	宁夏羊绒制品	닝샤양룽즈핀	닝하캐시미어제품
香山压砂西瓜	샹산야사시과	향산압사수박	宁夏中宁枸杞及其制品	닝샤중닝겨우치치즈핀	닝하중닝겨우치 제품
同心圆枣	통심원조우	동심대추			
국가공상관리국					
沙窝萝卜	싸워러버	사와 무	茶淀葡萄	차덴푸토우	차전포도
小站稻	썩잔도우	소잠벼	七里海河蟹	치리하이허셰	칠리해민물게
灵武长枣	링우창조우	영무대추	同心圆枣	통심원조우	동심대추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中宁枸杞	중닝거우치	중닝구기자	太西煤	타이시메이	태서석탄
中宁圆枣	중닝웬조우	중닝대추	固原红鸡	구웬홍지	고원붉은닭
盐池滩羊	앤츠탄양	염지탄양	固原红鸡	구웬홍지	고원붉은닭
盐池滩羊	앤츠탄양	염지탄양	西吉马铃薯	시지마링수	서길감자
盐池甘草	앤츠간초	염지감초			

하북성

질량검사시스템					
泊头鸭梨	보터우야리	박두압리	魏县鸭梨	위이싼야리	위현압리
昌黎葡萄酒	창리푸도우쥬	창려포도주	赞皇大枣	잔황다조우	찬황큰대추
黄骅大枣	황화둥조우	황화겨울대추	围场马铃薯	위이창마링수	위장감자
蠡县麻山药	리샌마산요우	려현마산약	永年大蒜	용넨다수안	영년마늘
卢龙粉丝	루룽핀스	로룽실당면	石门核桃	스먼허토우	석문호두
山庄老酒	산장로우쥬	산장로우	武安小米	우안쇼우미	무안좁쌀
涉县核桃	썬싼허토우	서현호두	白洋淀皮蛋	바이양덴단	백양전송화단
			(安新产区)	(안신찬취)	(안신산구)
涉县花椒	썬싼화조우	서현산초	白洋淀咸鸭蛋	바이양덴싼야단	백양전절군오리알
			(安新产区)	(안신찬취)	
宣化牛奶葡萄	수엔화뉴나이푸도우	선화우유포도	玉田包尖白菜	위롄보우젠바이차이	옥전포끝배추
蔚州贡米(蔚州小米)	위이저우궁미	위주궁미	富岗苹果	푸강핑귀	부강사과
顺平桃	순평도우	순평복숭아	涿水麻核桃(野三坡麻核桃)	라이쉬이마허토우 (예산푸어마허토우)	내수마호두
板城烧锅酒	반청소우귀쥬	반성술도기주	望都辣椒	왕두라쥬우	왕두고추
承德国光苹果	청더귀광핑귀	성덕국광사과	大厂肥牛	다창페이뉴우	대장소고기
晋州鸭梨	진저우야리	진주압리	巴东玄参	바둥수웬선	바둥현삼
唐县大枣	탕싼다조우	당현큰대추	围场马铃薯	위이창마링수우	위장감자
沧州金丝小枣	창저우진스쇼조우	창주금사작은대추	承德杏仁露	청더싱런루	승덕아몬드음료
京东板栗	징둥반리	경동밤	宽城板栗	관청반리	관성밤
宁晋鸭梨	닝진야리	닝진압리	沙城长城葡萄酒	사청창청푸도우쥬	사성장성포도주
容城绿芦笋	룽청뤄루순	영성록아스파라거스			
국가공상관리국					
沧县金丝小枣	창싼진스쇼조우	창현금사작은대추	白洋淀鸭蛋	바이양덴야단	백양전오리알
黄骅大枣	황화둥조우	황화겨울대추	阜平大枣	푸형다조우	부형대추
沧州金丝小枣	창저우진스쇼조우	창주금사작은대추	南宫大枣	난궁다조우	남궁대추
泊头鸭梨	뵈터우야리	박두압리	宽城板栗	관청반리	관성밤
농업부					
平泉滑子菇	Pingquan huazigu	평천활자 버섯	崇礼蚕豆	Chongli candou	충리 콩
祈紫菀	Qizhawan	계자운	任县高脚白大葱	Renxian gaojiao baidacong	임현고각 대파
磁州白莲藕	Cizhou bailian'ou	자주백 연근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산서성					
국가검사검역국					
山西老陈醋	산시이로천추	산서초	祁县酥梨	치샌수리	기현소배
汾州核桃	편주어우허토	분주호두	阳城蚕茧	양청찬젠	양성누에
平遥牛肉	핑요뉴러우	핑요소고기	左权绵核桃	취웬맨허토	좌권면호두
沁州黄小米	친주어우황쇼미	친주좁쌀	和顺肉牛	허수뉴우러우	하순소고기
太谷壶瓶枣	타이꾸후핑조얼	태구호병대추	晋州鸭梨	진주어우야리	금주압배
广灵小米	광링쇼미	광령좁쌀	左云苦荞	취윈쿠쇼	좌운고소
神池胡油	신즈후유	신지호기름	永济芦笋	영지루순	
太谷饼	타이꾸뽕	태고떡			
국가공상관리국					
清徐葡萄	칭쉬푸토	칭서포도	平遥牛肉	핑요뉴러우	핑요소고기
清徐陈醋	칭쉬친	칭서초	祁县酥梨	치샌수우리	기현수배
清徐老陈醋	칭쉬로천추	칭서초	柳林红枣	뉴린홍졸	버들림붉은대추
大同黄花	따통황화	대동노란꽃	应县紫皮大蒜	잉싼즈피따산	응현자필마늘
농업부					
柳林红枣	Liulin hongzao	유림 대추	古县核桃	Jixian hetao	고현 복숭아
晋祠大米	Jinci dami	진사 백미	红山荞麦	Hongshan qiaomei	홍산 메밀
隆化小米	Longhua xiaomi	능화 좁쌀	长子大青椒	Zhangzi daqingjiao	장자대 풋고추
古县核桃	Guxian hetao	고현 호두	孝义核桃	Xiaoyi hetao	효의 호두
古县苹果	Jixian pingguo	길현 사과	灵丘荞麦	Lingqiu qiaomai	영구 메밀
官滩枣	Guantan zao	관탄 대추	天镇唐杏	Tianzhen tangxing	천침 살구
寿阳小米	Shouyang xiaomi	수양 좁쌀	应县胡萝卜	Yingxian huluobo	응현 홍당무
沁水黑木耳	Qinshui heimu'er	심수 목이버섯	交城梨枣	Jiaocheng lizao	교성 대추
黎城核桃	Licheng hetao	여성 호두	孝义柿子	Xiaoyi shizi	효의 감
交城骏枣	Jiaocheng junzao	교성 대추	应县青椒	Yingxian qingjiao	응현 풋 고추
芮城花椒	Ruixian huajiao	애성 산초	芮城苹果	Ruicheng pingguo	열성 사과
忻州糯玉米	Xinzhou nuoyumi	흔주난 옥수수	临晋江石榴	Linjinjiang shiliu	임보강 석류
神池莜麦	Shenchi youmai	신지 보리	北景柿子	Beijing shizi	북경 감
神池胡麻	Shenchi huma	신지 수염 마	万荣三白瓜	Wanrong sanbaigua	만영삼 흰 박
神池羊肉	Shenchi yangrou	신지 양고기	襄陵莲藕	Xiangling lian'ou	양녕 연근
永和条枣	Yonghe dongzao	영화 대추	大宁西瓜	Danling xigua	대녕 수박
乡宁翘果	Xiangning chiguo	향녕 사과	熬脑大葱	Aonao dacong	오뇌 대파
平遥长山药	Pingyao changshanyao	핑요장 산초	大宁	Danling hongpi xiaomi	대녕 붉은 곱질 좁쌀
万荣三白瓜	Wanrong sanbaigua	만영삼 흰 박	红皮小米	Wutong shanyao	오동 산약초
中阳柏籽羊肉	Zhongyang baizi yangrou	중양백자 양고기	梧桐山药	Pingshunliu dangshen	평순로 당삼
神池莜麦	Shenchi youmai	신지귀리	神池胡麻	Shenchi huma	신지 뿌리 마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洪井三皇小米	Hongjing sanhuang xiaomi	홍정삼황 좁쌀	神池羊肉	Shenchi yangrou	신지 양고기
내몽골					
국가검사검역국					
开鲁红干椒 巴林石 苏尼特羊肉 西旗羊肉	카이루홍간쵸 빠린스 쑤니터양러우 시치양러우	개루붉은건고추 바림석 수니특양고기 서기양고기	赤峰绿乌鸡及其制品 鄂尔多斯羊绒系列产品 呼伦贝尔蓝莓野果汁 内蒙古山羊绒、 羊绒纱及羊绒系列 制品	즈펑뤄나오지치쯔핀 어얼드위스양통시례찬핀 후룬베얼란머이귀즈 네이멍구양통, 양통싸지치양통시 레쯔핀	적봉록색오골계및제품 어얼다스양계열제품 호룬베얼란메이과일즙 내몽골산양통, 양통사및양통계열 제품
保安沼大米 呼伦贝尔羊肉 科尔沁肥牛肉 巴盟羊绒系列产品 赤峰羔羊肉 赤峰黄玉米	보안조파미 후룬베얼양러우 커얼친메이뉴러우 빠멍양통시례찬핀 즈펑꼬양러우 즈펑황위미	보안조입쌀 호룬베얼양고기 가을친소고기 바맹양통계열제품 적봉새기양고기 적봉노란옥수수	通辽肥牛 通辽黄玉米 乌珠穆沁羊 乌珠穆沁羊系列产品 牙克石野果系列酒	통료피이뉴 통료황위미 우주무친양 우주무친양시례찬핀 야커스예귀시례주우	통료소고기 통료황옥수수 우주무친양 우주무친양계열제품 야극성야과계열술
국가공상관리국					
武川土豆 武川荞麦 托县辣椒 达茂草原羊 库伦荞麦	우촨투더우 우촨쵸마이 트위센라쵸 다모초원양 쿠루언쵸마이	무천감자 무천메밀 타현고추 달무초원양 구운메밀	扎鲁特葵花籽 磴口华莱士瓜 巴彦淖尔小麦 锡林郭勒羊肉 呼伦贝尔黑木耳	차루터쿠이화즈 뎡교우화라이스파 바인추얼쇼마이 시린구위러양러우 후러언베얼허이무얼	차루특해바라기씨 뎡구화래사박 바인추얼소맥 시린곽락양고기 후룬베얼검정귀버섯
농업부					
扎兰屯沙果 扎兰屯黑木耳	Zhalantun shaguo Zhalantun heim'u'er	찰란둔 능금 찰란둔 목이버섯	乌海葡萄 三河马	Wuhai putao Sanhe ma	조해 포도 삼하 말
扎兰屯大米 扎兰屯葵花 夏家店小米 莫力达瓦大豆 莫力达瓦姑娘 敖汉旗荞麦	Zhalantun dami Zhalantun kuihua Xiajiadian xiaomi Molidawa dadou Molidawa guniang Aohanqi qiaomai	찰라둔 백미 찰라둔 해바라기 하가점 좁쌀 막력달와 콩 막력달와고낭 오한기교 메밀	三河牛 阿拉善锁阳 苏尼特羊肉 河套番茄 莫力达瓦柳蒿芽 莫力达瓦黄烟	Sanhe niu Alashan suoyang Sunite yangrou Hetao fanqie Molidawa liugaoya Molidawa huangyan	삼하 소 아랍선쇄양 수니특 양고기 하투 토마토 막력달와 버들 싹 막력달와 황 연초
鄂托克螺旋藻	Etuoke luoxuanzao	악탁극나선	呼伦贝尔油菜籽	Hulunbei'er youcaizi	호룬페이 유채씨
天山明绿豆	Tianshan minglvdou	천산명 녹색 콩	莫力达瓦 苏子	Molidawa suzi	막리달와소자
乌兰察布马铃薯	Wulanchabu malingshu	오란찰부 감자	阿尔山 黑木耳	A'ershan heim'u'er	아이산 목이버섯
乌珠穆沁羊肉	Wuzhumuxin yangrou	오주목심 양고기	阿拉善 双峰驼	Alashan shuangfengtuo	아랍선 쌍봉 낙타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鄂尔多斯细毛羊	E'erduosi xingmaoyang	악이다사세 양	阿拉善白绒山羊	Salashan bairong shanyang	아랍선 산양
阿尔巴斯白绒山羊	A'erbasi bairong shanyang	아이파사 백산양양			

요녕성

국가검사검역국					
桓仁冰酒	환런빙잉쥬	환인빙주	清原龙胆	칭웨이룽단	칭윈용담
桓仁蛤蟆油	환런하마유	환인개구리기름	盘锦河豚	관진허투운	관금하둔
桓仁山参	환런산선	환인산삼	桓仁红松籽	환런홍승즈	환인갯
鞍山南果梨	안산난과리	안산남과배	桓仁大榛子	환런따전즈	환인개미
大连鲍鱼	따랜뽀위	대련전복	岫岩辽五味子	유엔료오우위이즈	육암료오미자
大连海参	따랜하이선	대련해삼	桓仁山核桃油	환런산허토유	환인산호두기름
桓仁大米	환런따미	환인입쌀	朝阳大枣	초양따조	조양대추
锦州道光廿五贡酒	지인저우톈광얼스우공쥬	금주동광이십고공술	大连河豚	따랜허투운	대련하둔
喀左陈醋	커어취천추	카좌진초	高桥陈醋	꼬초오천추	고교진초
盘锦大米	관지인따미	관금입쌀	三块大石果榛子	삼괴이따스괴전즈	삼괴대석과개미
岫岩玉	유에인위	육암옥	抚顺林下参	푸순린샤선	무순림하삼
龙潭绿豆粉丝	룽탄루이드우펀스	용담록두국수	抚顺哈什蚂	푸순하스마	무순기름개구리
清水大米	칭수이따미	칭수입쌀	抚顺辽五味子	푸순료오우위이즈	무순료오미자
草河口红松籽	초허코우홍승즈	초허구갯	清原马鹿茸	칭웨이마루룽	칭윈말시슴룩용
永乐葡萄	응러푸토	영락포도	铁岭榛子	테이링전즈	철령개미
红崖子花生	홍야즈화성	홍야자땅콩	獐子岛海参, 鲍鱼、扇贝	장즈도하이선, 뽀위이, 산베이	장자도해삼, 전복, 조개
西丰鹿茸、西丰鹿鞭	서펑루룽, 서펑루베인	서펑녹용, 서펑녹변	丹东板栗	단은등반리	단동밤
傅家花生	푸자화성	부가땅콩	盘锦河蟹	관진허세	관금민물게
黑山花生	허이산화성	흑산땅콩			

국가공상관리국					
金州大樱桃	지인주어따잉토	금주대앵두	绥中白梨	수이중바이리	수중백배
金州黄桃	지인주어홍토	금주노란복숭아	盘锦大米	관진따미	관금입쌀
长海海参	차양하이하이선	장해해삼	东港草莓	둥강초머이	둥항딸기
旅顺海带	리수은하이다이	여순떡	东港大米	둥강따미	둥항입쌀
瓦房店小国光苹果	와팡뎬소국광궤어	와팡점소국광사과	铁岭花生	테이링화성	철령땅콩
庄河杂色蛤	좡허자서하	장하잡색개구리	铁岭大米	테이링따미	철령입쌀
海城南果梨	하이청난구어리	해성남과배	铁岭榛子	테이링전즈	철령개미
鞍山南果梨	안산나구어리	안산남과배	营口大米	잉크어우따미	영우입쌀
岫岩玉雕	유엔위드요	육암옥조각	盖州苹果	그아이즈어우펑궤	개주사과
南票大枣	남표따조	남표대추	东陵红树莓	둥링홍수머이	둥홍수딸기

농업부					
朝阳小米	Chaoyang xiaomi	조양 좁쌀	盖州生姜	Gaizhou shengjiang	개주 생강
鞍山君子兰	Anshan junzilan	안산 군자 난	抚顺单片黑木耳	Fushun dapian heimu'er	무순단편 목이버섯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耿庄大蒜	Gengzhuang dasuan	경장 마늘	盖州西瓜	Gaizhou xigua	개주 수박
朝阳大枣	Chaoyang dazao	조양 대추	东港梭子蟹	Donggang sunzi xie	동항준자 게
彰武黑豆	Zhangwu heidou	창무 검은콩	东港杂色蛤	Donggang zase ge	동항잡색 새우
黑山锦丰梨	Heishan jinfengli	흑산면풍 배	东港大黄蚰	Donggang dahuang xian	동항대황 개막조개
岫岩滑子蘑	Xiuyan huazimo	수암활자 버섯	阜新花生	Fuxin huasheng	부신 땅콩
丹东杜鹃	Dadong dujuan	단동 진달래	盖州生姜	Gaizhou shengjiang	개주 생강
小梁山西瓜	Xiaoliangshan xigua	소양산 수박	绥中核桃	Suizhong hetao	스중 호두
宽甸石柱人参	Kuandian shizhu renshen	관전석주 인삼	庄河牡蛎	Zhuanghe muli	장하 굴
旅顺大樱桃	Lvshun dayingtao	여순 앵두	庄河滑子菇	Zhuanghe huazigu	장하활자 버섯
旅顺鲍鱼	Lvshun baoyu	여순 전복	庄河山牛蒡	Zhuangheshan niubang	장하산 우엉
旅顺赤贝	Lvshun chibei	여순 적조개			
瓦房店红富士苹果	Wafangdian hongfushi pingguo	와방점홍부사 사과			

길림성

국가검사검역국					
梅河大米	머이허따미	매하입쌀	姜家店大米	자양자아덴따미	강가점입쌀
吉林长白山“中国林蛙油”	지이린창바이산“중귀린와유”	길림장백산“중국기름개구리기름”	大泉源酒	따퀘웬주	대천원술
吉林长白山人参	지이린창바이산런선	길림장백산인삼	柳河山葡萄	류유허산푸토	유하산포도
通化山葡萄酒	통화산푸토주	통화산포도주	白城绿豆	바이청루이드우	백성녹두
吉林长白山天然矿泉水	지이린창바이산텐단광천수이	길림장백산천연광천수	白城油葵	바이청유쿠이	백성기름해바라기
吉林梅花鹿鹿茸、鹿尾、鹿胎膏、鹿鞭、鹿血、鹿筋、鹿脱盘	지이린머이화루루룽, 루위이, 루타이고, 루뱀, 루수에, 루지인, 루투어판	길림꽃사슴록용, 사슴꼬리, 룩태고, 룩뱀, 녹혈, 녹근, 룩탈반	长白山红景天	창바이산홍징텐	장백산홍경천
吉林梅花鹿茸等	지이린머이화루루룽등	길림꽃사슴노용등	长白山淫羊藿	창바이산인양후어	장백산음양호
大川平贝母	다츠와안평베무	대천평베무	集安板栗	지안판리	집안밤
露水河红松林籽仁	루수이허홍송무린즈린	로수이홍송무림자인	延边黄牛肉	엔뵐홍뉴러우	연변황소고기
白城燕麦	바이청에인마이	백성연맥	集安鸭绿江咸鸭蛋	지안아루장싼아디안	집안압록강절근오리알
长白山淫羊藿	창바이산인양후어	장백산음양호	乾安黄小米	첸안황쇼미	천안좁쌀
扶余四粒红	푸위스리이홍	부여사릴홍	姜家店大米	자양자대인따미	강가점입쌀
延边大米	엔뵐따미	연변입쌀	黄松甸黑木耳	황송땡허이무얼	황송전검정귀버섯
延边苹果梨	엔뵐핑귀리	연변사과배			
국가공상관리국					
长白山人参	창바이산런선	장백산인삼	扶余四粒红花生	푸위스리이홍화성	부여사릴홍땅콩
榆树大米	위수따미	유수입쌀	梅河口大米	머이허코우따미	매하구입쌀
九台饮马河大米	쥬타이인마허따미	구태음마하입쌀	集安边条参	지안베인토선	집안변조삼
双阳梅花鹿	쇠양양머이화루	쌍양꽃사슴	集安贡米	지안공미	집안공미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洮南黑水西瓜	톈난허이수이시과	토남흑수수박	集安板栗	지안바안리	집안밤
洮南万宝粉丝	톈난완보펀스	토남만보간분국수	集安山葡萄	지안산푸토	집안산포도
白城绿豆	바이청루이더우	백성녹두	舒兰大米	수란따미	서란입쌀
前郭尔罗斯大米	첸괵얼루어스따미	전괵을라스입쌀	东丰梅花鹿	둥펑메이화루	동풍꽃사슴
扶余老醋	푸이로우추	부여노초	延边苹果梨	옌뱌펑귀리	연변사과배
乾安黄小米	첸안황쇼미	첸안좁쌀	抚松人参	푸송런신	무송인삼

농업부

靖宇林下参	Jingyu linxiashen	정우림하 삼	集安五味子	Ji'an wuweizi	집안 오미자
洮南绿豆	Taonan lvdou	도남 녹색 콩	洮南辣椒	Taonan lajiao	도남 고추
新开河贡米	Xinkaihe gongmi	신개하 쌀	集安山葡萄	Ji'an shan putao	집안산 포도
集安边条参	Ji'an biantiaoshen	집안변조 삼	万昌大米	Wanchang dami	만창 백미

흑룡강성

국가검사검역국

中国北极蓝莓	쯔옹구어버이지란미	중국북극부르베리	五常大米	우창따미	오상입쌀
方正大米	파양정따미	방정입쌀	五营黑木耳	우잉허이무얼	오영검정귀버섯
铁力“中国林蛙”油	테이리쯔옹구어린와유	철력중국림와기름	五营红松籽	우잉홍송즈	오영잣
铁力平贝母	테이리핑베무	철력핑베무	五营木都柿果酒	우잉무두스구어쥬	오영목도감과주
红星蕨菜	홍싱즈외차이	홍성고사리	响水大米	상수이따미	상수입쌀
红星平贝母	홍싱핑베무	홍성핑베무	玉泉酒	위체인쥬	옥천주
富裕老窖酒	푸우이로조이쥬	부유술	珍宝岛大米	진보도따미	진보도입쌀
建三江大米	제인산장따미	건삼강입쌀	五大连池矿泉水	우다아렌츠광쥬스이	오대련지광천수
泰来大米	타이라이따미	태래입쌀	抚远大马哈鱼子	푸우웬따마하우이즈	무원송어
板子房西瓜	반즈팡시과	반자방수박	抚远黑龙江鲟鲤鱼子	푸우웬하이퉁장쥬왕이즈	무원흑룡강순황어
宝清大板南瓜籽	보청대바이반판과즈	보청대백판호박씨	讷河马铃薯	나허마링수	나하감자
宝清红小豆	보청홍소두어	보청홍소두	饶河东北黑蜂	로허둥베이허이핑	로허동북흑봉
梅里斯洋葱	메리시양충	메리시양과	泰来大米	타이라이따미	태래입쌀
挠力河毛葱	로이리허모충	로리하쥬과	铁力北五味子	테이리베이 위이즈	철력오미자
讷河马铃薯	나허마링수	나하감자	中国北极蓝莓	쯔옹구어버이지란미	중국북극부르베리
饶河东北黑蜂系列产品(蜂蜜、蜂胶、花粉、蜂王浆)	로허둥베이허이핑시레찬핀(피엥미, 피엥요, 화이핀, 피엥장)	로허동북흑봉계열제품(꿀, 봉고, 화분, 봉왕장)	北大仓酒	베이따창쥬	북대창주
孙吴大果沙棘	순우따구어사지	순오대과사지			

국가공상관리국

五常大米	우창따미	오상입쌀	兰西亚麻	란시아마	란시아마
方正大米	팡정따미	방정입쌀	庆安大米	칭안따미	경안입쌀
巴彦大豆	빠인따드우	바연대두	穆稜晒烟	무렁시아엔	무릉입단배
尚志红树莓	상즈홍수머이	상지홍수딸기			

농업부

兰西香瓜	Lanxi xianggua	란서 참외	巴彦猪肉	Bayan zhurou	바안 돼지고기
方正银鲫	Fangzheng yinji	방정 잉어	阿城大蒜	Acheng dasuan	아성 마늘
兰西西瓜	Lanxi xigua	란서 수박	呼兰大葱	Hulan dacong	호란 대파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五大连池鲤鱼	Wudalianchi liyu	오대연지 잉어	嘉荫大豆	Jiayin dadou	가음 콩
拜泉芸豆	Baiquan yundou	배천 강낭콩	巴彦玉米	Bayan yumi	파안 옥수수
富锦大豆	Fujin dadou	복금 콩	克山马铃薯	Keshan malingshu	극산 감지
兰岗西瓜	Langang xigua	란강 사과	呼兰韭菜	Hulan jiucai	호란 부추
伊春黑木耳	Yichun heimu'er	이춘 목이버섯	嘉荫水稻	Jiayin shuidao	가인 논 벼
伊春榛蘑	Yichun zhenmo	이춘 개암나무 버섯	古龙小米	Gulong xiaomi	고룡 좁쌀
肇源大米	Zhaoyuan dami	조원 백미	尚志黑木耳	Shangzhi heimu'er	상지 목이버섯
延寿大米	Yanshou dami	연수 백미	兰西亚麻	Lanxi yama	란시아 마
穆稜晒烟	Muleng shaiyan	목릉 담배	抚远大马哈鱼	Fuyuan damahayu	무원 연어
伊春红松籽	Yichun hongsongzi	이춘 잣나무	抚远鲤鱼	Fuyuan huangyu	무원 황어
梅里斯油豆角	Meilisi youdoujiao	매리사유 강낭콩	抚远鲤鱼	Fuyuan liyu	무원 잉어
巴彦大豆	Bayan dadou	파안 콩	抚远鲟鱼	Fuyuan xunyu	무원 칠갑상어
嘉荫木耳	Jiayin mu'er	가음 목이버섯	一面坡酒花	Yimianpo jiuhoa	일면파주 화
阿城大米	Acheng dami	아성 백미	依安芸豆	Nong'an yundou	의안 강낭콩
兰西香瓜	Lanxi xigua	란서 참외	亚布力晒烟	Yabulixi yan	아부력 연초
方正银鲫	Fangzheng yinji	방정 잉어	呼玛黑木耳	Huma heimu'er	호마 목이버섯
兰西西瓜	Lanxi xigua	란서 수박	海林猴头菇	Hailin houtougu	해림호두 버섯
五大连池鲤鱼	Wudalianchi liyu	오대연지 잉어	穆稜大豆	Moleng dadou	목릉 콩
拜泉芸豆	Baiquan yundou	배천 강낭콩	扎龙鲫鱼	Zhalong jiyu	찰용 병우
抚远鳌花鱼	Fuyuan aohua yu	무원오 화어	阿城粘玉米	Acheng nianyum	아성점 옥수수
抚远哲罗鱼	Fuyuan zheluo yu	무원오라 어	梧桐河大米	Wutonghe dami	오동하 백미
海林黑木耳	Hailin heimu'er	해림 목이버섯	尚志红树莓	Shangzhi hongshumei	상지 딸기
托古小米	Tuogu xiaomi	탁고 좁쌀			

상해

국가검사검역국					
奉贤黄桃	평샌황토오	봉현노란복숭아	上海卷烟	상하이즈웨이엔	상해담배
练塘茭白	랜탕조바이	연당교백	上海奶糖	상하이나이탕	상해우유사탕
崇明老白酒	충밍로바이쥬	충밍노백주	上海营养型黄酒	상하이영양싱황주	상해영양형황주
崇明老毛蟹	충밍로모세	충밍노털게	中华卷烟	중화젠엔	중화담배
南汇水蜜桃	난후이수이미틀	남회물꿀복숭아	仓桥水晶梨	창즈요수우이정리	창교수정배

국가공상관리국					
崇明香酥芋	충밍샤양수위	충밍향수우	崇明白山羊	충밍바이산양	충밍백산양
崇明白扁豆	충밍바이벤두우	충밍백편두	崇明老毛蟹	충밍로모모세	충밍노털게
崇明金瓜	충밍지인과	충밍금박	嘉定竹刻	자아딩주커	가정죽극
崇明水仙	충밍수이셴	충밍수선			

농업부					
崇明白山羊	Chongming baishanyang	숭양백 산양	枫泾猪	Fengjing zhu	풍경 돼지

강소성

국가검사검역국					
雨花茶	위화차	우꽃차	吕四海蜃	뤼쓰하이저어	여사해칩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阜宁大糕	뿌닝따고	부녕떡	南京盐水鸭	난징앤췌이아	남경염수오리
阳澄湖大闸蟹	양딩후따자세	양징호대게	南通麻虾酱	난통마싸짱	남통마새우장
邳州白蒜	페저우바이완	배주마늘	苏绣	쑤쑤우	소주산 자수
镇江香(陈)醋	진자양샤양추	진강향초	苏州绸缎	쑤저우처우판	소주비단
固城湖螃蟹	구우청후팡세	고성호게	苏州腐干、腐乳	쑤저우떠우판 푸루루	소주마른두부, 삭힌 두부
东海(老)淮猪肉	둥하이화이주러우	둥해웨이지고기	苏州糕团	쑤저우꼬우탄	소주떡단
洞庭(山)碧螺春茶	둥팅빠우이춘차	둥정피라춘차	苏州糖果	쑤저우탕귀	소주사탕
高邮鸭蛋	고우유아다안	고유오리알	苏州西山板栗	쑤저우씨싼판리	소주서서산밤
东海大米	둥하이따미	둥해입쌀	苏州西山枇杷	쑤저우씨싼피과	소주서산비과
东海水晶	둥하이수이징	둥해수정	苏州西山杨梅	쑤저우씨싼양메이	소주서산양매
南通长江豚(肴)	난통차강허트윈(양식)	남통장강허튼(양식)	苏州西山银杏	쑤저우씨싼인썩	소주서산은행
扬州漆器	야양즈어치치이	양주칠기	太湖莼菜	타이후푼차이	태호순채
云锦	위인지인	운금	太湖翠竹茶	타이후취이주차	태호취죽차
宝应荷藕	보잉허어우	보응하우	太湖大闸蟹	타이후따자세	태호대갑게
汤沟白酒	탕구어바이쑤	탕구백주	太湖冻银鱼	타이후푼인위	태호언어
滨海白首乌	빈하이바이서우	빈해백수우	太湖河鳊	타이후허만	태호백장어
河横大米	허형따미	하형입쌀	太湖蟹	타이후췌	태호게
射阳大米	서양따미	서양입쌀	无锡白厂丝	우씨빠이창쓰	무석백창사
泰兴白果	타이싱바이귀	태흥백과	吴江丝绸	우장쓰처우	오강비단
兴化红皮小麦	싱화홍피소우미이	흥화홍피소맥	锡山黄酒	씨산황주우	석산황주
兴化大米	싱화따미	흥화입쌀	盐城龙虾	앤청룽샤	염성바닷가재
兴化香葱	싱화샤양충	흥화향과	阳澄湖大闸蟹	양청후따자세	양징호대갑게
东台发绣	둥타이파스우	둥태발수	阳山水蜜桃	양싼췌이미토우	양산복숭아
云锦	위인지인	운금	洋河大曲	양허따취이	양하대곡
狼山鸡	라양산지이	랑산계	洋马菊花	양마취화	양마국화
双沟酒	스우양그어우쑤	쌍구술	宜兴紫砂陶	이썩즈싸토우	의성자사도
洪泽大闸蟹	홍저따자세	홍택대게	海门山羊肉	하이먼싼양러우	해문산양고기
邳州银杏	페어이즈어우인싱	비주은행	吕四海蜃	뤼쓰하이저	여사해파리
阜宁大糕	푸닝따고우	부녕큰떡	镇湖苏绣(重新公示)	췌후즈췌(충원공쓰)	진호자수
狼山鸡	랑산지	랑산닭	镇湖苏绣	췌후수우쑤우	진호소주자수
覃斗芒果	탄더우망귀어	단두망고	常州溧水天目湖	창저우리수수이태무	상주율수천목호생선
盱眙龙虾	쑤이룽샤	우이바닷가재	砂锅鱼头	후씨귀위터우	대가리뚝배기
盱眙龙虾	쑤이룽샤	우이바닷가재	大丰龙虾	따평룽샤	대풍바닷가재
국가공상관리국					
南京云锦	난징윈진	남경운금	镇江陈醋	진장천추	진강진초
南京云锦	난징윈진	남경운금	阳山	양산	양산
南京云锦	난징윈진	남경운금	宜兴紫砂	이싱즈사	의흥자사
邳州大蒜	페저우다완	배주마늘	宜兴百合	이싱바이허	의흥백
东台西瓜	둥타이시과	둥태수박	甘露	간루	단이슬
射阳大米	서양따미	서양쌀	江阴河豚	장인허튼	강음복어
阜宁大米	부녕따미	부녕쌀	洞庭山碧螺春	둥팅산비뤄춘	둥정산비뤄춘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滨海白首乌	빈하이바이서우우	빈해백수우	巴城阳澄湖	바청양청후	바성양징호
建湖大米	젠후다미	건호쌀	镇湖苏绣	진후수슈	진호소주자수
建湖烟花	젠후옌화	건호폭죽	凤凰水蜜桃	펑황수이미틀	봉황물꿀복숭아
东台蚕茧	둥타이찬쑤	둥태누에고치	金坛雀舌	진탄첸서	금단작실
盱眙龙虾	쉬이룽샤	쉬이랍스터	溧阳白芹	리양바이친	율양훤미나리
淮安大米	화이안다미	회안쌀	焦溪舜溪猪肉	쵸우시순시주러우	교희순희돼지고기
淮安大米	화이안다미	회안쌀	焦溪舜山二花脸猪	쵸우시순산얼화렌주	교희순산가자화얌돼지
金湖大米	진후다미	금호쌀	阳湖水蜜桃	양후수이미틀	양호물꿀복숭아
淮安红椒	화이안홍쵸	회안쌀	兴化大闸蟹	싱화다자세	흥화큰게
高邮鸭蛋	고유야단	고우오리알	兴化面粉	싱화몐편	흥화밀가루
宝应荷藕	보잉허어우	보응연뿌리	兴化香葱	싱화상쑤	흥화파
泰兴白果	타이싱바이귀	태흥은행나무열매	镇江香醋	진장상추	진강향식초
兴化大米	싱화다미	흥화쌀	镇江陈醋	진장첸추	진강진초
兴化大青虾	싱화다청샤	흥화큰청새우			

농업부

兴化大闸蟹	Xinghua dazhaxie	흥화대갑 게	裕华大蒜	Yuhua dasuan	유화 마늘
金山翠芽	Jinshan cuiya	금산 취아 차	沙塘韭黄	Shatang jiuhuang	사탕 부추
兴化大青虾	Xinghua daqingxia	흥화 청 두꺼비	阳菱雪芽	Yangqian xueya	양선 설아 차
沛县狗肉	Peixian gourou	패현 개고기	天目湖白茶	Tianmuhu baicha	천목호 배추
宝应慈姑	Baoying cigu	보응 쇠귀나물	泗洪大米	Sihong dami	사홍 백미
南京盐水鸭	Nanjing yanshuiya	남경염수 오리	溧阳鸡	Liyang ji	율양 닭
邵伯菱	Shaobo ling	소백 마름	建昌红香芋	Jianchang hongxiangyu	건창홍향 토란
焦溪二花脸猪	Jiaoxi erhualian zhu	교계이화연 돼지	吴江香青菜	Wujiang xiangqingcai	오강향 나물
贾汪大洞山石榴	Jiawang dadongshan shiliu	고왕대동산 석류	滨海白何首乌	Binhai baiheshouwu	빈해백하 토우
仪征绿杨春茶	Yizheng lvyang chuncha	의징녹양춘 튀양춘 차			

절강성

국가검사검역국					
宁波蔺草编制品	닝버린초밴찌핀	닝파린초편제품	龙井茶	룽징차	룽징차
奉化水蜜桃	봉화궤미토	봉화복숭아	松阳茶	송양차	송양차
湖笔	후비	호필	瓯柑	어우간	온주 감
千岛湖鱼	첸도후위	첸도호어	常山胡柚	창싼후유우	상산호유
诸暨山下湖淡水珍珠及其首饰	주찌산샤후담웨이첸주 지치쑤우쓰	주찌산하담수진주 및악세서리	遂昌竹炭	쑤이창주탄	수창죽탄
四会沙糖桔	쓰훤이짜탕궤	사회사당궤	新昌花生(小京生)	쑤창화셩	신창펑퉁
长兴白果	창흥바이귀	창흥백과	庆元香菇	칭웬샹구우	경원표고버섯
淳安千岛玉叶茶	쑤안첸도위예차	쑤안첸도옥잎차	乌牛早茶	우뉴우쵸우차	오우아침차
嘉善黄酒	자산황주	가선황술	宁波金柑	닝부어쩐간	녕파금감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嘉兴粽子	자쑹쑹즈	가흥만두	严东矣五加皮酒	앤둥관우자피주우	엄둥관우가피주
开化龙顶茶	카이화룽땡차	개화룽정차	杭白菊	항항바이귀	항주백국화
奉化曲毫茶	봉화추이호차	봉화곡홀차	余姚杨梅	위야오양메이	여요양매
上林湖越窑青瓷	쌍림호웨쑤이칭즈	상림호윙요칭자기	塘栖枇杷	탕시피파	당서비파
德清(乌) 氈及其制品	더칭화빠지치쩌핀	덕칭화빠밋제품	绍兴酒	샤오싱쑤	소흥주
西湖莼菜	씨후춘차이	서호춘채소	黄岩蜜桔	황앤미귀	황암꿀귤
金华佛手	전화버씨우	김화불수	金华火腿	전화휘튀이	금화소시지
临安山核桃	림안산허토	림안산호두	萧山萝卜干	쑤산뤄뱌간	소산무말림
临安天目笋干	림안텐무쑤간	림안천목쑤순	建德苞茶	젠더보우차	건덕보차
磐安中药材	판안쑤요차이	반안쑤약제	萧山萝卜干	쑤산뤄뱌간	소산무말림
慈溪杨梅	츠씨양메이	자서베이배리	建德苞茶	젠더보우차	건덕보차
余姚杨梅	위요양메이	여요베이배리	云和黑木耳	윈허헤이무얼	운하목이버섯
仙居蜜梨	셴취미리	선주꿀배	衢州莹白瓷	취저우잉바이즈	구주영백자기
仙居杨梅	셴취양메이	선주양매	里叶白莲	리예바이렌	리엽백련
余姚榨菜	위요짜차이	여요겨자	惠明茶	회밍차	혜명차
萧山青梅及其制品	쑤산따칭메이지치쩌핀	소산대칭메실밋제품	龙泉青瓷	룽웬칭즈	룽첸칭자기
慈城年糕	츠칭넨코	자성찰떡	慈溪杨梅	츠씨양메이	자계양매
慈溪丝瓜络及其制品	츠씨쓰과뤄지치쩌핀	자서수세미의밋제품	天台乌药	텐타이우요우	천대오약
奉化芋艿头	봉화위나이터우	봉화타로헤드	天目山铁皮石斛	텐무싼테피쓰후	천목산철피석취
溪口千层饼	씨커우첸창뻥	서구첸층케이크	长兴吊瓜籽	창쑤뫼우과즈	창흥쫼해바라기
临海蜜桔	림해이미귀	림해림귤	温郁金	윈위쑤	온울금
洞头羊栖菜及其制品	뫼터우양서채소밋제품	南湖菱	난후링	남호룽	
平阳马蹄笋	핑양마티쑤	평양말굽쑤순	临海杨梅	림하이양메이	림해양매
三门青蟹	싼먼칭쑤이	삼문청꽃게	云和黑木耳	윈허헤이무얼	운하목이버섯
温州老酒	윈쑤우로쑤	온주술	杭州丝绸	항저우쓰저우	항주비단
志棠白莲	찌탕바이렌	지탕백련	三杯香茶	싼베이쑤차	세잔향차
江山白菇及其制品	쑤산빠이구지치쩌핀	강산백버섯밋제품	龙泉灵芝孢子粉	룽웬링즈쁘즈핀	룽첸영지포자분
江山绿牡丹茶	쑤산뤄무뫼차	강산록목단차	枫桥香榧	핑쑤쑤페이	핑쑤향비
绍兴腐乳	쑤오쑤부루	소흥발효두부	丁香杨梅	뫼오양메이	정오양매
开化黑木耳	카이화헤이무얼	개화흑목이버섯	三门青蟹	싼먼칭쑤	삼문청게
安吉辣味香笋	안지라웨이쑤쑤	안길라미향쑤순	象山白鹅	쑤싼바이어	상산백아
杜家杨梅	두자양메이	두가베이배리	海盐大头菜	하이엔따터우차이	해염양매쑤
凤桥水蜜桃	봉쑤쑤이미토	봉교복숭아	姚庄蘑菇	요쑤쑤머우구	요장버섯
嘉荷青鱼及其制品	자허칭위지치쩌핀	가허칭어밋제품	常山山茶油	창산산차유	상산산차기름
嘉善锦乡黄桃	자싼쑤쑤황토	가선쑤향황복숭아	德清早园笋	더칭쑤우원쑤	덕칭쑤원쑤
景宁泡笋	쑤닝포쑤	쑤닝포쑤순	龙游发糕	룽유과고우	룽유
开化苏庄山茶油	카이화쑤쑤산차유	개화소쑤산차기름	仙居鸡	셴취지	선거닭
兰溪小萝卜	란씨쑤우뤄버	란서작은무우	王店三园鸡	왕뫼싼웬지	왕뫼삼원닭
练市黄酒	런시황쑤	런시황주	开化杜仲茶	카이화두쑤차	개화두쑤차
临海蟠毫茶叶	림해이판호루차예	림해판호차일	临海杨梅	림하이양메이	림해양매
莫干山蜜饯	뫼간산미쑤	목간산밀유지	南湖菱	난후링	남호룽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南麂岛大黄鱼	난지도따황위	남지도대황어	玉环柚	위환유	옥환유
平湖西瓜	핑후씨과	핑호수박	磐安香菇	판안쌍구	반안표고 버섯
衢州椪柑	취이쩌우핑간	취이주감귤류의	新市羊肉	싰씨양러우	싰씨양고기
衢州竹炭	취이쩌우주탄	취이주죽탄	羊岩勾青茶叶	양옌꺼우칭차예	양옌구칭차잎
瑞安擒雕炼乳	웨이안친토포랜루	서안친조연유	杨庙雪菜	양묘쉐차이	양묘설채
山下湖淡水珍珠	산샤후판웨이쩨주	삼하호담수진주및	宁波大红鹰卷烟	닝버따홍잉웬옌	닝파대홍잉담배
及珍珠饰品	지치쓰핀	진주약세서리			
绍兴麻鸭	쏘쎡마야	소흥마오리	宁波五一卷烟	닝버우이웬옌	닝파오일담배
乌镇酱禽类制品	우쩨쎡루친레이쩌핀	오진장로조류제품	邱隘雪菜及其制品	츄아이웨이차이지쩌핀	추애설채및제품
斜桥榨菜	셰이쵸짜채이	크로스교겨자	樟村浙贝	짱춘저베이	장춘절껍질
新市赤炼胎蛇	싰씨즈랜타이써	싰시적련태뱀	开化黄金茶	카이화황찐차	개화황금차
嘉善蘑菇	자싼머구	가선버섯			
국가공상관리국					
开化龙顶	카이화룽뎡	개화룽정	常山胡柚	창산후유우	상산자몽
龙游小辣椒	룽유쇼라쵸	룽유작은고추	志棠白莲	쯔탕빠이렌	지당백련

안휘성

국가검사검역국					
黄山毛峰茶	황산모핑차	황산모봉차	黄岗柳编	황강류뎨	황강류편
太平猴魁茶	타이핑허우궈이차	태평허우궈이차	漫水河百合	만궈이허빠이허	만강화백합
五城茶干	우칭차간	오성차간	安庆胡玉美蚕豆辣酱	안칭후유우미이친떠우라짱	안경호독미잠두고추장
霍邱柳编	훠쵸류뎨	곽구류뎨	古井贡酒	구징공쥬	고정공술
八公山豆腐	빠공싼떠우푸	팔공산두부	古井酒	구징쥬	고정술
凤丹	핑단	봉단	黄山毛峰	황산모핑	황산모봉
滁菊	추궈	국화	金种子酒	찐쥬즈쥬	금종자술
砀山酥梨	탕산쑤리	당산배	祁门红茶	치먼홍차	기문홍차
符离集烧鸡	푸리쵸쵸지	부리길통닭구이	太平猴魁茶	타이핑허우궈이차	태평허우궈이차
黄山贡菊 (徽州贡菊)	황산공쥬궈이쩌우공궈	황산국화	棠溪宝剑	탕씨보뎨	당시보검
霍山黄芽茶	훠산황야차	곽산황야차	六安瓜片	러우안과편	육안과편
霍山石斛	훠산쓰후	곽산석회	涡阳苔干	웨이양타이간	외양선태간
口子窖酒	커우쯔쵸쥬	구자교술	石臼湖螃蟹	쓰쥬후팡셰	석구호게
宁国山核桃	닝궈싼허토포	닝궈히코리	铜陵白姜	통링빠이짱	동릉백강
宣纸	쎨쯔	선지	沱湖螃蟹	토후팡셰	튀호게
迎驾贡酒	잉허공쥬	영가공술	亳白芍	버바이쏘	버백소
石臼湖螃蟹	쓰쥬후팡셰	석구호게	长丰草莓	창퐁초메이	장퐁딸기
灵璧石	링빠쓰	링벽석	怀远石榴	화이웬쓰류	회원석류
天柱山瓜篓籽	텐쥬싼파러우쯔	천주산과일씨	铜陵白姜	통링빠이짱	동릉백강
怀远石榴	화이웬쓰류	회원석류	古井贡酒	구징공쥬	고정공술
국가공상관리국					
皖南土鸡	완난투지	완남토닭	岳西翠兰	웨씨취이란	약서취란초
长丰草莓	창퐁초메이	장퐁딸기	太平猴魁	타이핑허우궈이	태평허우궈이
南陵大米	난링따미	남릉쌀	怀远石榴	화이웬쓰류	회원석류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六安瓜片	류안과편	육안과편	明光绿豆	밍광뤄더우	명광록두
六安瓜片	류안과편	육안과편	砀山酥梨	탕싼쑤리	당산배
霍山黄芽	훙싼황야	곽산황야	东至云尖	둥쯔윈젠	둥지운건
皖西	완씨	환씨	宁国山核桃	닝궈싼허토	닝궈희코리
舒城小兰花	쑤칭쑤란화	서성소란화	太和香椿	타이하쑤첸	태하향춘
桐城水芹	통칭쑤이친	통성미나리			

농업부

宁前胡	Ningqianhu	우전 수염	涌溪火青	Yongxi huqing	용계화청
金山时雨	Jinshanshiyu	금산시우	绩溪燕笋干	Jixi yansungan	적계연 줄기
绩溪燕笋干	Jixi yansungan	적계연 말린 죽순	绩溪山核桃	Jixi shanhetao	적계 산 복숭아
绩溪山核桃	Jixi shanhetao	적계연 호두	涌溪火青	Yongxi huqing	용계화 채
石台香芽	Shitai xiangya	석대 향초			

복건성

국가검사검역국

河龙贡米	허룽공미	하룽공쌀	度尾文旦柚	뚜웨이원단유우	도미문단유자
建莲	젠롄	건롄	建阳桔柚	젠양궈유우	건양감귤
莆田桂圆	푸토펬이웬	푸전	龙池砚	룽츠젠	룽지검
莆田枇杷	푸토펬피과	푸전비과	永安闽笋干	용안민순간	영안민숙간
浦城薏米	푸칭이미	포성일무	淮土茶油	화이투차유	회토차유
德化白瓷	더화바이츠	덕화백자기	长汀河田鸡	창뎡허탤지	장뎡하전닭
坦洋工夫红茶	탄양공푸홍차	단양공푸홍차	东山鲍鱼	둥산뱌위	둥산전복
安溪铁观音	안씨테판인	안서철관음	安溪铁观音	안씨테판인	안서철관음
福州茉莉花茶	부쩌우머리화차	복주채스민차	白芽奇兰茶	빠이야치란차	백야기란차
福州脱胎漆器	부쩌우퇴태치기	복주탈태칠기	长泰芦柑	창태루간	장태감귤
龙岩咸酥花生	룽옌쑤화생	용암쑤콩	东山白芦笋	둥산빠이루쑤	둥산백갈대순
闽笋干	민쑤간	민순간	鳄鱼屿蚝油	어위위이호유	악어굴소스
德化白瓷	더화바이츠	덕화백자기	鳄鱼屿蚝汁	어위위이호즈	악어굴호즙
建瓯锥栗	젠어우궈리	건구추밤	福鼎白茶	푸딩빠이차	복정백차
建瓯锥栗	젠어우궈리	건구추밤	福鼎白毫银针	푸딩빠이호인젠	복정백호은침
明溪肉脯干	밍씨러우푸간	명시육포간	福鼎白琳工夫	푸딩빠이린공푸	복정백림공푸
南日鲍鱼	난르뱌위이	남일전복	福鼎槟榔芋	푸딩뎡랑위	복정빈랑토란
平潭水仙花	핑탄쑤이쑤화	평담수선화	福鼎大白茶	푸딩따빠이차	복정대빠추
清流豆腐皮	칭류더우푸피	칭류두부피	福鼎绿茶	푸딩뤄차	복정록차
天宝香蕉	텐뽤쑤쑤	천보바나나	福鼎四季柚	푸딩쓰쩌유우	복정사계유자
天宝香蕉	텐뽤쑤쑤	천보바나나	福鼎太姥绿雪芽	푸딩시대로뤄쑤야	복정태로록설야
武夷岩茶	우이옌차	무이옌차	福建料酒	푸젠료쑤	복건조리용술
武夷岩茶	우이옌차	무이옌차	福州青红酒	푸저우칭홍쑤	복주칭홍술
永安莴苣	용안위궈	영안상추	复方片仔癀软膏	푸방판즈황판궈	복방편자황연궈
永春佛手	용춘푸쑤우	영춘불수	官井洋大黄鱼	관징양따황	관징양부세
永春芦柑	용춘루간	영춘감귤	踏溪蜜柚	판씨미유우	판서미유자
永春篾香	용춘메이향	영춘메이향	惠安余甘果系列产品	후이안위간궈우쑤레찬뎨	혜안여간궈일시리즈산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永泰李干	용타이리간	영태줄기간	连城白鸭	랜칭빠이야	런성백오리
尤溪金柑	룽씨찐간	룽서금갈	连城兰花	랜칭란화	런성란화
政和白茶	정허빠이차	정하백차	漳平水仙茶	장핑쉘쨌차	장핑수선화차
安砂淮山	안사화이산	안사회산	龙岩咸酥花生	룽옌쨌쑤화쑤	룽암땅콩
寿山石	쑤우산쓰	수산석	武平绿茶	우핑뤄차	무핑녹차
浮宫杨梅	푸궁양메이	부궁양매	连城白鸭	랜칭빠이야	런성백오리
浦城桂花	푸칭궈이화	부성궈화	连城白鸭	랜칭빠이야	런성백오리
度尾文旦柚	뚜웨이윈단유우	도미문단유자	武平金线莲	우핑찐쨌랜	무핑금선련
永春老醋	용춘로추	영춘식초	漳州芦柑	장저우루간	장주감갈
古田银耳	구토편인얼	고전훤목이버섯	图形	투쑤	도형
德化黑鸡	더화헤이지	덕화흑닭	漳州香蕉	장저우쑤쑤	장주바나나
云霄枇杷	윈쑤피과	운소비과	漳州水仙花	장저우쉘쨌화	장주수선화
连城红心地瓜干	랜칭홍띠파간	런성홍심고무마간	南靖兰花	난징란화	남징란화
福建乌龙茶	부첸우룽차	북진우룽차	平和暗溪蜜柚	핑허판씨미유우	핑허판서밀유
柘荣太子参	찌룽태즈쑤	자영태자삼	诏安红星	자오안홍성	조안홍성
尤溪绿竹笋	룽씨뤄주쑤	우계록죽순	度尾	뚜웨이	도미
福鼎白茶	부뎡빠이차	복뎡백차	莆田枇杷	푸토편피과	푸전비과
永安鸡爪椒	용안지과쑤	영안닭발고추	莆田兴化桂圆	푸토편쑤화궈이웬	푸토편궈궈웬
清流溪鱼	칭류씨위	칭류서어	南日鲍	난르뽀	남일전복
湖头米粉	후투우미번	호두쌀가루	建宁通心白莲	첸닝통쑤빠이랜	건녕통쑤백련
建阳桔柚	첸양궈유우	건양감갈	尤溪绿笋	유씨뤄쑤	우계록쑤
定海湾丁香鱼	뎡해이윈뎡쑤위	정해만정향어	明溪肉脯干	밍씨뤄우푸간	밍서육포간
武夷红茶	우이홍차	무이홍차	永安黄椒	용안황쑤	영안황고추
屏南老酒	뽕로쑤	병남로술	尤溪绿茶	유씨뤄차	우계록차
定海湾丁香鱼	뎡해이윈띠쑤위	정해만정향어			
농업부					
漳平水仙茶	Zhangping shuixiancha	장핑수선 차	福州福桔	Fuzhou fujū	복주 궈
青山龙眼	Qingshan longyan	청산 용안	宣和雪薯	Xuanhe xueshu	익화 고구마
永安黄椒	Yong'an huangjiao	용안 후추	福鼎槟榔芋	Fuding binglangyu	복토편 정빈낭 토란
顺昌芦柑	Shunchang lugan	순창 감갈	涂坊槟榔芋	Tufang binglangyu	도방 빈낭 토란
东壁龙眼	Dongbi longyan	동벽 용안	北苑贡茶	Beiyuan gongcha	북원 차
桐江鲈鱼	Tongjiang luyu	동강 농어	文亨红衣花生	Wenheng hongyi huasheng	문향홍의 땅콩
东山芦笋	Dongshan lusun	동산 갈대 순	霞浦榨菜	Xiapu zhacai	하포착 갓
明溪淮山	Mingxi huaihsan	명궈회산	金湖乌凤鸡	Jinhu wufengji	금호 오푹궈
福州茉莉花茶	Fuzhou molihuacha	복주 자스민 차	和溪巴戟天	Hexi bajitian	화궈파궈궈천
漳平水仙茶	Zhangping shuixiancha	장핑수선 차	福州橄榄	Fuzhou ganlan	복주 올리브
顺昌竹荪	Shunchang zhusun	순창 죽순	漳浦穿心莲	Zhangpu chuanxinlian	장포 천심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文亨红衣花生	Wenheng hongyi huasheng	문향홍의 땅콩	坂里龙柚	Banli longyou	반리용 유자
강서성					
국가검사지역국					
丰城冻米糖	풍청뚱미탕	풍성동쌀탕	瑞昌山药	루다웨이창산요우	서창산약
庐山云雾茶	루산윈우차	여산운무차	大余金边瑞香	다위진뱀퇴향	대여금변서향
军山湖大闸蟹	쥘산후따짜썬이	군산호대갑게	瑶里嫩蕊绿茶	요리넌뢰이뤄차	요리연술록차
高安腐竹	꼬안푸주	고안부죽	婺源荷包红鲤	우위안허보홍리	무원염낭홍리어
狗牯脑茶	꺼우구노차	고구노차	温汤矿泉水	윈탕광썬웨이	온탕광천수
广昌白莲	광창빠이렌	광창백련	大鄣山茶	다장산차	대장산차
南丰蜜桔	난풍미귀	남풍밀귤	东乡黑羽绿壳蛋鸡及其绿壳保健蛋	똥썬헤위뤄커땀지치뤄커뵤젠땀	동향흑우룩겍질닭알및룩겍질보진닭알
万年贡米	완넌공미	만년공쌀	丰城皮蛋	평청피땀	풍성송화단
寻乌蜜桔	쥘우미귀	심우밀귤	丰城田螺辣酱	평청텐뤄라장	풍성우평이고추장
赣南脐橙	간난치칭	간남배이블 오렌지	吉安天然冰片	지안텐란빙펜	길안천연얼음편
弋阳年糕	이양넉꼬	이양떡복이	建宁白莲	젠닝빠이렌	건닝백련
樟树吴茱萸	쥘수우주위	죽나무오수유	江西会昌米粉	장시회창미퓌	장서회창쌀가루
崇仁麻鸡	쥘런마지	송인닭	江西修水宁红茶系列产品	장시쥘웨이닝홍차썬레찬퓌	장서물수리닝홍차시리즈산퓌
广丰白耳黄鸡	광퓌빠이얼황치	광퓌백귀황닭	景德镇瓷器	징더진즈치	경덕진도자기
横峰葛	황퓌거	황봉걸	唐栀子	탕즈즈	당치자
金溪黄栀子	진시황즈즈	금계황치자	万载南酸枣糕	완짜이난완쥘꼬	만재남시대추떡
景德镇瓷器	징더진즈치	경덕진도자기	信丰脐橙	신평치칭	신평배이블 오렌지
南康甜柚	난강땀유	남강단유자	修水青钱柳神茶系列产品	쥘웨이칭꺄땀썬차썬레찬퓌	물수리칭땀유신차시리즈산퓌
商州枳壳	상저우즈쥘	상주탱자	瑶里绿茶	요리뤄차	요리록차
泰和乌鸡	타이허우지	창산검은닭	宜春野茶油	이춘예차유	이춘야차유
婺源绿茶(wu)	우위안뤄차	무원록차	永丰茶油	용퓌차유	영퓌차유
兴国灰鹅	싱꺄회어	흥꺄회아	靖安椪柑	징안퓌간	징안뵤꺄
余江夏天无	위장썬땀유	여강하천무	马家柚	마차유우	마가유자
국가공상관리국					
景德镇	징더진	경덕진	弋阳多穗石砾	이양뤄웨이썬러	이양다이스삭러
浮梁茶	퓌량차	부량차	婺源绿茶	우위안뤄차	무원록차
景德镇玲珑	징더진링룽	경덕진링룽	弋阳年糕	이양넉꼬	이양떡복이
景德镇粉彩	징더진퓌체이	경덕진퓌체	瑞昌山药	루다웨이창산요우	서창산약
景德镇青花	징더진칭화	경덕진칭화	庐山云雾茶	루산윈우차	여산운무차
景德镇色釉	징더진썬유	경덕진썬유약	西港化红	씨꺄꺄홍	서꺄꺄홍
南丰蜜桔	난퓌미귀	남퓌밀귤	宁都黄鸡	닝두황지	영도호닭
广昌白莲	광창빠이렌	광창백련	信丰脐橙	신평치칭	신평배이블 오렌지
崇仁麻鸡	쥘런마지	송인닭	赣南脐橙	간난치칭	간남배이블 오렌지
安福	안퓌	안복	南康甜柚	남강땀유	남강단유자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泰和乌鸡	타이허우지	태하검은닭	寻乌蜜桔	쑤우미취	심오밀귤
永丰	용평	광창	全南椪柑	취안난평간	전남뽕깡
万安玻璃红鲤鱼	완안버리홍리위	만안유리홍리어	万载百合	완짜이빠이허	만재백합
遂川金桔	쑤이촨쥘취	관현금귤	靖安白茶	징안백차	정안백차
永丰茶油	용평차유	광창차유	上栗花炮	상리화포	상률화포

농업부

井冈红米	Jingang hongmi	정강 붉은 쌀	德兴覆盆子	Dexing fupengzi	덕흥 복분자
萍乡红鲫	Pingxiang hongji	피향 홍 붕어	南城淮山	Nancheng huaishan	남성회산
军山湖大闸蟹	Junshanhu dazhaxie	군산호 뚝게	临川虎奶菇	Linchuan hunaigu	임천호내 버섯
瑞昌山药	Ruichang shanyao	서창 산약초	金溪蜜梨	Jinxi mitao	금계 수밀도
三湖红桔	Sanhu hongju	산호 홍귤	乐安竹笋	Anle zhusun	낙안 죽순
弋阳大禾谷	Yiyang dahegu	익양 좁쌀	铁山杨梅	Tieshan yangmei	철산 산 복숭아
德兴红花茶油	Dengxing honghua chayou	덕흥 홍화 차유	乐平花猪	Leping huazhu	락평 돼지
婺源绿茶	Wuyuan lvcha	우원 녹차	修水杭猪	Xiushui hangzhu	수수항 돼지
上饶白眉	Shangrao baimei	상요 백미 차	宁都黄鸡	Ningdu huangji	영도황 닭
吉安红毛鸭	Ji'an hongmaoya	길안 붉은 오리	兴国灰鹅	Xingguo hui'e	흥국회 거위
泰和乌鸡	Taihe wuji	태화 오골계	崇仁麻鸡	Chongren maji	종인마 닭
三清山白茶	Sanqingshan baicha	삼청산 백차	上饶山茶油	Shangrao shancha you	상요산차 기름

산동성

국가검사검역국

龙口粉丝	룽커우펀스	용구당면	泰山赤鳞鱼	타이산츠린위	태산적린어
丁马甲鱼	땡마자위	정마자라	无棣贝瓷	우디베이즈	신안패자기
烟台大樱桃	옌타이따잉도우	연태대앵두	无棣金丝小枣	우디쥘쓰쇼쵸	신안금사작은대추
鱼台大米	위타이따미	어태큰쌀	峄城石榴	이청쓰류	역성석류
烟台海参	옌타이하이션	연태해삼	莱州梭子蟹	라이저우쥘쵸쵸이	내주꽃게
陈集山药	첸지산요우	진길산약	莱阳梨	라이양리	내양배
烟台鲍鱼	옌타이보위	연태전복	平度牛肉	핑두뉴러우	평도소고기
潍县萝卜	웨이쥘러우버	외현무우	成武酱大头	청우짱따터우	사양장대두
茌平圆铃大枣	츠핑웬링따쵸	치핑웬링대추	诸城绿茶	주청뤄차	제성록차
冠县鸭梨	관쥘야리	관현배	店子长红枣	뎬즈창홍쵸우	점자장홍대추
崂山绿茶	라오산뤄차	노산록차	黄河口大闸蟹	황허커우따짜쵸이	황하구대게
乐陵金丝小枣	러링쥘쓰쇼쵸	악릉금사작은대추	蓬莱葡萄酒	펑라이푸도우쵸	봉래포도쵸
马家沟芹菜	마자구친채이	마가구미나리	新城细毛山药	신청씨모산요우	신성기느모발산약
平阴玫瑰	핑인메이웨이	핑음장미	周村烧饼	쵸우쥘쵸우빙	주쵸우쵸우빙
日照绿茶	르자오뤄차	일조록차	东阿阿胶	땡어어쵸	둥어아교
威海海带	웨이하이하이따이	위해다시마	菏泽牡丹	허쩌무뎨	하택목단
烟台苹果	옌타이펑궤우	연태사과	金乡大蒜	진쥘따쵘	금향대마늘
烟台葡萄酒	옌타이푸토쵸	연태포도쵸	莱芜大蒜	라이우따쵘	내무대마늘
沾化冬枣	잔화똥쵸우	안양겨울대추	莱芜花椒	라이우화쵸	내무후추
景芝神酿	징즈쥘냥	경지신냥	莱芜鸡腿葱	라이우지웨이쵸	내무닭다리파
威海海参	웨이하이하이션	위해해삼	莱芜生姜	라이우쥘장	내무생강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山亭火櫻桃	산팅훤잉토우	산정화앵두	萊蕪豬	라이우주	내무돼지
長沟葡萄	창커우푸토우	장구포도	龍口粉絲	룽커우펀스	룽구당면
扳倒井酒	반도우징주	반도정술	魯西黃牛	루씨황뉴	루서황소
平度大花生	핑뚜따화셩	핑도대땅콩	日照生絲	르자오셩쓰	일조생사
威海无花果	웨이하이우화궈우	위해무화구	榮成大花生	룽칭따화셩	영성대땅콩
蟠桃大姜	판도우따장	반도생강	山東小尾寒羊	산둥쇼웨이한양	산둥작은꼬리한양
胶河土豆	쥬허투도우	교하감자	泰安生絲	타이안셩쓰	태안생사
安丘大姜	안추따장	안구생강	張裕葡萄酒	장위푸토주	장위포도주
蒼山大蒜	창산따싼	창산대마늘	黃河口文蛤	황허커우윈하	황허구문하
昌邑絲綢	창이쓰치우	창읍비단	平邑金銀花	핑이쩐인화	핑읍금은화
大澤山葡萄	따저산푸토우	대저산포도	靑州蜜桃	칭주밀토우	칭주밀복숭아
공상계통					
章丘大葱	장추따층	장구대과	肥城	페이칭	비성
平阴玫瑰	핑인메이궈이	핑음장미	峯城石榴	이칭쓰류	역성석류
仁风西瓜	런펑씨과	인풍수박	山亭火櫻桃	산팅훤잉토우	산정화앵두
胶州大白菜	쥬저우따빠이채이	교주대배추	滕州馬鈴薯	텅저우마링수우	등주감자
嶗山茶	로산차	로산차	日照綠茶	르자오뤄차	일조록차
大澤山葡萄	따저산푸토우	대저산포도	金乡大蒜	쩐쑤따싼	금향대마늘
嶗山茶	로산차	로산차	汶上芦花鷄	윈상루화지	문상루화닭
萊陽梨	라이양리	라이양배	魚台大米	위타이따미	어대큰쌀
烟台大櫻桃	엔타이따잉토우	연태대앵두	蒼山大蒜	창산따싼	창산대마늘
烟台苹果	엔타이핑궈우	연태사과	鄒城銀杏	탄칭인셩	담성은행
萊州梭子蟹	라이저우쥬즈썸이	내주꽃게	平邑金銀花	핑이쩐인화	핑읍금은화
海阳白黃瓜	해양빠이황과	해양백오이	萊蕪生姜	라이우셩장	내무생강
萊州月季	라이저우웨이지	내주월계	萊蕪黑豬	라이우헤이주	내무흑돼지
長島鮑魚	창도뽀위	장도전복	樂陵小枣	러링쑤조우	악릉작은대추
長島海參	창도하이썸	장도해삼	德州西瓜	더저우씨과	덕주수박
長島扇貝	창도싼뻬이	장도가리비	高靑大米	꼬칭따미	고청큰쌀
長島海帶	창도하이따이	장도다시마	濰博陶瓷	쑤보토우즈	치박도자기
長島海胆	창도하이단	장도해담	博山琉璃	버산류리	박산유리
栖霞苹果	치사핑궈우	서하사과	池上桔梗	츠상궈경	지상도라지
萊州大粒盐	라이저우따리엔	래주대립염	張庄香椿	장궈쑤쑤춘	장궈향춘
榮成海帶	룽칭하이따이	영성다시마	沂源苹果	이위안핑궈우	기원사과
榮成大花生	룽칭따화셩	영성대땅콩	靑州銀瓜	칭저우인과	칭주은과
乳山牡蛎	루산무리	유산굴	昌邑大对蝦	창이따궈이싸	창읍대새우
威海刺參	웨이하이쯔썸	위해차삼	安丘大姜	안추따장	안구대생강
威海无花果	웨이하이우화궈우	위해무화구	靑州蜜桃	칭저우미토우	칭주밀복숭아
乳山大姜	루산따장	유산생강	莘县香瓜	썸현쑤과	썸현참외
陽信鴨梨	양신야리	양신배	莘县蘑菇	썸현머구우	썸현버섯
沾化冬枣	잔화둥조우	안양겨울대추			
농업부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沂源苹果	Yiyuan pingguo	이원 사과	泗水地瓜	Sishui digua	사수 더우스
沂源全蝎	Yiyuan quanxie	이원 전갈	马山栝楼	Mashan gualou	마산 하늘타리
柘山花生	Zheshan huasheng	자산 땅콩	桂河芹菜	Guihe qincai	규하 미나리
沂源黑山羊	Yiyuan heishanyang	이원 흑 산양	荣成苹果	Rongcheng pingguo	영성 사과
唐王大白菜	Tangwang dabaicai	탕왕 배추	荣成绿茶	Rongcheng lvcha	영성 녹차
莒南板栗	Junan banli	거남 양밤	苍山牛蒡	Cangshan niubang	창산 우엉
滕州大白菜	Tengzhou dabaicai	등주 배추	莒南绿茶	Junan lvcha	거남 녹차
莒南花生	Junan huasheng	거남 땅콩	张夏玉杏	Zhangxia yuxing	장하 살구
沂水绿茶	Yishui lvcha	기수 녹차	莱阳五龙鹅	Laiyang wulong'e	래양오용 거위
峄城石榴	Yicheng shiliu	역성석 석류	章丘大葱	Zhangqiu dacong	장구 대파
昌乐西瓜	Changle xigua	창락 수박	新村银杏	Xincun yinxing	신촌 녹색 살구
黄河口蜜桃	Huanghekou mitao	황하구 수밀도	福山大樱桃	Fushan dayingtao	복산 앵두
东明西瓜	Dongming xigua	동명 수박	蒙阴蜜桃	Mengyin mitao	몽음 수밀도
香城长红枣	Xiangcheng changhong zao	향성장 대추	寿光独根红韭菜	Shouguang dugen hongjiuca	수광독근 홍 부추
威海野生刺参	Weihai yesheng cishen	위해 돌기 해삼	平阴玫瑰红苹果	Pingyin meiguihong pingguo	평은 장미 사과
黄河口大闸蟹	Huanghekou dazhaxie	황하구대 뚝 게	滕州马铃薯	Tengzhou malingshu	등주 감자
苍山辣椒	Cangshan lajiao	창산 고추	鱼台龙虾	Yutai rongxia	어대 랍스터
山阳大梨	Shanyang dali	산양 배	鱼台甲鱼	Yutai jiaayu	어대 갑어
昌邑大姜	Changyi dajiang	창읍 생강	荣成鲍鱼	Rongcheng baoyu	영성 전복
沂蒙绿茶	Yimeng lvcha	기몽 녹차	荣成海参	Rongcheng haishen	용성 해삼
姜湖贡米	Jianghu gongmi	강호 쌀	马庙金谷	Mamiao jingu	마묘금옥
五莲杜鹃花	Wulian dujuanhua	우연두견 꽃	无棣黑牛	Wudi heiniu	우체 흑소
莱州烟台黑猪	Laizhou yantan heizhu	래주연대 흑돼지	荣成裙带菜	Rongcheng qundaicai	영성군 미역
张庄牛心柿	Zhangzhuang niuxinshi	장장소심 감	沾化	Zhanhua wadi	첨화와지 면 양
沾化白山羊	Zhanhua baishanyang	첨화백 산양	洼地绵羊	Wadi mianyang	일조동방대 새우
日照大竹蛭	Rizhao dazhucheng	일조 대나무맛조개	日照	Rizhao dongfang duixia	일조동방대 새우
日照西施舌	Rizhao xishishe	일조 서여 혀	东方对虾	Dongfang duixia	일조동방대 새우
日照金乌贼	Rizhao jinwuzei	일조금오재	无棣驴	Wudi lv	우체 나귀
胡集白梨瓜	Huji baili gua	호집백 배	仁风西瓜	Renfeng xigua	인풍 수박
荣成砂梨	Rongcheng shali	영성사 배	曲堤黄瓜	Qudi huanggua	곡제 오이
石埠子樱桃	Shifuzi yingtao	석부자 앵두	麻湾西瓜	Mawan xigua	마완 수박
荣成大樱桃	Rongcheng dayingtao	용성대 앵두	涛雒芹菜	Taolu qincai	도낙 미나리
			瓦屋香椿芽	Wawu xiangchunya	와우향 참죽나무
			瓦西黑皮冬瓜	Waxi heipi donggua	와서흑피冬瓜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安丘大葱	Anqiu dacong	안구 대파	鲁西黄牛	Luxi huangniu	노서 황소
黄河口大米	Huanghekou dami	황하구 백미	白云湖甲鱼	Baiyunhu jiyu	백운호 갑어
寿光文蛤	Shouguang wenge	수광 대합조개	宁阳大枣	Ningyang dazao	영양 대추
寿光益蝗	Shouguang yicheng	수광 가리맛조개	曹范核桃	Caofan hetao	조범 호두
老河口白蛤	Laohekou baige	노하구백 가리맛조개	明水白莲藕	Mingshui bai lian'ou	명수백 연근
鲍家芹菜	Baojia qincai	포가 미나리	乳山苹果	Rushan pingguo	유산 사과
文祖花椒	Wenzu huajiao	문조 산초	徐庄板栗	Xuzhuang banli	서장 밤
赵八洞香椿	Zhaobadong xiangchun	조팔동 참죽나무	文登大花生	Wendeng dahuasheng	문등대 땅콩
莱茺白花丹参	Laiwu baihua danshen	내무 흰꽃 단삼			
胶州湾蛤蜊	Jiaozhouwan geli	교주만 무명조개	姜格庄草莓	Jianggezhuang caomei	강격장 딸기
胶南绿茶	Jiaonan lvcha	교남 녹차	胶南蓝莓	Jiaonan lanmei	교남 블루베리
旧店苹果	Jiudian pingguo	구점 사과	祝沟小甜瓜	Zhugou xiaotiangua	축구소감 참외
大黄埠西瓜	Dahuangbu xigua	대황부 수박	大村香菇	Dacun xianggu	대촌 버섯
平度大花生	Pingdu da huasheng	평도대 땅콩	大村黑木耳	Dacun heimu'er	대촌 목이버섯
大泽山葡萄	Dazeshang putao	대택산 포도	仁兆圆葱	Renzhao yuancong	인조원 파
马家沟芹菜	Majia gou qincai	마가구 미나리	莱西大板栗	Laixi dabanli	래서 밤
蟠桃大姜	Pantao dajiang	판도 생강			

하남성

국가검사검역국					
原阳大米	위안양파미	원양큰쌀	延陵大葱	엔링따층	연릉대파
道口烧鸡	또커우쏘우지	도구구운닭	河阴石榴	허인쓰류	하음석류
怀地黄	화이띠황	회지황	宁陵白蜡杆	닝링백이라간	닝링백라간
怀菊花	화이취화	회국화	唐半夏	탕판샤	당반하
怀牛膝	화이뉴씨	회소무릎	西峡香菇	씨샤샹구	서협표고버섯
怀山药	화이산요우	회산약	张弓酒	장궁주	장궁술
济源冬凌草	지원동링초우	제원동릉초	宝丰酒	보평주	보평술
钧瓷	쥬츠	균도자기	汴绣	뵘쑤	변수
钧瓷	쥬츠	균도자기	大别山天香菜及其制品	대베이산토펙채이지치즈핀	대별산천향채및지제품
灵宝大枣	링보우따조우	링보대추	大别山银杏及其制品	대베이산인쟁지치즈핀	대별산은쟁및지제품
灵宝杜仲	링보뚜쥙	링보두층	封丘金银花	펑츄진인화	봉구금은화
卢氏黑木耳	루쓰헤이무얼	루씨목이버섯	伏牛山连翘及其制品	푸뉴산렌쵸지치즈핀	복우산렌쵸및지제품
卢氏鸡	루쓰지	루씨닭	固始鸡	꾸쓰지	고시닭
卢氏连翘	루쓰렌쵸	루씨런꼬리	固始鸡蛋	꾸쓰지판	고시닭알
汝瓷	루츠	여자기	光山麻鸭及光山麻鸭蛋	광산마야지광산마야판	광산마야및광산마야알
西峡山茱萸	씨싼산쑤위	서협산쑤나무	光山青虾	광산칭샤	광산칭새우
许昌腐竹	쉬창푸주	쉬창부죽	灵宝苹果	링보핑귀우	링보사과
偃师银条	옌스인토	연사은조	栾川白无籽柿及其制品	롄촨바이투우허씨치치즈핀	난천백토무핵시제품
潢川金桂	황촨진레이	황천금계	洛阳牡丹	뤄양무단	락양목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武陟大米	우즈현파미	무척현큰쌀	洛阳唐三彩	뤄양탕싼차이	락양당삼채
广武大葱	광우따층	광무대파	民权葡萄酒	민첸푸토주	민권포도주
正阳三黄鸡	정양싼황지	정양삼황닭	南湾湖鲈鱼	난완후버위	남만호백어
栾川参 (俗丹参)	팡청판션	방성단삼	南湾湖鲢鱼	난완후랜위	남만호연어
固始鸡	꾸쓰지	고시닭	南湾湖虾	난완후샤	남만호새우
淮阳黄花菜	화이양황화채이	회양황화채	南阳黄牛	난양황뉴우	남양황소
泌阳花菇	비양화구	필양꽃버섯	南阳玉器	난양위치	남양옥기
南召辛夷	난조신이	난조자목련	南召辛夷及其制品	난조신이지치썬	난조자목련지제품
平舆白芝麻	핑위빠이즈마	핑여백참깨	南召柘蚕茧 (柘 蚕 茧)	난조이화짜찬젠, 쓰, 처우	남조일화누에고치, 사, 비단
确山板栗	첸산판리	확산밤	宁陵金银花酒	녕링판헝화쥬리	녕링금정사화배
嵩县柴胡	쑹현차이후	송현시호	杞县大蒜	치현따싼	기현대마늘
桐桔梗	통귀경	동도라지	清凉寺汝瓷	칭량쓰루즈	칭량사여자기
西峡猕猴桃	씨샤미허우도우	서협키위	汝阳杜康系列白酒 (中华杜康酒、汝阳杜康酒、汝阳杜康大曲酒)	루양두강씨레빠이주	여양두강시리즈백주
仰韶酒	양사오쥬	양소술	商城茶油	쌍청차유	상성차유
禹白附	위빠이푸	우백부	商茯苓	쌍푸링	상부령
禹白芷	위빠이즈	우백지	商桔梗	쌍귀경	상도라지
禹南星	위난쎡	우남성	商天麻	쌍텐마	상천마
正阳花生	정양화쎡	정양땅콩	赊店老酒	쎡텐로쥬	사점로술
内黄大枣	네이황따쑤우	내황대추	通许花生	통취화쎡	통허땅콩
中牟大白蒜	중무따빠이쑤	중무대백마늘	息半夏	씨빠샤	휴반하
陈化店矿泉水	첸화뎨판쑤웨이	진화점광천수	息县香稻丸	씨쎡쑤양뎨완	휴현향도완
长葛蜂胶	창거풍쥬	장갈프로폴리스	项城芝麻及其制品	쑤청즈마지치썬	향성참깨지제품
长葛枣花蜜	창거쑤화미	장갈대추꽃꿀	新郑红枣	쎡정홍쑤우	신정홍대추
仰韶柿饼	양사오쓰뎡	양소곶감	信阳黑猪	신양헤이쥬	신양흑돼지
陈化店矿泉水	첸화뎨판쑤웨이	진화점광천수	信阳毛尖	신양모우젠	신양모건
河源米粉	허웬미펀	하원쌀당면	信阳紫云英种子	신양즈윈잉쑤즈	신양자운영종자
桐河鸭蛋	통허야뎨	동하오리알	伊川杜康酒	이첸뚜강쥬	이첸두강술
西峡六味地黄丸	씨샤류웨이띠황완	서협육미지황완	驻马店三香真调味品	쥬마뎨싼쑤청렌뎨웨이뎨	쥬마점삼향청진조미품
当阳峪绞胎瓷	뎨양구쑤테즈	뎨양곡교태자기	驻马店小磨香油	쥬마뎨쑤마머쑤유	쥬마점소마허유
국가공상관리국					
禹州钧瓷	위저우쥬즈	우주군도자기	吴坝大蒜	우베이따싼	오바대마늘
西峡香菇	씨샤쑤구	서협표고버섯	偃师银条	옌스인뎨	연사은조
桐柏桔梗	통버귀경	동백도라지			
농업부					
杞县大蒜	Qixian dasuan	기현 마늘	孟津梨	Mengjin li	맹진 배
漯河麻鸡	Luohe maji	나하마 닭	辉县山楂	Huixian shanzha	휘현산 아가위나무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开封菊花	Kaifeng juhua	개봉 국화	封丘芹菜	Fengqiu qincai	봉구 미나리
延津胡萝卜	Yanjn huluobo	연진 홍당무	西邵红杏	Xishao hongxing	서소 살구
开封西瓜	Kaifeng xigua	개봉 수박	寺郎腰大葱	Silangyao dacong	사랑록 대파
香花辣椒	Xianghua lajiao	향화 고추	登封芥菜	Dengfeng jiecai	등봉 갓
孟津西瓜	Mengjin xigua	맹진 수박	孟津葡萄	Mengjin putao	맹진 포도
安阳栝楼	Anyang gualou	안양 하늘타리	小相菊花	Xiaoxiang juhua	소상국화 꽃
荥阳柿子	Xingyang shizi	형양 감	清化姜	Qinghua jiang	청화 생강
崇礼红薯	Chongli hongshu	송예 고구마	伊川平菇	Yichuan pinggu	이천 버섯
固始萝卜	Gushi luobo	고시 무우	偃师银条	Yashi yintiao	연사은조
新郑莲藕	Xinzheng lian'ou	신정 연뿌리	凤泉薄荷	Fengquan bohe	풍천 박하
尖山金银花	Jianshan jinyinhua	첨산금은 화	邵店黄姜	Shaodian huangjiang	소점황 생강
无量寺高青萝卜	Wuliangsi gaoqing luobo	오량사고청 무우	郑州樱桃沟樱桃	Zhengzhou yingtaogou yingtiao	정주 영두
固始甲鱼	Gushi jiayu	고시 갑어			

호북성

국가검사검역국					
京山桥米	쥙산쵸미	경산교쌀	朱湖糯米	주후늬어미	주호찰입쌀
武当蜜桔	우당미귀	우당밀귤	肖港小香葱	쇼강쑤쑤충	쇼강소향파
房县黑木耳	팡허헤무이얼	방현목이버섯	太子米	타이즈미	태자쌀
丹江口翘嘴鲌	단장커우쵸웨이버	단강구쵸입백	英山云雾茶	잉산윈우차	영산운무차
板桥党参	판쵸당쑤	반교당삼	巴河莲藕	빠허런어우	바허런뿌리
邓村绿茶	뎡춘뤄차	등춘록차	黄梅青虾	황메이칭샤	황매청새우
恩施玉露	언쓰위루	은시옥루	麻城茶油	마청차유	마성차유
洪山菜薹	홍산채이타이	홍산장다리	贡水白柚	공웨이빠이유	공수백유
伍家台贡茶	우자타이공차	오가태공차	木子店老米酒 (东山老米酒、东木老米酒) (重新公示)	무즈뎬로미쥬	목자점로막걸리
黄州萝卜	황저우뤄버	황주무우	吉阳大蒜	지양따쑤	길양대마늘
来凤漆筷	라이퉁치콰이	래퉁치콰	赵李桥砖茶	쵸우리쵸쑤차	조리교전차
利川蕨菜	리훤쑤채이	리훤쑤채	富川山茶油	푸훤산차유	부훤산차유
利川黄连	리훤황련	리훤황련	云梦鱼面	윈뎡위몐	운뎡어몐
利川山药	리훤산요우	리훤산약	武当榔梅	우당랑메이	무당랑매
龙峰茶	룽펑차	룽봉차	木子店老米酒	무즈뎬로미쥬	목자점로막걸리
宜城板鸭	이칭판야	이성구운오리	蕲艾	치아이	기에
枝江酒	즈쑤쥬	지강술	蕲山叠翠茶	셰이산데쑤차	염교산점쑤차
秭归脐橙	쯔귀이치칭	차귀네이블 오렌지	黄梅挑花	황메이토헠화	황매복숭아꽃
金丝桐油	진쓰퉁유	금사동유	黄梅青虾	황메이칭샤	황매청새우
舒安藟头	쑤안쵸터우	서안염교	广济佛手山药	팡찌푸쑤우산요우	팡제불수산약
法泗大米	파쓰파미	범스큰쌀	女媧山绿松石	뉴와산뤄쑤쓰	여와산록쑤석
鄖阳木瓜	윈양무파	운양모과	石窑当归	쓰요뎡웨이	석요당귀
蔡甸莲藕	차이뎡런어우	채전연뿌리	黄梅青虾	황메이칭샤	황매청새우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恩施紫油厚朴	언쓰즈유후푸	은시자유후박나무	麻城茶油	마청차유	마성차유
巴东独活	빠둥두회	바동독활	竹山绿松石	주산뤼쑹쓰	죽산록송석
景阳鸡	징양지	경양닭	洪湖莲子	홍후렌즈	홍호련자
九资河茯苓	쥬즈허푸링	구자허부링	武当蜜桔	우당미귀	무당밀귤
来凤凤头姜	라이퉁퉁터우짱	래퉁퉁투생강	洪湖大闸蟹	홍후따허췌이	홍호대게
罗田板栗	뤄뎐뻬리	라전밤	竹山绿松石	주산뤼쑹쓰	죽산록송석
罗田甜柿	뤄뎐뎐쓰	라전단감	程河柳编	청허류뻬	정하류편
咸丰白术	셴퉁빠이쑤	현퉁백수	襄麦冬	쌍마이똥	항매동
襄阳大头菜	량양따터우채이	량양다두배추	金丝楠 (重新公示)	쥘쓰퉁유	금사동유
郧阳乌鸡	윈양우지	운양검은닭	武当银剑	우당인젠	무당은검
涨渡湖黄颡鱼	장두후황쌍위	장도호황상어	武当针井	우당전징	무당침정
红安苕	홍안쑤우	홍안고구마	梁子湖大河蟹	량즈후따허췌이	량자호대민물게
团风荸荠	똥퉁비치	똥퉁올방개	随州香菇	수이저우쌍구	수주표고버섯
蕲春珍米	치춘전미	기춘진쌀	窑湾蜜桔	요완미귀	요만밀귤
广济佛手山药	광찌퍼쑤우산요우	광제불수산약	金丝桐油	쥘쓰퉁유	금사동유
竹溪贡米	주씨공미	죽씨공쌀			
국가공상관리국					
鄂洪山茶苕	어홍산채타이	악홍산채태	连城红心地瓜干	런청홍쥘띠파	런성홍심고구마간
蔡甸莲藕	차이뎐랜어우	채진런뿌리	宁德大黄鱼	닝더따황위	닝덕부세
宜都蜜柑	이두미간	의도밀감	莆田龙眼	푸뎐퉁옌	보전용안
宜都天然富锌茶	이두뎐란푸신차	의도천연부신차	莆田枇杷	푸뎐피과	보전비과
秭归脐橙	찌구이치청	찌구이네이블 오렌지	沙西榕树盆景	샤씨룽쑤편징	사서용수분경
宜昌蜜桔	이창미귀	의창밀귤	天湖古酒	뎐후구쑤	천호고술
兴山薄壳核桃	셴산버커허토우	흥산얇은호두	桐口米粉干	퉁커우미편간	둥구쌀가루
百里洲砂梨	빠이리저우사리	백리주배	武夷山正山小种红茶	우이싼쥘싼쑤쑤홍차	무이산정산소쑤홍차
孝感米酒	쑤간미쑤	효감막걸리	仙游度尾文旦柚	셴유똥위이윈뎐유우	션유도미문단유자
大悟绿茶	따우뤄차	대오록차	兴化桂元	셴화궈이웨이엔	흥화계윈
庙头黄花	묘터우황화	묘두황화	永春老醋	영춘로쑤	영춘식초
恩施富硒茶	언쓰푸시차	은시부시차	漳港海味	장강하이뻬	장강조개
鄂州武昌鱼	어저우우창위	악주무창어	漳州片仔癀系列药品 (片仔癀和片仔癀囊)	장쥬우판쯔황씨레요핀	장강편자황씨리즈약품
鄂州武昌鱼	어저우우창위	악주무창어	漳州水仙花	장쥬우췌이췌화	장주수선화
鄂州武昌鱼	어저우우창위	악주무창어	诏安红星青梅 (青果/干湿梅)	쑤안홍셴칭메이	소안홍셴칭매
京山桥米	징산쑤미	경산교쌀	紫泥金定鸭及鸭蛋	찌니진뎐야지야뎐	차니금정오리및오리알
京山米	징산미	경산쌀	房县香菇	방현쌍구	방현표고버섯
房县黑木耳	방현헤이무얼	방현목이버섯	麻城福白菊	마청푸빠이귀	마성복백국화
蕲春珍米	치춘전미	기춘진쌀	蕲春珍米	치춘전미	기춘진쌀
공상계통					
永泰芙蓉李	영태이푸룽리	영태부용자두	福鼎四季柚	푸딩쓰찌유	복정사계유자
福州茉莉花茶	푸쥬우머리화차	복주채스민차	福鼎芋	푸딩위	복정토란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永泰柿饼	융타이쓰뽕	영태곶감	福鼎槟榔芋	푸딩뽕랑위	복정빈랑토란
福州橄榄	푸쩌우간란	복주올리브	福鼎大白茶	푸딩따바이차	복정대백차
安溪铁观音	안시테관인	안서철관음	福鼎白毫银针	푸딩빠이호인쩐	복정백호은침
安溪黄金桂	안시황진궤이	안서황금계	福鼎白琳工夫	푸딩빠이린공푸	복정백림공푸
永春芦柑	융춘후간	영춘감귤	福鼎白茶	푸딩빠이차	복정백차
永春佛手	융춘피썬우	영춘불수	坦洋工夫	탄양공푸	단양공푸
德化陶瓷	더화토즈	덕화도자기	坦洋工夫	탄양공푸	단양공푸
德化瓷雕	더화즈토투우	덕화자기조	蕉城晚熟龙眼	쵸청완쑤룽옌	초청만숙용안
德化戴云黑鸡	더화다이윈헤이야	덕화대운흑닭	霞浦海带	샤푸하이파이	하포다시마
永春闽南水仙	융춘민난취이셴	영춘민남수선	霞浦紫菜	샤푸쯔차이	하포김
武夷山大红袍	우이산따홍포우	무이산대홍포	天山绿茶	텐싼뤄차	천산록차
政和工夫	쩡허공푸	정하공푸	三都澳晚熟荔枝	싼두오우원쑤리쯔	싼두아오만숙려지
政和白茶	쩡허빠이차	정하백차	建瓯锥栗	쩐어우쨤이리	건구추밤
松溪绿茶	송씨뤄차	송서록차	柘荣太子参	쩌룽타이즈썬	자영태자삼
正山小种	쩡산쑤쵡	정산소종	古田银耳	구텐인얼	고전흰목이버섯
邵武碎铜茶	쇼우쑤이통차	소무쑤동차	古田油奈	구텐유나이	고전유나이
政和工夫	쩡허공푸	정하공푸	黄田马蹄笋	황텐마티썬	황전말굽순
政和白茶	쩡허빠이차	정하백차			

농업부

芝蔴湖藕	Zhima huou	지마호 연뿌리	伍家台贡茶	Wujiatai gongcha	오가대 차
关口葡萄	Guankou putao	관구 포도	房县香菇	Fangxian xianggu	방현 표고버섯
圣水绿茶	Shenshui lvcha	성수 녹차	麻城福白菊	Macheng fubaiju	마성북 청포도
散花藜蒿	Sanhua lihao	산화 명나물	平林镇大米	Pinglinzhen dami	평림진 백미
安陆白花菜	Anlu baihuacai	안육 양각채	鹤峰茶	Hefeng cha	학봉 차
潜江龙虾	Tijiang longxia	체강 랍스터	宜都蜜柑	Yidu migan	익도 단감
洪山鸡	Hongshan ji	홍산 닭	房县黑木耳	Fangxian heimu'er	방현 목이버섯
走马葛仙米	Zouma gexianmi	주마갈선 쌀	崑山脐橙	Langshan qicheng	량산 오렌지
瓦仓大米	Wacang dami	와창 백미	江永香芋	Jiangyong xiangyu	강영 토란
华容芥菜	Huarong jiecai	화용 갓	双井西瓜	Shuangjing xigua	상정 수박
四井岗油桃	Sijinggang youtao	사정강 복숭아	瓦仓大米	Wacang dami	와창 백미
沼山胡柚	Zhaoshan huyou	조산 수염 유자	屈乡丝绵茶	Quxiang simian cha	궤향사면 차
江永香姜	Jiangyong xiangjiang	강영향 생강	武穴佛手山药	Wuxuefoshou shanyao	무공불수산 약
广水胭脂红鲜桃	Guangshui yanzhi hong xiantao	광수연지 복숭아	秭归桃叶橙	Zigui taoyecheng	자귀 복숭아잎 오렌지
郧西马头山羊	Yunxi matoushanyang	윤서마두 산양			

호남성

국가검사검역국

新晃黄牛肉	신황황뉴러우	신황황소고기	安化黑茶	안화헤이차	안화흑차
醴陵瓷器	리링토우치	예릉도자기	安化黑茶	안화헤이차	안화흑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浏阳花炮	류양화포우	류양꽃폭죽	澧县葡萄	리셴포도우	레현포도
永丰辣酱	영펑우라이장	영봉고추장	汉寿甲鱼	한쑤우짜위	한수현갑어
古丈毛尖	꾸장모우젠	고장모침	碣滩茶	제이탄차	갈탄차
酒鬼酒	쨌우꾸위쨌우	술귀신술	安化黑茶	안화헤이차	안화흑차
隆回金银花	룽회이쩐인화	룽회금은화	保靖紫砂陶	바오징쓰사도우	보정현자사도기
隆回龙牙百合	룽회이룽야바이허	룽회룡야백합	洞口雪峰蜜柑	둥커우쉐우퐁미간	둥구설봉밀감
邵东黄花菜	쇼우둥황화차이	소동황화채	南山奶制品	난싼나이쯔핀	남산유제품
邵东玉竹	쇼우둥위주우	소동옥죽	祁东黄花菜	치둥황화차이	기둥현황화채
桃源野茶王	톈원야에이차왕	도원야생차왕	桃源大叶茶	톈원따에이차	도원대엽차
临武鸭	린우야	린무오리	永州山苍子油	용쨌우싼창쯔여우	영주산창자기름
张家界大鲵	장짜제이따니이	장가계대도룡농	湘阴藟头	쌍인쨌터우	향인염교
湘莲	쌍련이	향련	醴陵瓷器10家企业	리링도우치10자치예	예링도자기10가기업
黔阳冰糖橙	첸양빙탕청	검양어름사탕귤	浏阳烟花、爆竹	류양안화, 포우쑤우	류양불꽃, 폭죽
武冈卤豆腐	우강루떠우푸	무강소금두부	湘绣	쌍쑤우	향수
武冈卤铜鹅	우강루통어	무강소금동가오리	雪峰蜜桔	쉐이펑미제이	설봉밀오렌지
溪洲莓茶	시쨌우메이차	계주매차			
국가공상관리국					
浏阳花炮	류양화우포우	류양꽃불	江永香柚	장용쌍유우	강영향유자
浏阳鞭炮	류양뵤포우	류양폭죽	江永香芋	장용쌍위	강영향토란
浏阳烟花	류양안화우	류양불꽃	麻阳柑桔	마양간귀	마양감귤
张家界柑桔	장짜제이펑간	장가계뽕강	芷江鸭	쯔짱야	지가오리
安化茶	안화차	안화차	永兴冰糖橙	용쑤뽕탕청	영홍얼음설탕오렌지
安化黑茶	안화헤이차	안화흑차	宜章脐橙	이짱치청	네이블오렌지
安化千两茶	안화첸량차	안화첸량차	桂阳烟叶	웨이양안예이	계양연엽
沅江芝麻	위안장주마	원강모시	隆回龙牙百合	룽회이룽야바이허	룽회룡야백합
岳阳银针	웨이양인쩐	악양은침	隆回金银花	룽회쩐인화	룽회금은화
石门银峰	스먼인펑	석문은봉	武冈卤菜	우강루차이	무강소금채
石门柑橘	스먼간귀	석문감귤	武冈铜鹅	우강루통어	무강동가오리
桃源大叶茶	톈원따에이차	도원대엽차	武冈铜鹅	우강루통어	무강동가오리
古丈毛尖	꾸장모우젠	고장현모침	湘莲	쌍련	향련
泸溪椪柑	루시펑간	로계뽕강	常宁无渣生姜	창닝우짜쑤짱	상녕무자생강
龙山百合	룽산바이허	룽산백합	攸县麻鸭		
东安鸡	둥안찌	둥안닭			
농업부					
紫鹊界贡米	Ciquejie gongmi	자작계 쌀	湘西黄牛	Xiangxi huangniu	상서 황소
酃县白鹅	Lingxian bai'e	링현 거위	宁乡猪	Ningxiang zhu	영향 돼지
华容芦苇笋	Huarong luweisun	화용 갈대 순	湘西椪柑	Xiangxi penggan	상서 뽕강
黔阳脐橙	Qianyang qicheng	검양 오렌지	浦市铁骨猪	Pushi tieguzhu	포시 티에구 돼지
保靖黄金茶	Baojing huangjincha	보정 황금차	江永香柚	Jiangyong xiangyou	강영 유자
浦市铁骨猪	Pushi tieguzhu	포시철골 돼지	湘西黄牛	Xiangxi huangniu	상서 황소
杞县大蒜	Qixian dasuan	기현 마늘	复兴苹果柚	Fuxing pingguoyou	북흥평과 유자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溧河麻鸡	Luohe maji	나하마 닭	靖州杨梅	Jingzhou yangmei	정주 양메이
华容潘家	Huarong panjia	화용판가 고추	黔阳大红甜橙	Qianjiang dahong tiancheng	검양 오렌지
大辣椒	dalajiao				
洪江雪峰乌骨鸡	Hongjiang xuefeng wuguji	홍강설봉 오골계			

광동성

국가검사검역국					
化橘红	화귀홍	화오렌지나무	白蕉海鲈	바이쵸하이루	백교해농어
东陂腊味	둥푸어라위이	동파견어물	新垦莲藕	신켄랜어우	신간연근
张溪香芋	장시상위이	장계향토란	南澳牡蛎	난오우무리	남오굴
沿溪山白毛尖	옌시산바이모우젠	옌계산백모침	凤凰单丛 (枞) 茶	펑황단층차	봉황단층차
北乡马蹄	베이샹마티	북향말발굽	火山粉葛	휘산펀거어	화산분첩
南雄板鸭	난쑹반야	남웅판오리	南盛沙糖桔	난썩사탕귀	남성사당굴
罗定皱纱鱼腐	뤄딩저우사위푸우	라정추사어부	香云纱	쌍윈사	향운사
英德红茶	잉더홍차	영덕홍차	象窝茶	쌍위차	상와차
钱岗糯米糍	첸강누어미즈	전강찰쌀떡	虎嘍金针菜	후판진전차이	호담원주리
清远乌鬃鹅	칭위엔우중어	칭원검은머리거위	从化荔枝蜜	충화리즈미	종화여지꿀
程村蠔	칭춘호	정춘굴	大八益智	다바이즈	대팔이지
东陂腊味	둥피라위이	동파견어물	台山鳗鱼	타이산만위	대산뱀장어
端砚	두안옌	단연	西庐乌酥杨梅	시루우수양머이	서러오소양매
合水粉葛	허수이펀거	합수분첩	吴厝淮山	우취화이산	오취화산
河源米粉	허웬미핀	하원쌀국수	马水桔	마수이쥬이	마수굴
廉江红橙	롄장홍청	염강홍귤	埔田竹笋	푸텐주순	포전죽순
流沙南珠	류사난주	류사남주	张溪香芋	장시상위	장계향토란
马坝油粘米	마빠유넨미	마파유찰쌀	中山脆肉鲩	중산취이러우환	중산취육환
普宁蕉柑	푸닝쵸우간	보녕과초감	南澳牡蛎	난오우무리	남오굴
郁南无核黄皮	위난우허황피	울남씨없는황피	清远鸡	칭웬지	칭원닭
连南瑶山茶油	롄난요우산차유	롄남요산차유	白礁海鲈	바이쵸우하이루	백교해농어
增城丝苗米	쯩칭스묘미	증성사묘미	凤凰丹丛	펑황단층	봉황단층
新丰佛手瓜	신펑푸어썬우과	신풍차오테	陆河青梅	뤄허칭메이	륙해칭매
九仙桃	쥬셴도우	구선복숭아	罗浮山百草油	뤄이푸산바이쵸우유	라부산백쵸우유
派潭凉粉草	파이탄량펀초우	파담눅두목초	连南无核柠檬	롄난우허닝명	롄난씨없는레몬
增城迟菜心 (增城菜心、增城高脚菜心)	쯩칭츠차이신	증성지채심	西牛麻竹叶	시뉴우마주예	서우마죽엽
怀集茶秆竹	화이지차간주	회집통킹참대	普宁青梅	푸닝칭메이	부녕칭매
清化粉	칭화펀	칭화분	南盛沙糖桔	난썩사탕귀	남성사당굴
乳源彩石	뤼원차이쓰	유원채석	潮汕橄榄菜	초우산간란차이	조산간랍채
东坝蚕茧	둥바찬젠	동파누에고치	潮汕贡菜	초우산궁차이	조산궁채
长坝沙田柚	창바사텐유	장파사전유	德庆贡柑	덕칭궁간	덕경궁감
三华李	삼화리	삼화리	东莞米粉	둥관미핀	둥관쌀국수
春砂仁	춘사런	춘사인	惠州梅菜	회이저우머이차이	혜주매채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焉耆大白菜	앤치다바이차이	엔기배추	阿克苏红枣	아커수홍조	아극소붉은대추
焉耆红辣椒	앤치홍라조	엔기붉은고추	阿克苏红枣	아커수홍조	아극소붉은대추
若羌红枣	뤄창홍조	약강현붉은대추	阿克苏核桃	아커수허토	아극소호두
若羌红枣	뤄창홍조	약강현붉은대추	阿克苏鲜核桃	아커수셴허토	아극소신선호두
轮台白杏	룬타이바이싱	룬태백아몰레드	阿克苏苹果	아커수핑과	아극소사과
吐鲁番葡萄干	투루판푸토간	토로번건포도	阿瓦提慕萨莱思	아와티무사라이스	아와제모사래사
吐鲁番葡萄	투루판푸토	토로번포도	新和葡萄	신허푸토	신화포도
阿图什木纳格葡萄	아투스무나거푸토	아도십포도	精河枸杞	징허거우치	정허구기자
哈密瓜	하미과	멜론	裕民无刺红花	위민우치홍화	유민무사홍화
哈密大枣	하미다조	합밀대추	吉木萨尔大蒜	지무사얼다완	길목살이마늘
库车酸梅	쿠차완메이	고차오매	吉木萨尔红花	지무사얼홍화	길목살이붉은꽃
库车酸梅	쿠차완메이	고차오매	和田玉枣	허톈위조	화톈옥대추
库车白杏	쿠차바이싱	고차흰살구			

농업부

高堂菜脯	Gaotang caipu	고당 건초	饶平狮头鹅	Raoping shitou'e	랴오핑 사자머리 거위
岭头单丛茶	Lingtou dancongcha	영두단총 차	信宜狗仔鱼	Xinyi dangzi yu	신익당자 치어
和田玉枣	Hetian yuzao	화톈옥 대추	特克斯苹果	Tekesi pingguo	특극사 사과
头屯河葡萄	Toutunhe putao	두둔하 포도	和田御枣	Hetian yuzao	릿 대추
阿力玛里树上干杏	Lalimali shushang ganxing	아력마리 살구	一〇三团甜瓜	Yilingsan tuan tiangua	103단 참외
一四八团彩棉	Yisiba tuan caimian	148단 목화	二二三团苹果	Er'ersan tuan pingguo	223단 사과

광서성

국가감사검역국

广西肉桂	광서러우귀이	광서육계	融水糯米柚	룽수이	용수찰입쌀유자
凌云白毫茶	링위인바이호우차	룽운백호차	梧州腊肠	우저우라창	오주소시지
巴马香猪	바마향주	바마향돼지	灵山凉粉	링산량펀	링산늑두묵
大新苦丁茶	다신쿠딩차	대신고정차	湘山酒	샹산주우	상산주
合浦南珠	허푸난주	합포남주	六堡茶	류우보우차	육보차
横县茉莉花	형셴머리화	형현제스민	大瑶山甜茶	다요우산텐차	다요산달콤한차
荔浦芋	리푸위	여포토란	桂林腐乳	궈이린푸우루	궈림두부젓
坭兴陶	니싱토우	니흥도자기	桂林辣椒酱	궈이린라조우장	궈림고추장
容县沙田柚	룽셴사토펬유우	용현사토펬유	桂林三花酒	궈이린산화주	궈림삼화주
梧州龟苓膏	우저우궈이링고우	오주궈링고	桂林西瓜霜(中药材炮制品)及其系列产品	궈이린시과수양지치 씨래찬펀	궈림수박상맛등류제품
梧州龟苓膏	우저우궈이링고우	오주궈링고	环江香猪	환강상주	환강향돼지
忻城金银花	싌신청진인화	흔성금은화	金秀纹银系列产品	진슈우쵸우구란시래찬펀	금수교팔람시리즈산품
阳朔金桔	양슈우진궈	양식금궈	罗城野生毛葡萄酒	뤄청예성모우푸토우주	라성야생모포도주
永福罗汉果	영푸뤄한궈	영복개여주	马山黑山羊	마산헤이산양	마산흑염소
玉林香蒜	위림샹수안	옥림향늘	八渡笋	바두순	팔도순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霞烟鸡	샤옌지	하연닭	凉亭鸡	량팅지	량정닭
博白桂圆肉	뵈바이궈이웬러우	박백계원육	博白空心菜	버우쿵신차이	박백공심채
西山茶	시산차	서산차	田东香芒	토탄상망	전동향망
横县大头菜	헝셴다터우차이	횡현양배추	正骨水	정구우수이	정골수
南山白毛茶	난산바이모우차	남산백모차	八渡笋	바두순	팔도순
天等指天椒	토탄즈토탄쵸우	천등지천초	桂林腐竹	궈이린푸우주우	계림부죽

국가공상관리국

田阳香芒	토탄양쌍망	전양향망	巴马香猪	바마쌍주	바마향돼지
融安金桔	룽안진궈이	용안금귤	南丹瑶鸡	난단요우지	남단요닭
恭城月柿	궁청위예쓰	궁성월시	南丹瑶山红梨	난단요산홍리	남단요산홍배
阳朔金桔	양쑤어진궈이	양식금귤	南丹椪柑	난단평간	남단봉강
荔浦芋	리푸우위	여포토란	南丹巴平米	난단바평미	남단바평쌀
永福罗汉果	용푸우뤄한궈이	영복개여주	东兰板栗	동란반리	동란밤
恭城椪柑	궁청평간	궁성봉강	富川脐橙	푸우추안치청	부천네이블오렌지
横县茉莉花茶	헝셴뤄리화차	횡현제스민차			

농업부

金田淮山	Jintian huaishan	금전회산	涠洲黄牛	Weizhou huangniu	위주 우황소
桂平黄沙鳖	Guiping huashabie	규평황사 자라	灵山香鸡	Lingshan xiangji	영산향 닭
钦州大蚝	Qinzhou damao	흙주 굴	龙胜凤鸡	Longsheng fengji	용생 봉황닭
灌阳雪梨	Guanyang xueli	관양 배	西林水牛	Xilin shuiniu	서림 물소
金田淮山	Jintian huaishan	금전회산	资源红提	Ziyuan hongti	자원홍제
官垌草鱼	Guantong caoyu	관동 초어	马山金银花	Mashan jinyinhua	마삼금은 화
昭平银杉茶	Zhaoping yinshancha	소평은삼 차	东兴红姑娘红薯	Dongxing hongguniang hongshu	동흥홍고강 고무마
天峨大果山楂	Tian'e daguo shanzha	천아대과 아가위나무			

해남성

국가검사검역국

白沙绿茶	백사녹차	빠이싸뤄차	和乐蟹	화목한게	허리싸
澄迈苦丁茶	징매고정차	청마이쿠멍차	兴隆咖啡	흥성커피	쌍룽카페이
琼中绿橙	경중녹색오렌지	충중뤄청	海南岛盐	해남도소금	하이난또우앤
福山咖啡	복산커피	푸산카페이	文昌鸡	문창닭	원창찌

국가공상관리국

琼中绿橙	충중뤄청	경중녹색오렌지	屯昌黑猪	툰창헤이쭈	툰창흑돼지
琼中蜂蜜	충중평미	경중꿀	文昌鸡	원창찌	문창닭
临高乳猪	린가오루우쭈	임고돼지	乐东香蕉	러똥쌍쵸우	악동바나나
临高乳猪	린가오루우쭈	임고돼지			

중경직할시

국가검사검역국

江津花椒	쟡진화쵸우	강진산초	奉节脐橙	펑제치청	봉절네이블오렌지
------	-------	------	------	------	----------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酉阳青蒿	유양칭호	유양녹색쑥	万州红桔 (万县红桔) (重新公示)	완쩌우홍계	만주붉은귤
合川桃片	허촨도우편	합천복숭아조각	秀油	쑤유	우수한오일
忠县柑橘	중셴간궈	중현감귤	涪陵榨菜	푸링짜차이	부링일
石柱黄连	쓰쭈황련	석회주황련	永川豆豉	융촨떠우즈	영천발효콩
涪陵榨菜	푸링짜차이	부링일	永川双宫丝	융촨쌍궁쓰	영천쌍궁전실
南川方竹笋	난촨팡팡쑤원	남천지방죽순	鱼泉榨菜	위촨짜차이	어샘일
국가공상관리국					
奉节脐橙	펑제치청	봉제네이블오렌지	丰都龙眼	펑뚜룽옌	풍도용안육
涪陵榨菜	푸링짜차이	부링일	丰都肉牛	펑뚜러우뉴우	풍도육우
梁平柚	량핑유	양핑유자	万县红桔	완셴홍궈	만현붉은오렌지
涪陵青菜头	푸잉칭차이터우	부링녹색야채	荣昌猪	룽창쭈	영창돼지
城口老腊肉	청커우로우라러우	성구현오래된납육	合川桃片	허촨도우편	합천복숭아조각
大足黑山羊	따쭈헤이싼양	대족흑산양	武隆高山萝卜	우룽꼬우산뤄부어	무룽고산무우
石柱黄连	쓰쭈황련	석주황련	武隆高山白菜	우룽꼬우산바이차이	무룽고산배채
长寿沙田柚	창쑤우샤뎬유	장수유자	开县龙珠茶	카이셴룽쭈차	개현룽쭈차
酉阳青蒿	유양칭호	유양녹색쑥			
농업부					
南川米	Nanchuan mi	남천 쌀	梁平柚	Liangping you	양평 유자
江津广柑	Jiangjin guangan	강진광 감	江津花椒	Jiangjin huajiao	강진 산초
城口山地鸡	Chengkou shandiji	성구산지 닭	南川鸡	Nanchuan ji	남천 닭
开县锦橙	Kaixian jincheng	개현 오렌지	武隆高山白菜	Wulong gaoshan baicai	무룽고산 배추
武隆高山辣椒	Wulong gaoshan lajiao	무룽고산 고추	武隆高山甘蓝	Wulong gaoshan ganlan	무룽고산 양배추
武隆高山萝卜	Wulong gaoshan luobo	무룽 까오산 무우	梁平肉鸭	Liangping rouya	양평육 오리
武隆高山马铃薯	Wulong gaoshanmalingshu	무룽고산 감자	静观腊梅	Jingguan lamei	정관 납매꽃
碚上萝卜	shangluobo	상 무우	巫溪洋鱼	Wuxi yangyu	무계양어
璧山儿菜	Bishanr cai	벽산아 푸성귀	潼南萝卜	Tongnan luobo	동남 무우
罗盘山生姜	Luopanshan shengjiang	나관산 생강	南川金佛玉翠茶	Nanchuan jinfo yucucha	남천대불옥취 차
潼南罗盘山猪	Tongnan luopanshanzhu	동남나관산 돼지	巫溪洋芋	Wuxi yangyu	무계 감자
云阳红橙	Yunyang hongcheng	운양 자몽	南川大树茶	Nanchuan dashu cha	남천대 산초 차
사천성					
국가검사검역국					
渠县黄花	취셴황화	거현국화	蒲江猕猴桃	푸쟡미허우도우	포강키위
汉源花椒	한원화쵸우	한원산초	新津黄辣丁	싰진황라뎡	신진고기
都江堰厚朴	뚜쟝얌허우푸	두장뎬후박나무	盐源苹果	얌원핑궈	연원사과
龙泉驿水蜜桃	룽궈이쑤이미도우	용천역수밀도	松贝	송뻬이	송뻬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合江荔枝	허짱리쯔	합강여지	达州橄榄油	다쩌우간란유우	달주올리브오일
资中鲶鱼	쯔중넨위	자중물고기	金堂明参	찐탕링션	금당인삼
苍溪雪梨	창씨쑤위리	창계배	东坡泡菜	똥궤포우차이	동파김치
米仓山茶	미창싼차	밀창동백나무	峨眉山茶	어머이싼차	아미산차
金川秦艽	찐촨친쵸우	금천오독도기	金阳白魔芋	찐양빠이뽀위	금양흰구약나물
国胜茶	궤셩차	국승차	川芎	촨쑹	청궁
郫县豆瓣	피셴떠우뽀	비현짜개	金阳青花椒	찐양칭화쵸	금양청산초
唐元韭黄	탕웬친황	당원누런부추	旺苍杜仲	왕창뚜쵸	왕창두충
金口河乌天麻	찐커우허우텐마	금구하까마귀천마	新店七星椒	신뎬치썩쵸우	신뎬칠썩고추
川白芷	촨빠이쯩	촨백지	雅连	야련	야련
彭州大蒜	펑쩌우따쑤	펑주마늘	雁江蜜柑	옌짱미간	안강밀감
龙安柚	룽안유우	용안유자	中江丹参	중짱뎬션	중강분마초
得荣花椒	뎬룽쑤쵸우	득영산초	七佛贡茶	치궤궤차	칠부공차
都江堰猕猴桃	뚜짱옌미허우도우	도강언키위	乡城松茸	향칭쑹룽	향성송이버섯
双流枇杷	쌍류피파	쌍유비파나무	合江荔枝	허짱리쯔	합강여지
苍溪猕猴桃	창씨미허우도우	창계키위	双流二荆条辣椒	쌍류우얼썩뚜우라쵸우	쌍류싸리고추
长赤翡翠米	창즈피이취이미	장즈비취쌀	北川苔子茶	베이촨쯔차	북천채자차
朝天核桃	차우텐허도우	조천호두	刀党	도우당	
达县苕麻	따셴짜마	달현모시	旧院黑鸡	쥬웬헤이찌	구원흑닭
涪城麦冬	푸칭마이똥	부성맥문동	巴州川明参	빠저우촨링션	파주천명삼
古蔺肝苏	꾸린간쑤	고린간소	巴山土鸡	빠싼투우찌	파산토닭
会理石榴	후이리쓰류	회리석류	简阳羊肉	젠양양러우	간양양고기
剑南春酒	젠난추윈쵸우	검남춘술	茂县花椒	마오셴	무현산초
江油附子	짱유푸쯔	강유바꽃	达县乌梅	따셴우메이	달현오매
泸州酒	푸쩌우쵸우	노주술	西充二荆条辣椒	씨충얼썩뚜우쵸우쑤	서충싸리고추
蒙山茶	멍산차	몽산차	筠连苦丁茶	쥬련쿠뎬차	군련고정차
南江金银花	난장찐인화	남강금은화	北川花魔芋	베이촨화위위	북천고구마
南江山核桃	난장싼허도우	남강산호두	阆中张飞牛肉	랑중짱궤이뉴우러우	랑중장비소고기
南溪豆腐干	난씨떠우푸간	남계말린두부	云崖兔	윈야투	윈야토끼
蒲江雀舌	푸짱궤씨	포강작설	简阳大耳羊	젠양따얼양	간양대귀양
青川黑木耳	칭촨허이무얼	칭칭흑목이버섯	金佛山方竹笋	찐궤싼궤쵸원	금부산방죽순
水井坊酒	수이징궤쵸	수정방주	青川绿茶	칭촨궤차	칭천녹차
通江银耳	통짱인얼	통강희목이버섯	双流冬草莓	쌍류똥초우메이	쌍류똥딸기
温江大蒜	윈강따쑤	온강마늘	乡城松茸	향칭쑹룽	향성송이버섯
仪陇大山香米	이푹따싼쑤미	의룡대산향미	国窖.1573	궤쵸우1573	
资中冬尖	쯔중똥젠	자중겨울나기채소	剑南春系列白酒	젠난촨씨레빠이쵸	검남춘계열소주
泸州酒	푸쩌우쵸우	노주술	郎酒系列产品(酱香型)	랑쵸씨레촨궤(짱짱썩)	랑쵸계열제품
资中血橙	쯔중쑤이칭	자중붉은오렌지	黎红鲜花椒油	리홍셴화쵸우유우	이홍선산초오일
会理黑山羊	회이리허이싼양	회리흑산양	临江寺豆瓣系列产品	린짱쓰떠우뽀레촨궤	임강사짜개계열제품
犍为茉莉花茶	첸웨이궤이리화차	건위재스민차	临江寺腐乳	린짱쓰푸우루우	임강사삭힌두부
宜宾酒	이찐쵸우	의빈술	泸州老窖特曲	푸쩌우루우쵸우터취	노주오래된특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北川米黄大理石 天池藕粉 雷波脐橙 稻城藏香猪 大竹香椿 西昌洋葱 永安白乌鱼	베이관황다리스 탠즈어우펀 레이부우치청 다우청창쌍쑤 따쑤쌍쑤윈 씨창양충 융안바이우위	북천미색대리석 천지연뿌리가루 넝파네이블오렌지 도성선향돼지 대죽참죽나무 서창양파 영안흰기물치	泸州老窖系列曲药 绵竹大曲系列白酒 四川省峨眉山竹叶青茶 四川省舍得系列酒 特香型马特系列白酒 沱牌系列酒 五粮液系列白酒产品(五 粮液、五粮春、五粮醇、 尖装)	루저우로우씨레취요우 몐쑤파취씨레빠이쑤우 쓰완어머이싼쑤예칭차 쓰완씨떠씨레쑤 타양쑤쓰더우씨레빠이쑤 튀파이씨레쑤 우량예씨레빠이쑤잔관(우 량예, 우량춘, 우량춘, 쉐쑤)	노주오래된계열취약 면죽누룩계열소주 사천어니산죽잎칭차 사천서더계열술 특향형사특계열소주 튀파이계열술 오량액계열소주제품(오량 액, 오량춘, 오량순, 쉐쑤)
江口醇酒 炉霍雪域俄色茶 富顺香辣酱 米城大米	쑤커우추윈쑤 루훠쑤위어씨차 푸원쑤라쑤 미칭따미	강구술 로곽 부순고추장 미성쌀	宜宾芽菜系列产品 中坝口蘑酱油系列产品 自流井精制盐 青川天麻	이뵤아자이씨레찬핀 쑤뵤커우뵤쑤유씨레찬핀 쯔류쑤쑤쯔엔 칭완텐마	의빈야채계열제품 쑤뵤뵤버섯간장계열제품 차류정장제소금 칭천천마
국가공상관리국					
蒙顶山茶 雅鱼 汉源花椒	멍뵤산차 야위 한원화쑤우	몽뵤산차 한원산초	青神椪柑 仁寿枇杷 岳池黄龙贡米	칭원펑간 런씨우피과 웨즈황룽공미	칭신뵤강 인수비과 악지황룽공쌀
농업부					
马边绿茶	Mabian lvcha	마뵤 녹차	石棉黄果柑	Shimian huanguogan	석뵤 혼궤나무
文宫枇杷	Wengong pipa	문궁 비과	峨眉山藤椒	Emeishan tengjiao	아미산 등나무 산초
龙王贡韭	Longwang gongjiu	용왕 부추	宜宾早茶	Yibin zaocha	의빈조 차
崇州郁金	Chongzhou yujin	중주 울금	富顺再生稻	Fushun zaishengdao	복순 속씨 식물
凉山清甜香烤烟	Liangshan qingtianxiang kaoyan	량산청감향 연초	万源富硒茶	Wanyuanfu xicha	만원복서 차
邻水脐橙	Lingshui qicheng	영수 오렌지	荣经天麻	Yingjing tianma	잉쑤팅엔 마
阆中川明参	Langzhong chuanmingshan	랑중천 명삼	雷波	Leibo bajiao	뢰파과조우 돼지
宣汉桃花米	Xuanhan taohuami	현한 도화미	芭蕉芋猪	Bajiao yuzhu	진용 유자
屏山炒青	Pingshan chaoqing	병산 녹차	真龙柚	Zhenlong you	증가산 감자
凉山马铃薯	Liangshanmalingshu	량산 감자	曾家山马铃薯	Zengjiashan malingshu	증가산 감자
南部脆香甜柚	Nanbu cuixiangtianyou	남부위향감 유자	芭蕉木瓜	Bajiao mugua	파조 모과
崇庆枇杷茶	Chongqing pipacha	중쑤 비과차	黄金黑木耳	Huangjin heim'u'er	황금 목이버섯
万源马铃薯	Wanyuan malingshu	완위엔 감자	老君香菇	Laojun xianggu	노군 버섯
凉山桑蚕茧	Liangshan sangcan jian	양산 누에충	巴塘南区辣椒	Batang nanqu lajiao	파당남구 고추
大竹苎麻	Dazhu zhuma	대죽 모시	喜德阉鸡	Xide yanji	희득 닭
南江大叶茶	Nanjiang dayecha	남강대엽 차	西昌钢鹅	Xichang gang'e	서창강 거위
曹家梨	Caojia li	조가 배	越西贡椒	Yuexi gongjiao	월서 산초
汶川甜樱桃	Wenchuan tianyingtao	문천감 앵두	天仙硐枇杷	Tianxiantong pipa	천선동 피과
			剑门关土鸡	Jianmenguan tuji	검문관 토종 닭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苍溪川明参	Cangxichuan mingshen	창계천 명삼	石棉枇杷	Shimian pipa	석면 비파
凉山雷波脐橙	Liangshan leiboqicheng	량산뢰보 오렌지	西充黄心苕	Xichong huangxinshao	서충황심 고구마
泸州桂圆	Luzhou guiyuan	노주 용안	蓬安锦橙	Peng'an jincheng	봉안금 오렌지
金堂脐橙	Jintang qicheng	금당 오렌지	大田石榴	Datian shiliu	대전 석류
四川省泡菜	Sichuan sheng paocai	사천 김치	西昌高山黑猪	Xichang gaoshan heizhu	서창고산 흑돼지
仪陇胭脂萝卜	Yilong yanzhi luobo	의롱연 무우	会东黑山羊	Huidong heishanyang	회동흑 산양
犍为麻柳姜	Qianwei maliujiang	견위마류 생강	金川多肋牦牛	Jinchuan duolei maoniu	금천다근모 소
简阳晚白桃	Jiayang wanbaitao	간양만백 백도	建昌鸭	Jianchang ya	건창 오리
越西甜樱桃	Yuexi tianyingtao	월서 앵두	充国香桃	Chongguo xiangtao	충국 복숭아
罗江贵妃枣	Luojiang guifeizao	나강귀비 대추	蒲江杂柑	Pujiang zagan	포강잡 감
美姑山羊	Meigu shanyang	미고 산양	剑门关土鸡	Jianmenguan tuji	검문관 토종닭
攀枝花芒果	Panzhuhua mangguo	반지화 망고	宜宾早茶	Yibin zaocha	의빈조 차
泸宁鸡	Luning ji	호녕 닭	金堂姬菇	Jintang jigu	금당 버섯
冕宁火腿	Mianning huotui	면영 햄	泸定红樱桃	Luding hongyingtao	노정홍 앵두
内江猪	Neijiang zhu	내강 돼지	越西贡椒	Yuexi gongjiao	월서 고추

귀주성

국가검사검역국					
石阡苔茶	쓰첸태이차	석첸태차	大方天麻	따방텐마	대방첸마
顶坛花椒	명탄화조	친단산초	大方漆器	따방치치	대방석기
连环砂仁	렌환싸린	연환모래인	赤水金钗石斛	프췌이췌차이쓰후	후수금빛석회
德江天麻	떠쨩텐마	덕강첸마	从江柑桔	충쨩평간	중간평강
梵净山翠峰茶	판징싼취이빙차	범정산록봉차	从江香猪及其系列肉制品	충쨩쨩췌치씨레러우췌핀	중간향췌기타육제품
凤冈富锌富硒茶	빙강부췌부씨차	빙강복췌보시차	贵州醇白酒系列	궈이저우췌뻬이씨레	궈주췌고량계열
沙子空心李	싸즈쿵췌리	모래공심리	奇香贵州醇白酒系列	치샹궈이저우췌뻬이씨레	기향궈주췌고량계열
余庆苦丁茶	위칭쿠명차	여경고정차	羊艾碧绿春	양아이뻬리췌	양애비록춘
茅台酒	모우타이췌	모태주	羊艾毛峰	양아이모우펑	양애모봉
茅贡米	모우공미	모공쌀	羊艾松柏常青	양아이췌췌창칭	양애췌뻬칭
都匀毛尖	떠우윈모우첸	도균모우첸	羊艾特珍特级	양아이터췌터췌	양애특진특급
镇宁波波糖	첸닝뻬뻬탕	진닝파파당	羊艾小叶苦丁茶	양아이쇼예쿠딩차	양애소입고정차
织金竹荪	췌진췌췌	직금대창포	正安野木瓜	정안예무과	정안과파야
清镇酥李	칭진췌리	칭진췌리	威宁党参	웨이닝당췌	위닝상당인삼
兴义饵块粳	췌이얼콰이빠	흥의떡	遵义杜仲	궈이뚜중	궈의두중
清镇黄粳	칭첸황빠	칭첸황떡	湄潭茅贡米	메이탄모우공미	미담모공쌀
黎平香禾糯米	리펑샹허늬미	여펑참쌀	开阳富硒米	카이양푸씨미	개양부셀쌀
虾子辣椒[原遵义朝天椒] (重新公示)	샤즈라조	새우알고추	正安白茶	정안뻬이차	정안백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국가공상관리국					
都匀毛尖	두윈모우젠	도균모우젠	平坝灰鹅	핑빠휘어어	핑패희색거위
湄潭翠芽	머이탄취이야	메탄파란새싹	三穗鸭	싼취이야	삼수오리
遵义朝天椒	윈이초텐조	윈의조천고추	从江柚柑	충장평간	중강뽕깡
遵义朝天椒	윈이초텐조	윈의조천고추	威宁洋芋	위닝양위	위녕감자
正安白茶	정안빠이차	정안백차	望漠黑山羊	와뤄허이싼양	망모흑염소
玉屏箫笛	위핑쇼디	옥평소피리			
농업부					
赤水乌骨鸡	Chishui wuguji	적수 오골계	花溪辣椒	Huaxi lajiao	화계 고추
从江香猪	Congjiang xiangzhu	중강향 돼지			
운남성					
국가감사검역국					
程海螺旋藻3家企业	청하이뤄켄조우싼차치예	성해스피룰리나삼자기업	通海萝卜红	통하이뤄뷔홍	통해무홍
文山三七	윈산싼치	문산삼칠	香格里拉藏药	쌍꺼리라짜요우	향거리라장약
宣威火腿	썬위이뤄튀이	선위햄	香格里拉松茸	쌍꺼리라송룽	향거리라송이
昭通天麻	쑤우통텐마	소통천마	漾濞大泡核桃	양비따포우허토우	양비대포호두
洱源梅子	얼웬메이즈	이원매실	元江茉莉花茶	웬장뤄리화차	원장재스민차
红河灯盏花	홍허명잔화	홍허유등화	云南白药	위난빠이요	운남백약
普洱茶	푸얼차	푸얼차	云南红葡萄酒	위난홍푸토우주	운나포도주
保山小粒咖啡	보우싼쇼리카페이	보산알갱이커피	云南盘龙云海系列药品	위난판룽윈하이씨레요핀	운남바룡운해계열약품
邓川牛奶	뎡촨뉴나이	등촨우유	云南下关沱茶	위난샤관튀차	운남하관튀차
邓川全脂甜奶粉	뎡촨촐랜즈뎡나이핀	등촨전지방분유	蒙自甜石榴	멍쯔뎡쓰류	몽자석류
抚仙湖银鱼冷冻制品	부싼후인위링퐁쯔핀	무션호뎡어냉동제품			
국가공상관리국					
宣威土豆	썬위이투더우	선위감자	罗平菜油	뤄핑차이유	나핑채유
富源魔芋	부웬뤄위	부원구약나물	大姚核桃	따요우허토우	대요호두
富源大河乌猪	부웬따허우쭈	부원대하검은돼지	云龙绿茶	위룽뤄차	운룽녹차
罗平小黄姜	뤄핑쑤황장	나핑소황강			
농업부					
圭山山羊	Guishan shanyang	규산 산양	会泽宝珠梨	Huize baozhu li	회택보주 진주 배
开远蜜桃	Kaiyuan mitao	개원 복숭아	会泽大洋芋	Huize da yangyu	회택 감자
广南八宝米	Guangnan babaomi	광남팔보 쌀	盐水石榴	Yanshui shiliu	염수 석류
石林甜柿	Shilin tianshi	석림 단감	石林乳饼	Shilin rubing	석림 전병
大理独头大蒜	Dali dutou dasuan	대리독두 마늘	弥勒葡萄	Miqin putao	미근 포도
建水酸石榴	Jianshui suanshiliu	건수산석 석류	开远蜜桃	Kaiyuan mitao	개원 복숭아
蒙自石榴	Mengzi shiliu	몽자 석류	溪洛渡花椒	Xiluo duhuajiao	계락도 산초
圭山山羊	Guishan shanyang	규산 산양	呈贡宝珠梨	Chenggong baozhu li	정공 진주 배
石林乳饼	Shilin rubing	석림 반원 빵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서장성					
국가검사검역국					
藏牦牛骨粉 曲玛弄矿泉水 扎囊麴	씨장호우뉴꾸편 취마농광첸취이 짜낭꾸누	사장야크골분 취마농광천수 찰낭방로	曲玛弄矿泉水 西藏藏药 西藏那曲冬虫草	취마농광첸취이 씨장장요우 씨장나취똥충싸초우	취마농광천수 시장장약 시장나곡동충하초
국가공상관리국					
波密天麻	뤄미텐마	차밀천마	艾玛土豆	아이마투더우	애마감자
농업부					
波密天麻	Bomi tianma	파밀 마	昌果红土豆	Changguo hongtudou	창과 야콘
섬서성					
국가검사검역국					
定边马铃薯 汉中仙毫 黄龙核桃 清涧红枣 府谷海红果 凤县大红袍花椒(凤椒) 韩城大红袍花椒 蓝田玉 临潼石榴 平利绞股蓝 陕西苹果 西凤酒 延安酸枣 延川红枣 洋县黑米 周至猕猴桃 子洲黄芪qi 紫阳富硒茶 镇巴腊肉 华县大葱 蒲城花炮 榆林豆腐 耀州瓷 横山羊肉	딩뵘마링쑤 한중싼호우 황룡허토우 칭간홍조우 부구하이홍귀 병샌다마홍포우화쵸 한청따홍포우화쵸 란텐위 린통쓰류 딩리쵸구란 싼씨핑귀 씨핑쵸 옌안완조우 옌촨홍쵸우 양싼헤이미 쩌우쯔니허우토우 쯔저우황치 쓰양푸씨차 전빠라러우 화싼따충 루칭화표우 위린띠우푸 요우저우즈 형싼양러우	정변감자 한중선호 황룡호두 칭간붉은대추 부곡해홍과 봉현대홍포산초 한성대홍포산초 란전옥 임동석류 핑리쵸구란 산서사과 서봉주 연안뵘대추 연친붉은대추 양현흑미 주지양다래 자주황기 자양복시차 진과납육 화현대과 포성꽃불 유림두부 요주자기 형산양고기	略阳乌鸡 商洛丹参 太白酒 紫阳蓝黑板石 岚皋(langao)魔芋 大荔黄花菜 流曲琼锅糖 白河木瓜 白河木瓜 汉中绿茶 大荔黄花菜 安塞小米 汉中附子 定边红花荞麦 安塞苹果 略阳天麻 略阳猪苓 佛坪山茱萸 甘泉红小豆 大荔黄花菜 兴平辣椒 富平柿饼 临潼火晶柿子 略阳杜仲	뤄양우지 쌍뤄판썬 타이바이쵸 쯔양란헤이뵘쓰 란고우뵘위 따리황화차이 류취충궤탕 빠이허무과 빠이허무과 한중뤄차 따리황화차이 안싸이쇼미 한중부즈 뵘뵘홍화쵸마이 안싸이핑귀 뤄양텐마 뤄양쵸링 피핑싼쯔꺼 간첸홍쵸떠우 따리황화차이 썩핑라쵸 부핑쓰빙 린통훤징쓰즈 뤄양두중	락양당답 상락단삼 태백주 자양란흑반석 남고구약나물 다리원추리 류쵸경과당 백하과과야 백하과과야 한중녹차 다리원추리 안새좁쌀 한중부자 뵘뵘홍화매밀 안새사과 락양천마 락양쵸링 불핑산쉬나무갱이 감친붉은팥 다리원추리 홍핑고추 부핑곶감 린통화정감 락양두충나무
국가공상관리국					
石榴 茶 花椒(调味品) 花椒(调味品) 苹果	쓰류 차 화쵸 화쵸 핑귀	석류 차 산초 산초 사과	小米 干枣 鲜枣 茶 茶	썩미 간조 싼조 차 차	좁쌀 마른대추 풋대추 차 차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干枣	간조	마른대추	乌鸡	우지	당닭
豆腐干	간떠우푸	마른두부	荞面饅飴	쇼맨허허	메밀국수
농업부					
山阳九眼莲	Shanyang jiuyanlian	산양구안 연	灞桥櫻桃	Baoqiao yingtao	파교 앵두
米脂小米	Mizhi xiaomi	미피 좁쌀	汉中冬韭	Hanzhong dongjiu	한중동 부추
阎良相枣	Yanliang xiangzao	염량 대추	佳县红枣	Jiaxian hongzao	가현 대추
彬州梨	Binzhou li	빈주 배	白河木瓜	Baihe mugua	백하 모과
兴平瓮中黑猪	Xingping guanzhong heizhu	흥평관중 흑돼지	城固蜜桔	Chenggu miju	성고 귤
横山大明绿豆	Hengshan daming lvdou	횡산 대명 녹색 콩	靖边马铃薯	Jingbian malingshu	정변 감자
丹凤核桃	Danfeng hetao	단풍 호두	汉中白猪	Hanzhong baizhu	한중 흰 돼지
蓝田大杏	Lantian daxing	란전 살구	孝义湾柿饼	Xiaoyiwan shibing	효의만 꽃감
宁陕香菇	Ningshan xianggu	영협 버섯	王莽鲜桃	Wangmang xiantao	왕망 씨엔 복숭아
商南茶	Shangnan cha	상남 차			

감숙성

국가감사검역국					
康县黑木耳	강셴헤이무얼	강현목이버섯	甘谷辣椒	간구라쵸	감곡고추
秦安蜜桃	평안미틀	진안수밀도	瓜州蜜瓜	과저우미과	과주꿀박
秦安花椒	평안화조	진안산초	成县核桃	청셴허도우	성현호두
花牛苹果	화뉴핑귀	화소사과	酒泉洋葱	쥬쥘양충	주첸양과
武都油橄榄	우두유간란	무도올리브	康县龙神茶	강셴룽선차	강현룽신차
静宁苹果	징닝핑귀	징녕사과	民乐紫皮大蒜	민러즈피다완	민라자색껍질마늘
环县荞麦	환셴쵸마이	환현메밀	礼县苹果	리셴핑귀	예현사과
民勤甘草	민린간초	민린감초	平凉金果	핑량진귀	핑량금과
民勤蜜瓜	민린미과	민린꿀박	庆阳黄花菜	칭양황화차이	칭양황화채
小口大枣	쇼우커우다조	소구대추	定西马铃薯脱毒种薯	딩시마링수튀두중수	정서감자탈독종서
玉门酒花	위민쥬화	옥문술꽃	定西芪芪扶正药品	딩시진치푸정요우핀	정서정기약품
兰州百合	란저우바이허	란주백합	苦水玫瑰及玫瑰香料	쿠슈이메이귀이지	위액장미맛장미향료
礼县大黄	리셴다황	예현대황	礼县大黄	리셴다황	예현대황
两当狼牙蜜	량당랑야미	양당	陇西白条党参	룽시바이토탈당선	농서도체지육상당인삼
临洮大雨花	린조다리화	임조천축모란	陇西黄芪	룽시황치	농서황기
临泽小枣	린저쇼우조	임택대추	陇西腊肉	룽시라러우	농서납육
龙神茶	룽신차	룽신차	岷归及其制品	민귀이지치즈핀	민귀미트제품
文县纹党	윈셴윈당	문현문당	渭源白条党参及其制品	위원웨이토탈당선	위원도체지육상당
西和半夏	시허반샤	서화반하	渭源马铃薯种薯	위원마링수중수	위원감자씨
국가공상관리국					
兰州百合	란저우바이허	란주백합	陇西黄芪	룽시황치	농서황기
苦水玫瑰	쿠슈이메이귀이	위액장미	临洮马铃薯	린조마링수	임조감자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平凉金果	핑량진귀	핑량금과	渭源白条党参	웨이웬바이토탄선	위원상당인삼
平凉红牛	핑량홍뉴	핑량홍우	靖远羊羔肉	징원양고러우	징원양고기
平凉红牛	핑량홍뉴	핑량홍우	东乡手抓羊肉	둥샹서우좌양러우	둥향양고기
华亭独活	화팅두회	화정독화	刘家峡红枣	류자샤홍조우	류가협붉은대추
华亭大黄	화팅다황	화정대황	刘家峡西红柿	류자샤시홍스	류가협토마토
华亭核桃	화팅허토투	화정호두	和政啤特果	허정피터귀	화정피특과
秦安蜜桃	평안미톨	진안꿀복숭아	康县黑木耳	강샹헤이무얼	강현목이버섯
临泽小枣	린저쇼조우	임택대추	武都橄榄油	우두간란여우	목도올리브
岷县当归	민셴당귀	민현당귀	民勤甘草	민러간초	민근감초
定西马铃薯	딩시마링수	정서감자	陇西白条党参	룽시바이토탄선	농서상당인삼

농업부

庆阳苹果	Qingyang pingguo	경양 사과	敦煌葡萄	Dunhuang putao	둔황 포도
瓜州西瓜	Guazhou xigua	과주 수박	岷县蕨麻猪	Minxian juema zhu	민현 멧돼지
哈达铺当归	Hadapu danggui	하달포 당귀	瓜州蜜瓜	Guazhou migua	과주 박
武都红芪	Wudu hongqi	무도 붉은 미나리	瓜州西瓜	Guazhou xigua	과주 오이
板桥白黄瓜	Banqiao baihuanggua	반교 흰 오이	武都红芪	Wudu hongzhi	무도 홍 황기
嘉峪关洋葱	Jiayuguan yangcong	가옥관 양파	敦煌李广杏	Dunhuang liguangxing	둔황리광 살구
庆阳黄花菜	Qingyang huanghuacai	경양 원추리	渭源白条党参	Weiyuan baitiao dangshen	위원백조 당삼
嘉峪关	Jiayuguan yemawan	가옥관야마만 수박	宕昌党参	Dangchang dangshen	탕창 당삼
野麻湾西瓜	Yemaowan xigua		肃南甘肃高山细毛羊	Sunan gansu gaoshan xiyangmao	숙남감숙고산세모양

청해성

국가검사검역국

湟源陈醋	황원천추	황원진초	热贡唐卡	러궁탕카	열궁탕가
茶卡盐	차카염	차가염	昆仑玉	쿤룬위	곤룬옥
藏毯	장탄	장담요	青海冬虫夏草	칭하이동충사초	칭해동충하초
互助青稞酒	후주칭커쥬	호조쌀보리술	青海牦牛及系列产品	칭하이모우유지시래찬런	칭해야크릿 시라즈제품
青海手工藏毯	칭하이서우궁장탄	칭해수동장담요			

국가공상관리국

互助八眉猪	후주바메이주	호조팔매돼지	门源菜籽油	멍원차이즈여우	문원채유
乐都紫皮大蒜	러두즈피다완	악도자색껍질마늘	贵德辣椒	귀이더라쵸	귀덕고추
祁连黄蘑菇	치렌황미구	기런노란버섯	玉树虫草	위수충초	옥수충초

농업부

苏呼欧拉羊	Suhu'oula yang	수호구랍 양	乐都长辣椒	Ludu changlajiao	락도 고추
河曲马	Hequ ma	하곡 말	柴达木枸杞	Chaidamu gouqi	시달목 탕자나무
乐都紫皮大蒜	Ledu zipi dasuan	락도자피 마늘	天峻牦牛	Tianjun maoniu	천준 야크
乐都大樱桃	Ledu dayingtao	락도 앵두	乌兰茶卡羊	Wulan chaka yang	오란차잡 양

한문	중국어	한국어	한문	중국어	한국어
----	-----	-----	----	-----	-----

서장자치구

농업부

波密天麻	Bomi tianma	파밀 마	昌果红土豆	Changguo hongtudou	창과 야콘
------	-------------	------	-------	--------------------	-------

영하회족자치구

농업부

银川鲤鱼	Yinchuan liyu	은천 잉어	宁夏大米	Ningxia dami	영하 백미
李岗西甜瓜	Ligangxi tiangua	이강서 참외	青铜峡辣椒	Qingtongxia lajiao	청통협 고추
沙湖大鱼头	Shahu dayutou	사호 생선 대가리	吴忠牛乳	Wuzhong niuru	오충 소 젖
西吉西芹	Xiji xiqin	서길 미나리	盐池西瓜	Yanchi xigua	염지 수박
固原葵花	Guyuan kuihua	고원 해바라기	青铜峡西瓜	Qingtongxia xigua	청통협 수박
盐池滩鸡蛋	Yanchitan jidan	염지탄 달걀	盐池甜瓜	Yanchi tiangua	염지 참외
中宁硒砂瓜	Zhongning xishagua	중영서사 박	盐池滩羊肉	Yanchitan yangrou	염지탄 양고기
彭阳辣椒	Pengyang lajiao	팽양 고추	盐池滩鸡	Yanchitan ji	염지탄 닭
西吉马铃薯	Xiji malingshu	서길마 방울 고구마	海原硒砂瓜	Haiyuan xishagua	해원서사 박
贺兰螺丝菜	Helan luosicai	하란나사 채	六盘山蚕豆	Liupanshan candou	육판산 잠두
大武口小公鸡	Dawukou xiaogongji	대무구소 병아리	涝河桥羊肉(清真)	Laoheqiao yangrou	로하고 양고기
马家湖西瓜	Majiahu xigua	마가호 수박	同心马铃薯	Tongxin malingshu	동심 감자
朝那乌鸡	Chaonuo wuji	조나 오골계	青铜峡番茄	Qingtongxia fanqie	청통협 토마토
盐池荞麦	Yanchi qiaomai	염지 메밀	张亮香瓜	Zhangliang xianggua	장량 참외
原州马铃薯	Yuanzhou malingshu	원주 감자	同心滩羊肉(清真)	Tongxintan yangrou (qingzhen)	동심탄 양고기
原州油用亚麻	Yuanzhou youyong yama	원주유용 마	涝河桥牛肉(清真)	Laoheqiao niurou (qingzhen)	로하고 소고기

신장웨이우얼자치구

농업부

巩留天山伊贝	Gongliu tianshan yibei	공유천산 조개	阜康蟠桃	Fukang pangtao	부강 반도나무
察布查尔大米	Chabucha'er dami	찰부찰이 백미	五工台红薯	Wugongtai hongshu	오공대 고구마
和田御枣	Hetian yuzao	화전 대추	石梯子洋葱	Shitizi yangcong	석제자 양파
哈纳斯黄豆	Hanasi huangdou	하납사 노란 콩	阿力玛里树上干杏	Alimali shushang ganxing	아력마리 살구
裕民	Yumin wuci honghua	육민무자 홍화	柳树泉大枣	Liushu quan dazao	유수천 대추
无刺红花					
皮亚勒玛甜石榴	Piyaqinma tianshiliu	피아근마감 석류	西山农牧场马铃薯	Xishan nongmunchang malingshu	서산농목장 감자
莫乎尔葡萄	Mohu'er putao	막호이 포도	六十八团大米	Liushiba tuan dami	68단 백미

저장성

농업부

温岭高橙	Wenling gaocheng	온영고 오렌지	天目青顶	Tianmu qingding	천목청정
建德草莓	Jiande caomei	검덕 딸기	同康竹笋	Tongkang zhusun	통강 죽순
秀洲携李	Xiuzhou zuili	수주주이오얏나무	建德草莓	Jiande caomei	건덕 딸기
奉化水蜜桃	Fenghua shuimitao	봉화수밀 수밀도	象山红柑桔	Xiangshan hong ganju	상산 홍귤

부록 5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등록 현황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홋카이도				
十勝川西長いも	とちかかわにしながいも	tokachikawanisinagaimo	토카치카와 니시 참마	참마
豊浦いちご	とようらいちご	toyoura ichigo	토요우라 딸기	딸기
大正メークイン	たいしょうめーくいん	taishow mekin	타이쇼 감자	감자
大正だいこん	たしょうだいこん	taishow daikonn	타이쇼 무우	무우
幌加内そば	ほろかないそば	horokanai soba	호로카나이 메밀	메밀
ほべつメロン	ほべつめろん	hobetsu melon	호베츠 메론	메론
鶴川ししゃも	むかわししゃも	mukawasi syamo	무가와시 빙어	빙어
はぼまい昆布しょうゆ	はぼまいこんぶしょうゆ	habomaikonbusyouyou	하보마이 다시마간장	간장
大正長いも	たいしょう ながいも	taishow nagaimo	타이쇼 참마	참마
苫小牧産ほっき貝	とまこまいさんほっきがい	tomakomaisannhokkigai	토마코마이상 호키 조개	조개
虎杖浜たらこ	こじょうはまたらこ	koshow tarako	코쇼 명란젓	젓갈
十勝川温泉	とちかがわおんせん	tokachigawa onsen	토카치가와 온센	온천
아오모리				
獄きみ	だけきみ	dakekimi	다케 키미	
たっこにんにく	たっこにんにく	takko ninniku	타코 닌니쿠	마늘
大間まぐろ	おおまぐろ	omamaguro	오오마 마구로	참치
이마라기				
本場結城紬	ほんばゆうきつむぎ	honba kitsumugi	홍바유기견직물	견직물
笠間焼	かさまやき	kasamayaki	카사마야키	도자기
이즈키				
塩原温泉	しおばらおんせん	siobara onsen	이오바라온센	온천
鬼怒川温泉	きぬがわおんせん	kinugawaonsen	키우카와온센	온천
川治温泉	かわじおんせん	kawajionsen	카와지온센	온천
군마				
高崎だるま	たかさきだるま	takasakidaruma	타카사키다루마	달마대사
上州牛	じょうしゅうぎゅう	jyousyuugyuu	쥬슈규	소고기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伊香保温泉	いかほおんせん	ikahonsen	이카호온센	온천	
草津温泉	くさつおんせん	kusatsuonsen	쿠사츠온센	온천	
十石みそ	じゅうこくみそ	jyuukokumiso	쥬코쿠미소	된장	
桐生織	きりゅうおり	kiryuuori	키류오리	섬유	
群馬の地酒	ぐんまのじざけ	gunmanojizake	군마노지자케	지역술	
嬭戀高原キャベジ	つまごこうげんきゃべつ	tsumago kougenkyabetsu	츠마고코우겐 카비지	양배추	
사이타마					
岩槻人形	いわつきにんぎょう	iwatsukiningyo	이와츠키닌교	인형	
草加せんべい	そうかせんべい	souka senbei	소우카센베이	과자	
武州正藍染	ぶしゅうしょうあいぞめ	busyusyouaizome	부슈쇼아이조메	감염색	
西川材	にしかわざい	nishikawazai	니시가와 목재	목재	
치바					
房州びわ	ぼうしゅうびわ	bousyubiwa	보슈 비과	비과	
八街産落花生	やちまたさんらっかせい	yachimatasanrakasei	야치마다산 땅콩	땅콩	
市川のなし	いちかわのなし	ichikawanonasi	이치카와노 배	배	
市川の梨	とみさとすいか	tomisatosuika	토미사토 수박	수박	
富里スイカ	やぎりねぎ	yagirinegi	야기리 과	과	
矢切ねぎ	こみなとおんせん	kominatoonsen	코미나토 온천	온천	
小湊温泉	あわ なのはな	awa nanohana	아와 유채	유채	
安房 菜の花	동경				
稻城の梨	いなぎのなし	inaginonashi	이나기노 배	배	
江戸甘味噌	えどあまみそ	edoamamiso	에도 아미미소	된장	
江戸押繪羽子板	えどおしえはごいた	edoosiehagoita	에도오시에 채(판자)	채	
江戸衣裳着人形	えどいしょうぎにんぎょう	edoisyugininngyou	에도이쇼기 인형	인형	
江戸木目込人形	えどきめこみにんぎょう	edokimekomininngyou	이데 키메코미 인형	인형	
江戸木版畫	えどもくはんか	edomokuhannka	에도 목판화	목판화	
江戸甲冑	えどかちゅう	edokatyu	에도갑골	갑골	
江戸指物	えどさしもの	edosasimono	에도장식물	장식물	
江戸切子	えどきりこ	edokiriko	에도 세공	세공	
江戸からかみ	えどからかみ	edokarakami	에도 종이	종이	
東京銀器	とうきょうぎんき	tokyoginki	도쿄 긴키	은그릇	
東京染め小紋	とうきょうそめこもん	tokyosomokomon	도쿄 염색	염색	
江戸更紗	えどさらさ	edosarasa	에도 사라사	사라사	
東京無地染	とうきょうむじそめ	tokyomujsome	도쿄 무지소메	무지염	
江戸小紋	えどこもん	edokomonn	에도 염색	염색	
가나가와					
小田原蒲鉾	おだわらかまぼこ	odawarakamaboko	오다하라 어묵	어묵	
小田原かまぼこ	まつわさば	matsuwasaba	마츠와 고등어	고등어	
松輪サバ	ゆがわらおんせん	yugawaraonsen	야가와라온센	온천	
湯河原温泉	あしがらちゃ	asigaratya	아시가와차	차	
足柄茶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横浜中華街 小田原ひもの 鎌倉彫	よこはまちゅうかがい おだはらひもの かまくらぼり	yokohamatyukagai odaharahimono kamakurabori	요코하마 중화요리가 오다하라히모노 카마쿠라 칠기	중화요리가 건어물 칠기
니가타				
小千谷縮 小千谷紬 新潟清酒 安田瓦 新潟茶豆 越後上布 加茂桐箆筒 村上木彫堆朱 越後湯澤温泉	おちやちちみ おちやつむぎ にいがたせいしゅ やすだかわら にいがたちゃまめ えちごじょうふ かもきりたんす むらかみきぼりついしゅ えちごゆざわおんせん	ojitachijimi ojiyatsumugi nigataseisyu yasudakawara nigatastyamame echigijyohu kamokiridansu murakamikiboritsuisyu echigo yuzawaonsen	오지야 삼베 오지야 명주 니가타 청주 야스다 기와 니가타차 콩 에치고 마직물 가모키리웃장 무라카미목조칠 에치고 유자와 온천	삼베 명주 청주 기와 콩 마직물 옷장 칠(퇴주) 온천
야마나시				
甲州手彫印章 やはたいも 南部の木	こうしゅうてぼりいんしょう やはたいも なんぶのき	kosyuteboriinsyou yahataimo nanbunoki	고슈테보리 도장 야하타 고구마 난부노 나무	도장 고구마 목재
나가노				
市田柿 蓼科温泉 信州鎌 飯山仏壇 木曾漆器 佐久鯉	いちだかき たてしなおんせん しんしゅうかま いいやまぶつだん きそしっき さくごい	ichidakaki tatesinaonsen sinsyukama iiyamabutsudan kisosikki sakugoi	이치다가키 다케시오 온천 신슈 지느러미 이야마 부츠단 기소 식기 사쿠 어	감 온천 지느러미 불단 식기 잉어
도야마				
入善ジャンボ西瓜 黒部米 高岡仏具 高岡銅器 加積りんご 富山名産 昆布巻かまぼこ	にゅうぜんしゃんぼすいか くろべまい たかおかぶつぐ たかおかどうき かづみりんご とやまめいさん こんぶまきかまぼこ	nyuzenjyanbosuika korobemai takaokabutsugu takaokadouki kajumiringo toyamameisan konbumakikamaboko	뉴젠잔보 수박 쿠로베 쌀 타카오카 불구 타카오카 동기 가즈미 사과 도야마메이산 콘부마키 어묵	수박 쌀 불고기구 동그릇 사과 어묵
이시가와				
加賀みそ 金澤仏壇 七尾仏壇 中島菜 牛首紬 山代温泉 片山津温泉 和倉温泉 加賀友禪 金澤箔 九谷焼	かがみそ かなざわぶつだん ななおぶつだん なかじまな うしくびつむぎ やましろおんせん かたやまざうんせん わくらおんせん かがゆうぜん かなざわはく くたにやき	kagamiso kanazawabutsudan nanaobutsudan nakajimana usikubitsumugi yamasiroonsen katayamazuonsen wakuraonsen kagayuzen kanazawahaku kutaniyaki	가가 된장 가나자와 불단 나나오 불단 나카지마 채소 우시티비 명주 야미시로 온천 가타야마즈 온천 와구라 온천 가가 날염 가나자와 금박 구타니 도자기	된장 불단 불단 채소 명주 온천 온천 온천 날염 금박 도자기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山中温泉	やまなかおんせん	yamanakaonsen	야마나카 온천	온천
輪島塗	わじまぬり	wajimanuri	와지마산 칠기	칠기
粟津温泉	あわずおんせん	awazuonsen	아와즈 온천	온천
大野醤油	おおのしょうゆ	onosyouyu	오오노 간장	간장
能州紬	のうしゅうつむぎ	nosyutsumugi	오슈 명주	명주
美川仏壇	みかわぶつだん	mikawabutsudan	미가와 불단	불단
田鶴浜建具	たつるはまたてぐ	tatsuruhamatategu	다츠루하마 문	문
加賀蒔繪	かがまきえ	kagamakie	가가 옷칠공예	옷칠공예
小松瓦	こまつかわら	komatsukawara	고마즈 기와	기와
加賀野菜	かがやさい	kagayasai	가가 채소	채소
加賀太ききゅうり	かがやぶどきゅうり	kagayahudokukyuri	가가야후쿠 오이	오이
加賀れんこん	かがれんこん	kagarenkon	가가 연근	연근
가나자와				
能登牛	のとうし	notousi	노도 소	소
能登大納言	のとだいごん	otodaigon	노도 팔	팔
越前漆器	えちぜんしっき	echizensikki	에치젠 식기	식기
越前竹人形	えちぜんたけにんぎょう	echizentakeningyo	에치젠 대나무인형	인형
若狭鱈かれい	わかさかれい	wakasakarei	와카사 가자미	가자미
若狭塗箸	わかさぬりばし	wakananuribasi	와카사 옷칠젓가락	옷칠 젓가락
越前瓦	えちぜんかわら	echizenkawara	에치젠 기와	기와
越前がに	えちぜんがに	echizengani	에치젠 게	게
若狭ぐじ	わかさぐじ	wakasaguji	와카사 제비뽑기	제비뽑기
若狭ふぐ	わかさふぐ	wakasahugu	와카사 복어	복어
越前打刃物	えちぜんうちはもの	echizenuchihamono	에치젠우치 칼	칼
越前織	えちぜんおり	echizenori	에치젠 섬유	섬유
越前和紙	えちぜんわし	echizenwasi	에치젠 종이	일식종이
기후				
飛騨一位一刀彫	ひだいちいとうぼり	hidaichiitobori	이다치오 부조	부조
岐阜提灯	ぎふちようちん	gihuchochin	기후 제등	등
飛騨牛乳	ひだぎゅうにゅう	hidagyunyu	히다 우유	우유
山岡細寒天	やまおかほそかんてん	yamaokahosokanten	야마오카 한천	한천
下呂温泉	げろおんせん	geroonsen	게로 온천	온천
飛騨ヨーグルト	ひだよーぐると	hidayoguruto	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
美濃焼	ものやき	monoyaki	모노 도자기	도자기
飛騨高原牛乳	ひだこうげんぎゅうにゅう	hidakougengyunyu	히다코겐 우유	우유
飛騨春慶	ひだしゅんけい	hidasyunkei	히다 붉은 옷칠공예	옷칠 공예
飛騨アイスクリーム	ひだあいすくりーむ	hidaaisukurimu	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飛騨牛	ひだぎゅう	hidagyu	히타 소	소
郡上鮎	くじょうあゆ	kujoayu	쿠조산천어	산천어
飛騨のさるぼぼ	ひだのさるぼぼ	hidanosarubobo	히다노사루보보	
美濃焼	みのやき	minoyaki	미노 도자기	도자기
みずなみ焼	みずなみやき	mizunamiyaki	미즈나미 도자기	도자기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飛驒の家具	ひだのかぐ	hidanokagu	히다노 가구	가구
飛驒・高山の家具	ひだ・たかやまのかぐ	hida・takayamanokagu	히다・타카야마노 가구	가구
美濃白川茶	みのしらかわちゃ	minosirakawatya	미노시라가와 차	차
關の刃物	せきのはもの	sekinohamono	세키노 칼	칼
飛驒の酒	ひだのさけ	hidanosake	히다노 술	술
長良川温泉	ながらがわおんせん	nagaragawaonsen	나가라가와 온천	온천
美濃和紙	みのわし	minowasi	미노 일식종이	일식종이
飛驒ほうれんそう	ひだほうれんそう	hidahourenso	히다 시금치	시금치
飛驒トマト	ひだとまと	hidatomoto	히다 토마토	토마토
東濃檜	とうのうひのき	tonohinoki	토노 노송	노송
시즈오카				
駿河湾櫻えび	するがわんさくらえび	surugawansakuraebi	스루가완사쿠라 새우	새우
由井櫻えび	ゆいさくらえび	yuisakuraebi	유이사쿠라 새우	새우
焼津鯉節	やいづかつおぶし	yaidukatsuobusi	야이즈 가다랑어포	가다랑어포
丹那牛乳	たんなぎゅうにゅう	tannagyunyuu	단나규뉴	우유
川根茶	かわねちゃ	kawanetya	카와네 차	차
三ヶ日みかん	みっかびみかん	mikkabikan	미카비 감귤	감귤
静岡茶	しずおかちゃ	sizuokatya	시즈오카 차	차
駿河漆器	するがしっき	surugasikki	스루가 식기	식기
沼津ひもの	ぬまずひもの	numazuhimono	누마즈 건어물	건어물
掛川茶	かけがわちゃ	kakegawatya	카게가와차	차
伊東温泉	いとうおんせん	itoonsen	이토온센	온천
伊豆長岡温泉	いずながおかおんせん	izunagaokaonsen	이즈나가오카온센	온천
아이치				
三州瓦	さんしゅうかわら	sansyukawara	산슈가와라	도자기
常滑焼き	とこなめやき	tokonameyaki	토코나메 도자기	도자기
有松鳴海紋	ありまつなるみしぼり	arimatsunarumisibori	아리마츠나루 염색	염색
三河木綿	みかわもめん	mikawamomen	미가와 목면	목면
豊橋筆	とよはしふで	toyohashihude	토요하시후데	붓
一色産うなぎ	いしきさんうなぎ	isikisanunagi	이시키산 우나기	장어
名古屋仏壇	なごやぶつだん	nagoyabutsudan	나고야부츠단	불단
蒲郡みかん	がまごおりみかん	gamagoorimikan	가마고오리미칸	감귤
三河仏壇	みかわぶつだん	mikawabutsudan	미가와부츠단	불단
西尾の抹茶	にしおのまっちゃ	nisionomacha	니시오노마차	말차
祖父えぎんなん	そぶえぎんなん	sobueginnan	소부에긴난	금귤
尾張七宝	おわりしっぽう	owarisippori	오와시 칠보공예	칠보공예
미에				
松阪肉	まつさかにく	matsusakaniku	마츠사카 육류	육류
松阪牛	まつさかうし	matsusakausi	마츠사카 소	소
大内山牛乳	おおうちやまぎゅうにゅう	ouchiyamagyunyuu	오우치야마 우유	우유
伊勢茶	いせちゃ	isechya	이세 차	차
伊勢たくあん	いせたくあん	isetakuan	이세 단무지	단무지
伊勢ひじき	いせひじき	isehijiki	이세 톳	톳
伊賀くみひも	いがくみひも	igakumihimo	이가 끈목	끈
伊勢うどん	いせうどん	iseudon	이세 우동	우동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みえ豚	みえぶた	miebuta	미에 돼지	돼지
伊勢赤どり	いせあかどり	iseakaori	이세 붉은닭	붉은닭
四日市萬古焼	よっかいちばんこやき	yokkaichibankoyaki	요카이치방코 도자기	도자기
伊勢型紙	いせかたかみ	isekatakami	이세가타 종이	종이
시가				
御琴温泉	おごとおんせん	ogotoonsen	오고토 온천	온천
近江牛	おうみぎゅう	oumigyu	오우미 소	소
琵琶湖産鮎	びわこさんあゆ	biwakosanayu	비와코산 산천어	산천어
信樂焼	しがらきやき	sigarakiyaki	시가라키 도자기	도자기
近江の麻	おうみのあさ	ouminoasa	오우미노 마	마
近江ちぢみ	おうみちぢみ	oumichijimi	오우미 잔주름 잡힌 옷감	옷감
교토				
間人がニ	たいざがに	taizagani	다이사 게	게
舞鶴かまぼこ	まいづるかまぼこ	maizurukamaboko	미아즈루 어묵	어묵
京人形	きょうにんぎょう	kyoningyou	교인형	전통인형
鴨川納涼床	かもがわのうりょうゆか	kamogawanoryoyuka	가모가와오로 마루	마루
京あられ	きょうあられ	kyouarare	교각뚝썰기	썰기
京おかき	きょうおかき	kyookaki	교말린떡	말린떡
京石工芸品	きょういしこうげいひん	kyoisikogei hin	교이시코게히	공예품
京仏壇	きょうぶつだん	kyobutsudan	교부즈단	불단
京都名産すぐき	きょうとめいさんすぐき	kyotomeisansuguki	교토메이산 장아찌	장아찌
京都名産千枚漬	きょうとめいさんせんま いづけ	kyotomeisansenmaizuke	교토메이산센마이 장아찌	장아찌
京つけもの	きょうつけもの	kyozukemono	교장아찌	장아찌
京漬物	きょうつけもの			
北山丸太	きたやままるた	kitayamamruta	키타야마 원목	원목
京雛	きょうひな	kyobina	교남녀한쌍인형	인형
京印章	きょういんしょう	kyoinsyo	교도장	도장
京仏具	きょうぶつぐ	kyobutsugu	교불구	불교기구
京甲冑	きょうかっちゅう	kyokacho	교갑골	
京房ひも	きょうふさひも	kyohusahimo	교후사끈	끈
京くみひも	きょうくみひも	kyokumihimo	교쿠미히모	끈
京黒紋付染	きょうくろもんつきぞめ	kyokoromonnzukizome	교쿠로몬츠키조메	염색
京表具	きょうひょうぐ	kyohyogu	교효구	표구
京小紋	きょうこもん	kyokomon	교 자잘한 문양	문양
京友禅	きょうゆうぜん	kyoyuzen	교날염	날염
京仕立	きょうしたて	kyositate	교 옷만드는 법	옷제작법
西陣爪搔本綴織	にしじんつめかきほんつ づれおり	nisijintsumekakihontsu zureori	니시진츠메가키온즈즈 레 섬유	섬유
西陣御召	にしじんおめし	nisijinomesi	니리진 견직물	견직물
西陣金襴	にしじんきんらん	nisijinkinran	니시진 금란	금란
京鹿の子絞	きょうかのしぼり	kyokanosibori	교카노 염색	염색
京扇子	きょうせんす	kyosensu	교 부채	부채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京うちわ	きょううちわ	kyotiya	교 그릇	그릇
京念珠	きょうねんじゆ	kyonenju	교 염주	염주
京味噌	きょうみそ	kyomiso	교 된장	된장
宇治茶	うじちゃ	ujitya	우지 차	차
京都肉	きょうとにく	kyotoniku	교토 육류	육류
京飴	きょうあめ	kyoame	교 사탕	사탕
京せんべい	きょうせんべい	kyosenbei	교 과자	과자
京石塔	きょうせきとう	kyosekitou	교 석탑	석탑
京都米	きょうとまい	kyotomai	교토쌀	쌀
京の伝統野菜	きょうのでんとうやさい	kyonodentoyasai	교노덴토 채소	채소
京とうふ	きょうとうふ	kyoutotoufu	교 두부	두부
詠京染	あつらえきょうぞめ	atsuraegyozome	아츠라에교 염색	염색
京たんご梨	きょうたんごなし	kyotangonasi	교탄고 배	배
京菓子	きょうがし	kyogasi	교 과자	과자
湯の花温泉	ゆのはなおんせん	yunohanaonsen	유노하나 온천	온천
京焼・清水焼	きょうやき・きよみずやき	kyoyaki・kiyomizuyaki	교도자기・교미즈 도자기	도자기
京たたみ	きょうたたみ	kyotatami	교 다다미	다다미
北山杉	きたやますぎ	kitayamasugi	키타야마 삼나무	삼나무
京の色紙短冊和本帖	きょうのしきしたんざく	kyonosikisitanzakuwa	교노시키시탄자쿠와본 담본	서책
京漆器	わばんちよう	bontyo	교 식기	식기
京竹工藝	きょうしっき	kyosikki	교 죽세공예	공예
京象嵌	きょうたけこうげい	kyotakekoge	교 상감	상감
京陶人形	きょうぞうがん	kyozougan	교토닌교	인형
満願寺甘とう	きょうとうにんぎよう	kyotouningyo	만간지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	단식품을 좋아하는 사람
京和装小物	まんがんじあまとう	mangajiamato	교와 부속품	부속품
京七宝	きょうわそうもの	kyowasoukomono	교 칠보공예	공예
京染	きょうしっぽう	kyosippou	교 조메	염색
丹後とり貝	きょうぞめ	kyozome	단고토리 조개	조개
	たんごとりがい	tangotorigai		
오사카				
大阪欄間	おおさからんま	osakaranma	오사카 창	창문
和泉木綿	いずみもめん	izumimomen	이즈미 목면	목면
泉州タオル	せんしゅうたおる	sensyutaoru	센슈타오루	수건
大阪泉州桐箆笥	おおさかせんしゅうきり だんす	osakasensyukiridansu	오사카센슈우키리 서랍장	서랍장
大阪仏壇	おおさかぶつだん	osakabutsudan	오사카 불단	불단
泉州水なす	せんしゅうみずなす	sensyumizunasu	센슈미즈 가지	가지
堺刃物	さかいはもの	sakaihamono	사카이 칼	칼
堺打刃物	さかいはもの	sakaihamono	사카이 칼	칼
泉だこ	いずみだこ	izumidako	이즈미 문어	문어
효고현				
豊岡靴	とよおかかばん	toyookakaban	토요오카 가방	가방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播州毛鉤	ばんしゅうけはり	bansyukehari	반슈 제물낙시	낙시
淡路瓦	あわじかわら	awajikawara	아와시 기와	기와
豊岡杞柳細工	とよおかきりゅうざいく	toyookakiryuzaiiku	토요오카키류 세공	세공
灘の酒	なだのさけ	nadanosake	나타노 술	술
城崎温泉	きのさけおんせん	kinosakeonsen	키노사케 온천	온천
加西ゴールデンベリーA	かさいごーるでんべりーA	kasaigoaldenberi A	가사이 골덴베리A	골덴베리A
明石大鯛	あかしだい	akasidai	아카시 도미	도미
龍野淡口醤油	たつのうすくちしょうゆ	tatsunousukuchishoyuyu	다츠노우스쿠치간장	간장
三田肉	さんだにく	santaniku	산다 육류	육류
三田牛	さんだぎゅう	sandagyū	산다 소	소
須磨海苔	すまのり	sumanori	스마 김	김
神戸ビーフ	こうべびーふ	koubebi-hu	코우베 비프	소고기
神戸肉	こうべにく	koubeniku	코우베 육류	육류
神戸牛	こうべぎゅう	koubegyū	코우베 소	소
播州そろばん	ばんしゅうそろばん	bansyusoroban	반슈 주판	주판
但馬牛	たじまうし	dasimausi	다시마 소	소
但馬ビーフ	たじまびーふ	dasimabi-hu	다시마 비프	소고기
但馬牛	たじまぎゅう	dasimagyū	다시마 소	소
淡路ビーフ	あわじびーふ	awajibi-hu	아와시 비프	소고기
有馬温泉	ありまおんせん	arimaonsen	아리마 온천	온천
播州織	ばんしゅうおり	bansyuori	반슈오 섬유	섬유
三木金物	みきかなもの	mikikanamono	미키 철물	철물
東上産山田錦	とうじょうさんやまだにしき	tojyosanyamadanisiki	토조산야마다 비단	비단
播州針	ばんしゅうはり	bansyubari	반슈 주사	주사
나라현				
高山茶釜	たかやまちゃせん	takayamachasen	타카야마 차통	차통
吉野材	よしのざい	yosinozai	요시노 목재	목재
吉野本葛	よしのほんくず	yosinohonkuzu	요시노혼 칩	칩
吉野葛	よしのくず	yosinokuzu	요시노 칩	칩
大和肉鶏	やまとにくどり	yamatonikudori	야마토니쿠 닭	닭
吉野杉	よしのすぎ	yosinosugi	요시노 삼나무	삼나무
吉野檜	よしのひのき	yosinohinoki	요시노 노송	노송
吉野割箸	よしのわりばし	yosinowaribari	요시노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
吉野杉箸	よしのすぎばし	yosinosugidasi	요시노 삼나무젓가락	삼나무젓가락
平群の小菊	へべりのこぎく	heberinpkogiku	에베리노코 소국	소국
結崎ネブカ	ゆうざぎねぶか	yuzakinebuka	야우자키네부카	
와가야마				
有田みかん	ありだみかん	aridamikan	아리다 감귤	감귤
紀州みなべの南高梅	きしゅうみなべのなんこうめ	kisyuminabenonankoume	키슈미나베노난코 매실	매실
紀州備長炭	きしゅうびんちょうたん	kisyubintyoudan	키슈 하얀숯탄	숯탄
和歌山ラーメン	わかやまらーめん	wakayamaramen	와카야마 라면	라면
しもつまかん	しもつまかん	simotsumikan	시모즈 감귤	감귤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紀州うすい	きしゅううすい	kisyuusui	키슈 얇은종이	종이
すみさヶんけん鯉	すみさヶんけんかつお	susamikenkenkatsuo	스사이켄켄 가물치	가물치
紀州簞笥	きしゅうたんす	kisyutansu	키슈 옷장	옷장
紀州梅干	きしゅううめぼし	kisyuumebosi	키슈 매실장아찌	매실장아찌
南紀白浜温泉	なんきしらまおんせん	nankisirahamaonsen	난키시라하마 온천	온천
도토리현				
三朝温泉	みささおんせん	misasaonsen	미사사 온천	온천
東伯和牛	とほくわぎゅう	tohakuwagyū	토하쿠와 소	소
東伯牛	とうはくぎゅう	tohakugyū	토하쿠 소	소
因州和紙	いんしゅうわし	insyuwasi	인슈 일식종이	일식종이
시마테현				
石州瓦	せきしゅうかわら	sekisyukawara	세키슈 기와	기와
しまね和牛	しまねわぎゅう	simanewagyū	시마네와 소	일식소
玉造温泉	たまつくりおんせん	tamatsurionsen	타마츠크리 온천	온천
十六島海苔	うっぷるいのり	uppuruinori	우푸루이 김	김
多岐いちじく	たきいちじく	takichijiku	타키 무화과	무화과
오카야마현				
岡山白桃	おかやまはくとう	okayamahakuto	오카야마 백도	백도
千屋牛	ちやぎゅう	chiyagyū	치야 소	소
湯郷温泉	ゆのごうおんせん	yunogoonsen	야노고 온천	온천
湯原温泉	ゆはらおんせん	yuharaonsen	야하라 온천	온천
備前焼	びぜんやき	bizenyaki	비젠 도자기	도자기
히로시마현				
福山琴	ふくやまこと	hukuyamakoto	후쿠야마 거문고	거문고
広島みかん	ひろしまみかん	hirosimamikan	히로시마 감귤	감귤
広島酒	ひろしまのさけ	hirosimanosake	히로시마 술	술
広島はっさく	ひろしまはっさく	hirosimahasaku	히로시마 감귤	감귤
府中家具	ふちゅうかぐ	huttyukagu	후츠히 가구	가구
広島かき	ひろしまかき	hirosimakaki	히로시마 굴	굴
高根みかん	こうねみかん	kounemikan	코우네 감귤	감귤
広島レモン	ひろしまれもん	hirosimalemon	히로시마 레몬	레몬
広島針	ひろしまはり	hirosimahari	히로시마 주사	주사
びんご壘表	びんごたたまおもて	bingotatamiomote	빈고타 골풀돗자리	골풀돗자리
三次ピオーネ	みよしびおーね	miyosipio-ne	미요시 피요네	
야마구치현				
下關うに	しものせきうに	simonosekiuni	시모노세키 성게알	성게알
北浦うに	きたうらうに	kitaurauni	키타우라 성게알	성게알
長門ゆずきち	ながとゆずきち	nagatoyuzukichi	나가노 유자	유자
厚保くり	あつくり	atsukuri	아츠 밤	밤
下關ふく	しものせきふく	simonosekihuku	시모노세티 복어	복어
長門湯本温泉	ながとゆもとおんせん	nagatoyutoonsen	나가노유모토 온천	온천
도쿠시마현				
渭東ねぎ	いとうねぎ	itounegi	이토 파	파
なると金時	なるときんとき	narutokichintoki	나루토 금시계	금시계
徳島唐木仏壇	とくしまからきぶつだん	tokusimakarakibutsudan	토쿠시마카라키불단	불단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鳴門らっきょ	なるとらっきょ	narutorakyo	나루토 락교	락교
阿波しじら織	あわしじらおり	awasijiraori	아와시지라 섬유	섬유
阿波山田錦	あわやまだにしき	awayamadanisiki	아와야마다 비단	비단
카가와현				
庵治石	あじいし	ajiisi	아지 돌	돌
ひけた鱈	ひけたぶり	hiketaburi	히케타 방어	방어
에히메현				
西字和みかん	にしうわみかん	nisiuwamikan	이니우와 감귤	감귤
眞穴みかん	まあなみかん	maanamikan	마아나 감귤	감귤
菊間瓦	きくまあわら	kikumaawara	키쿠마 기와	기와
西條の七草	さいじょうのななくさ	saijyononanakusa	사이쥬노 일곱가지풀	풀
今治タオル	いまばりたおる	imabaritaoru	이마바리 수건	수건
道後温泉	どうごおんせん	dougoonsen	도고 온천	온천
宇和島じゃこ天	うわじまじゃこてん	uwajimajakoten	우와시마자코텐	
戸島ぶり	とじまぶり	tojimaburi	토시마 방어	방어
고지현				
土佐打刃物	とさうちはもの	tosauchihamano	토사우치 칼	칼
四万十川の青のり	しまんとがわのあおのり	simantogawanoaonori	시만토가와노 파래김	파래김
四万十川の青さのり	しまんとがわのあおさのり	simantogawanoaosanori	시만토가와노 파래김	파래김
徳谷トマト	とくだにとまと	tokutanitomoto	토쿠타니 토마토	토마토
후쿠오카현				
博多人形	はかたにんぎょう	hakataningyo	하카타 인형	인형
小石原焼	こいしはらやき	koisiharayaki	코이시하라 도자기	도자기
博多織	はかたおり	hakataori	하카타 섬유	섬유
上野焼	あがのやき	aganoyaki	아가노 도자기	도자기
八女提灯	やめちようちん	yamechochin	야메 제등	
合馬たけのこ	おうまたけのこ	oumatakenoko	오우마 죽순	죽순
八女茶	やめちゃ	yamecha	야메 차	차
福岡の八女茶	ふくおかのやめちゃ	hukuokanoyamecha	후쿠오카노야메차	차
八女福島仏壇	やめふくしまぶつだん	yamehukusimabutsudan	야메후쿠시마불단	불단
博多なす	はかたなす	hakatanasu	하카타가지	가지
久留米かすり	くるめかすり	kurumekasuri	구루메 명주	명주
久留米米緋	くるめかすり			
原鶴温泉	はらづるおんせん	harazuruonsen	하라즈루 온천	온천
사가현				
神崎そうめん	かんぎきそうめん	kanzakisomen	간자키 소면	소면
佐賀のり	さかのり	saganori	사가 김	김
伊万里梨	いまりなし	imarinasi	이마리 배	배
佐賀産和牛	さがさんわぎゅう	sagasannwagyu	사가산와 소	소
小城羊羹	おぎようかん	ogiyoukan	오고 양갱	양갱
うれしの茶	うれしのちゃ	uresinocha	우리시노 차	차
唐津焼	からつやき	karatsuyaki	카라츠 도자기	도자기
나가사키현				
長崎カステラ	ながさきかすてら	nagasakiastera	나가사키 카스테라	카스테라
五島うどん	ごとううどん	gotoudon	고토우동	우동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五島手延うどん	ごとうてのべうどん	gototenobeudon	고토테노베 우동	우동
九十九島かき	きじゅうくしまかき	kijyukusimakaki	기쥬쿠시마 굴	굴
구마모토현				
球磨焼酎	くましょうちゅう	kimasyochu	구마 소주	소주
阿蘇たかな漬	あそたかなづけ	osotakanazuke	아소 갓장아찌	갓장아찌
熊本名産からし蓮根	くまもとめいさんからし のれんこん	kumamotomeisankaras inorenkon	구마모토메이산카라시 노 연근	연근
天草黒牛	あまくさくろうし	amakusakuroushi	아마쿠사 흑우	흑우
黒川温泉	くろかわおんせん	kurokawaonsen	쿠로가와 온천	온천
小國杉	おぐにすぎ	ogunisugi	오구니 삼나무	삼나무
くまもと疊表	くまもとたたみおもて	kumamototatamiomote	구마모토 돛자리	돛자리
오이타현				
關あじ	せきあじ	sekiaji	세키 전갱이	전갱이
關さば	せきさば	sekisaba	세키 고등어	고등어
大分麥焼酎	おおいたむぎしょうちゅう	oitamugisyochu	오이타무기 소주	소주
大分むぎ焼酎	おおいたむぎしょうちゅう	oitamugisyochu	오이타무기 소주	소주
豊後別府湾ちりめん	ぶんごべっふわんちりめん	bungobepuchirimen	분고벳부완 비단	비단
豊後牛	ぶんごぎゅう	bungogyu	분고 소	소
日田梨	ひたなし	hitanasi	히타 배	배
미야자키현				
宮崎牛	みやざきぎゅう	miyazakigyuu	미야자키 소	소
宮崎バーブ牛	みやざきはーぶぎゅう	miyazakihabugyu	미야자키 허브소	허브소
宮崎の本格焼酎	みやざきのほんかくしょう ちゅう	miyazakinohonkakusy ochu	미야자키노혼카쿠 소주	소주
北浦灘アジ	きたうらなだあじ	kitauranadaaji	키타우라나다 전갱이	전갱이
みやざきじ地頭鶏	みやざきじとっこ	miyazakijitoko	미야자키 닭	닭
가고시마현				
かごしま知覧茶	かごしまちらんちゃ	kagosimachirancha	카고시마 지란차	차
本場奄美大島紬	ほんばあまみつむぎ	honbaamamitsumugi	혼바아마미 날염	날염
薩摩焼	さつまやき	satsumayaki	사츠마 도자기	도자기
知覧茶	ちらんちゃ	chirancha	지란차	차
本場大島紬	ほんばおおしまつむぎ	honbaosimatsumugi	혼바오시마 날염	날염
川辺仏壇	かわなべぶつだん	kawanabebutsudan	카와나베 불단	불단
かけろまききび酢	かけろまきびす	kakeromakibisu	카케로마키키비 식초	식초
知覧紅	ちらんべに	chiranbeni	치란 홍화	홍화
鹿兒島黒牛	かごしまくろうし	kagosimakuroushi	카고시마 흑우	흑우
奄美黒糖焼酎	あまみくろとうしょうちゅう	amamikurotosyochu	아마미쿠로도 소주	소주
櫻島小みかん	さくらじまこみかん	sakurajimakomikan	사쿠라지마고 감귤	감귤
枕崎鯨節	まくらざきかつおぶし	makurazakikachtsuobusi	마쿠라자키 가다랑어포	가다랑어포
오кина와현				
石垣の塩	いしがきのしお	isigakinosio	이시가키오 소금	소금
沖縄そば	おきなわそば	okinawasoba	오кина와 메밀	메밀

원표기	히라가나	영어	한글	품목
琉球泡盛	りゅうきゅうあわもり	ryukyuawamori	류큐 특산소주	소주
琉球びんがた	りゅうきゅうびんがた	ryukyubingata	류큐 무늬염색	무늬 염색
首里織	しゅうおり	syuori	슈 섬유	섬유
本場久米島紬	ほんばくめじまつむぎ	honbakumejimatsumugi	혼바쿠메지마 날염	날염
沖縄黒糖	おきなわこくとう	okinawakokutou	오키나와 흑설탕	흑설탕
八重山かまぼこ	やえやまかまぼこ	yaemakamaboko	야에야마 어묵	어묵
石垣牛	いしがぎぎゅう	isigakigyū	이시가키 소	소
壺屋焼	つぼややき	tsuboyayaki	츠보야 도자기	도자기
宮古上布	みやこじょうふ	miyakojoyuhu	미야코 마	마
琉球かすり	りゅうきゅうかすり	ryukyukasuri	류큐 무늬직물	무늬 직물
琉球紆			오키나와아카 기와	기와
沖縄赤瓦	おきなわあかかわら	okinawaakakawara	유이탄사마나 섬유	섬유
讀谷山花織	ゆいたんざばなうい	yuitansabanai		

참고 문헌

- 고용부. 2007, “지리적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23 no.3, pp.165-184, 한국항만경제학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1.11.30,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워크숍”.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내부자료.
- 김병일. 2002, “지리적표시의 효율적 보호방안”, 특허청.
- 김선아, 홍상필, 장대자. 2006,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를 위한 조사연구-음성고추, 제주광어, 제주감귤을 중심으로” 食品技術, v.19 no.4, pp.85 - 103, 한국식품연구원.
- 김태균, 성명환. 2008. “지리적표시에 대한 소비자가치 측정” 한국식품유통학회, 제25권 제1호, pp.27-41, 식품유통연구.
- 김태균, 홍나경, 2010. “지리적표시는 농가수취가격을 상승시켰는가?”, 시선집중 GS&J 제99호, GS&J 인스티튜트.
- 김한호. 2007, “한·EU FTA의 예상 쟁점(지리적표시제)”, GS&J 강좌자료, GS&J 인스티튜트.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2011.3,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 농림수산식품부. 2010.12, “농어업·농어촌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 12. “주요수출국의 수출현안 모니터링”.
- 농수산물유통공사. 2010. 9. “‘10년 64억불 달성을 위한 일본시장 수출마케팅전략”.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2006.4). “대일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잔류기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12),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관련 국제분쟁·협상동향 분석 및 우리측 협상전략 연구”.
- 대한상표협회(2011.8), “국내 지리적표시제도의 통합화 방안 연구”.
- 박지현. 2011, “TRIPs-plus를 통한 지리적표시의 보호”, 한양법학, Vol.33, No.0, 한양법학학회.
- 윤여강, 정태호. 2010, “한국, EU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지리적표시 보호에 대한 평가”, 국제통상연구, Vol.15, No.1, 한국국제통상학회.
- 이지숙. 2008,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법적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진, 이주현. 2010, “지리적표시제의 국제적 보호기준과 국내 법적보호의 문제점”, 통합학술대회, Vol.2010, No.0, 한국경영학회.

- 조정은, 김동진, 김현정. 2009.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15권 제4호 통권 43호, pp.159-171, 한국조리학회.
- 특허청. 2010.3.22,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보도자료”.
- 특허청. 200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2005.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EU, 농산물품질정책과 지리적표시제 개요”.

<인터넷 사이트>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www.naqs.go.kr.
- 나라지표, www.index.go.kr/egams.
- 농민신문, www.nongmin.com.
-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무역정보, www.kati.net.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자료실 www.kiep.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wps/portal/dknew>.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fta.go.kr.
- 특허청, www.kipo.go.kr.
- 한·EU FTA, <http://www.fta.go.kr/eu/>.
-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dooderjy.net/kipf.
- <http://oami.europa.eu/ows/rw/pages/CTM/caseLaw>.
- Case-Law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http://ec.europa.eu/agriculture/>

한·일 한·중 FTA 대비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12.
발 행 2011. 12.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